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18.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18. 9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18.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

2018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 요 약

## I. 서론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8년 과세특례규모가 6,369억원(전망)으로서 2018년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의무심층평가 대상임
  - 따라서 동 과세특례에 대한 타당성, 형평성 등을 감안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 본 연구는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타당한가 여부와 본래의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 농협 등 조합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 제도의 정책수혜자를 구분하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분석함
  - 이를 위해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금융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응답자의 현 제도에 대한 인식, 가입현황, 저축효과 등을 분석하고 동 특례제도 및 저율과세제도에 대하여 평가함

## II. 상호금융기관 현황

-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5개 상호금융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제1그룹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제2그룹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로 분류
  - 제1그룹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고, 제2그룹은 직장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기관
  
- 제1그룹은 준조합원제도를 통하여 가입을 개방하고 있으며, 제2그룹은 회원제(신협은 조합원)로 운영하여 준조합원이 없음

- 제1그룹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나 직종에 따른 협동조합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제2그룹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큼
- 2017년 기준 5개 상호금융기관의 규모를 비교하면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준조합원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1그룹의 경우, 농협과 수협은 준조합원이 조합원보다 약 8~9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산림조합의 경우 준조합원의 비중(41.2%)이 조합원 비중(58.8%)보다 낮아 농협이나 수협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비과세 예탁금 비중을 보면 농협은 2017년 기준 총예탁금 296조 5,354억원 중 비과세예탁금은 52조 3,898억원으로 17.7%의 점유율을 보임
  -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81.1%로 조합원 예탁금 18.9%에 비해 약 4.3배 많음
  - 농협의 총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4.0%임
- 수협의 총예탁금은 2017년 22조 9,310억원이며, 비과세 예탁금은 5조 6,634억원으로 전체 예탁금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4.7%임
  - 수협의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94.6%로 대부분 준조합원의 예탁금이라 할 수 있음
  - 수협의 총출자 배당금 120억원 가운데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4% (86.9억원)임
- 산림조합의 2017년 기준 총예탁금 4조 9,531억원 중 비과세예탁금은 1조 2,873억원으로 2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81.3%로 조합원 예탁금 18.7%에 비해 약 4.3배 많음
  - 산림조합은 타 조합에 비해, 조합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비과세 예탁금으로 수혜를 받는 금액이 전체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적은 편임

- 2017년 총배당금 74억원 중 출자 배당금이 58억원, 이용고 배당금이 16억원이며, 출자 배당금 중 과세부분은 33억원(56.9%), 비과세부분은 각각 25억원(43.1%)이며, 이용고 배당은 전액이 비과세 이용고 배당임
- 신협은 2017년 전체 예탁금 65.5조원 가운데 비과세 예탁금이 37.0조원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
  - 비과세 배당금은 2017년에 893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6% 수준임
- 새마을금고의 총예탁금은 2017년 106조 5,033억원이며, 이 가운데 비과세 예탁금은 41조 1,390억원으로 38.6%의 비중을 차지함
  - 비과세 배당금은 1,76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2% 수준임
- 요약하면, 제1그룹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은 전체 예탁금에서 17.7~2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반면,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1.1~94.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무방함
  -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전체 예탁금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8.6~56.4%로 제1그룹보다 높으며, 준조합원의 구분은 없음
- 2017년말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조합 수(3,572개), 거래회원 수(3,630만명)는 전년말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총자산(623조원)은 전년말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당기 순이익(2조 7,128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함(<표 II-19>, <표 II-20>, <표 II-21> 참조)
- 순자본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산림조합이 13.0%로 가장 높은 편이며 이어 새마을금고 9.3%, 농협 8.7%, 수협 4.8%, 신협 4.4%의 순으로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은 상대적으로 자본 수준이 건실하다고 볼 수 있음(<표 II-37> 참조)
-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호금융기관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만 2017년에 전년 대비 상승 기조를 보임

- 2017년 기준 신탁의 연체율이 1.8%로 가장 높고, 수협이 1.7%, 산림조합은 1.4%, 새마을금고가 1.1%이며 농협의 연체율이 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II-39> 참조)
- 2017년 기준 적자기관 수는 총 237개이며,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적자 금고 수가 109개로 전체의 46% 수준이며, 신탁이 96개로 전체의 41% 수준으로 이 두 기관의 적자기관 수가 전체의 87%를 차지함
  - 그러나 각 기관의 전체 조합 수 대비 적자조합의 비율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산림조합이 17.5%로 가장 높고, 신탁이 10.7%, 새마을금고가 8.3%의 순으로 높음
  - 농협과 수협은 전체 조합 수 대비 비율로 보면 적자조합의 비율이 각각 0.6%와 1.1%로 매우 낮게 나타남
-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4개 상호금융기관을 평균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자금 조달의 83.6%가 예탁금이며 출자금은 3.6% 수준
  -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대출금이 전체의 67.0%, 중앙회 예치금이 23.0% 수준
  - 2017년말 기준 예대율은 71.0~88.6% 수준
- 새마을금고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자금 조달의 88.6%가 예탁금이며, 출자금은 4.2% 수준
  -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대출금이 전체의 69.4%, 현금 및 예치금이 22.7%
  - 예대율은 2017년말 기준으로 78.3% 수준
- 따라서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예탁금을 재원으로 대출하여 운영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Ⅲ. 타당성 분석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이용 현황과 국세청의 소득계층별 이자·배당 지급 현황을 통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함

#### 4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 2016년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는 619만명 수준이고 비과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2조 5,884억원
  -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약 77%는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7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1조 9,280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이자소득의 74.5%를 차지(1인당 평균 약 40만원)
  - 따라서 대부분의 비과세 예탁금 수혜는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직업이 없는 고소득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이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2016년 비과세 출자금 가입자는 1,317만명 수준이고 비과세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7,977억원
  - 비과세 출자금 가입자의 약 90%가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인 출자자는 1,034만명으로 전체 출자자의 90%를 차지하고, 이들의 출자금에서 발생한 비과세 배당금은 5,938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배당금의 74.4%를 차지
  
-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농어민과 서민에 대한 지원인 본 과세특례제도는 일정 부분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소득이 낮은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저축지원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지원방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저축여력이 없는 농어민과 서민들에게는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처럼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직접적으로 재정지원하는 방식이 저축여력이 없는 계층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반면에 비과세제도는 일단 자발적으로 저축의지가 있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국세청 자료에서 보면 예탁금 비과세와 배당금 비과세 혜택 수혜자의 적어도 4분의 3 이상이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인 사람들로 나타났기 때

문에 상대적인 효과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동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 IV. 효과성 분석

-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로 세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와 저축 간의 대체효과가 크면 저축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효과가 크면 저축은 하락하게 됨
  - 정확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미시자료 등 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
  -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효과를 파악하였음
    - 연령별, 소득 수준별, 자산 수준별로 특별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전반적으로는 저축의지가 생겼다는 긍정적 응답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예탁금 비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인 조합원에 대한 저축지원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설문조사는 현재 조합 등의 비과세 출자금·예탁금 가입자 1,054명을 대상으로 비과세 상품에 대한 인식, 가입 당시의 상황, 비과세제도의 효과 및 반응 등을 파악함
  - 농협 458명, 신한 332명, 새마을금고 341명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일부 중복 가입)
  - 수협과 산림조합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 조합 가입자들은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각종 비과세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이 조합 가입의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수도권 거주자들과 고소득자, 그리고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설문조사에 의하면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시중은행으로 예탁금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액기준으로 대략 4분의 1 정도의 이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거주자, 고소득자,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비과세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혜택의 유무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표본이 다르기는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높아졌음
- 관련된 비과세 제도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서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등 조합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ISA제도의 도입이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V.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제도 정비 방안

- 동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나, 동시에 제도 남용의 현상도 나타나는 만큼, 정책의 타깃 계층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다면 이상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의 금융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계층별 자료와 상호금융기관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1안	■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과세를 정상화하면서 ISA로 흡수하는 방안
-----	---------------------------------------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 과세특례는 금년 말에 일몰되고, 2019년에는 5%의 세율로, 2020년에는 9%의 세율로 저율과세하여 점진적으로 과세를 정상화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2016년에는 세금우대저축을 정리한 후에 새롭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도입되어, 현 정부에서 서민재산형성을 위한 주요 금융상품으로 ISA를 활용하고자 함
- 따라서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호응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ISA를 중심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과세정상화 스케줄에 따르면 2020년까지 다소 시간이 있으므로, 그때까지 상호금융기관에 신탁상품 허용 여부 또는 ISA의 세금우대저축으로의 포괄적 변환 등을 검토하여 세금우대상품을 ISA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 현재는 상호금융기관에서의 신탁상품 취급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비과세 제도를 ISA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기관에 신탁상품의 취급을 허용해야 함
- 또는 ISA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변환시켜서 현재의 다양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ISA를 중심으로 흡수 통일하는 방안도 있음
- 그러나 상품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금융 규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정비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제2안	■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	-----------------------------

- 설문조사와 통계분석결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이 조합 등의 예탁금을 이용하여 적으나마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농어촌 또는 도시지역의 취약계층이 저축여력이 생긴다면 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이용
  - 문제는 준조합원 자격 등을 통하여 본래 의도하였던 계층 이외에 고소득층 또는 고자산가 등도 동 제도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조사결과 나타난다는 점임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비과세 예탁금 가입한도 축소를 제시할 수 있음
  - 1차년도에는 비과세 예탁금 가입한도를 2천만원으로 축소하고, 2차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서민지원 목적이라면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 정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일부 고액 예탁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위해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도를 축소하게 되면 이들 계층의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용이 줄어들게 되어 제도 남용의 여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함

- 동 방안의 단점으로는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경우, 조합 등의 예탁금이 경쟁우위에 있는 시중은행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예탁금으로 자본을 조달하여 대출로 운용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의 예탁금이 이탈할 경우, 상호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비과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상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래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한다는 당위성이 있음

제3안	■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
-----	----------------------------

-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남용하는 주 계층은 준조합원임
  - 따라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면 동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직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음
  
- 다만 동 방안의 단점은 제1그룹은 준조합원 제도가 있는 반면, 제2그룹은 준조합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같은 상호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 즉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게 되면, 예탁금이 제2그룹의 상호금융기관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1그룹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임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동 혜택을 전격적으로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임
    -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세율 5%로 분리과세하고, 2020년에는 9%로 분리과세함



# 목 차

I. 서론 .....	23
II. 상호금융기관 현황 .....	27
1. 상호금융기관 개황 .....	29
가. 농업협동조합 .....	29
나. 수산업협동조합 .....	32
다. 산림조합 .....	35
라. 신용협동조합 .....	37
마. 새마을금고 .....	40
바. 규모의 비교 .....	43
2.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	43
가. 총자산 .....	43
나. 당기순이익 .....	44
다. 영업성과 .....	45
라. 금리 수준 .....	48
마.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	49
바. 건전성 .....	54
III.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해외사례 .....	61
1. 캐나다 .....	63
가. 캐나다의 협동조합 개괄 .....	63
나. 조세지출 보고서상 관련 제도 .....	68
2. 프랑스 .....	70
가. 프랑스 협동조합제도의 특징 .....	70
나. 프랑스 협동조합 관련 세제 .....	71

다. 조세지출이 아닌 특례제도 .....	71
3. 호주 .....	73
4. 일본 .....	74
가. 특정협동조합 등의 법인세율 특례 .....	74
나. 협동조합 등이 가진 보통출자 관련 수취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의 특례 .....	76
<b>IV.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감면 현황 .....</b>	<b>79</b>
1.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	81
2.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	85
가.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85
나. 비과세 감면 제도 변천 연혁 .....	87
3.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출자금·예탁금 현황 .....	89
가. 농업협동조합 .....	89
나. 수산업협동조합 .....	92
다. 산림조합 .....	95
라. 신용협동조합 .....	98
마. 새마을금고 .....	101
바. 소결 .....	104
4. 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규정 .....	107
가. 농업협동조합 .....	107
나. 수산업협동조합 .....	109
다. 산림조합 .....	109
라. 신용협동조합 .....	110
마. 새마을금고 .....	111
바. 소결 .....	111
<b>V.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b>	<b>113</b>
1. 설문조사의 설계 .....	115
2. 표본의 성격 .....	115
3. 설문분석의 결과 .....	118

가.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가입현황 .....	118
나.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124
다.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 목적과 상황 .....	130
라.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가입 효과에 대한 인식 .....	141
마.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변화 .....	155
바.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전 여부 .....	164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영향 .....	170
4.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	170
<b>VI. 타당성 분석 .....</b>	<b>173</b>
1. 타당성 분석 개요 .....	175
2. 정부 지원의 필요성 .....	176
3. 지원방식의 적정성 .....	181
가. 지원방식 .....	181
나. 대상 설정 .....	183
4. 여타 지원제도와와의 중복성 .....	184
5. 소결 .....	186
<b>VII. 효과성 분석 .....</b>	<b>187</b>
1. 효과성 분석 .....	189
2. 경제적 효과 .....	189
3. 형평성 효과 .....	191
4.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92
<b>VIII.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제도 정비 방안 .....</b>	<b>195</b>
1. 현행 제도의 해석 .....	197
2. 개선방안 .....	199

참고문헌 ..... 204

<부 록> ..... 207

## 표 목 차

<표 II-1> 농협의 조합 현황 .....	29
<표 II-2> 농협의 임직원 현황 .....	30
<표 II-3> 농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현황 .....	31
<표 II-4> 농협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	32
<표 II-5> 수협의 임직원 현황 .....	33
<표 II-6> 수협의 조합원 현황 .....	34
<표 II-7> 수협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	34
<표 II-8> 산림조합의 임직원 현황 .....	35
<표 II-9>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	36
<표 II-10> 산림조합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	36
<표 II-11> 신협의 조합 현황 .....	37
<표 II-12> 신협의 임직원 현황 .....	38
<표 II-13> 신협의 조합원 현황 .....	39
<표 II-14> 신협의 조합당 조합원 수 .....	40
<표 II-15> 새마을금고의 조합 현황 .....	41
<표 II-16>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현황 .....	41
<표 II-17>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 현황 .....	42
<표 II-18> 새마을금고의 조합당 회원 수 .....	42
<표 II-19> 상호금융기관 비교(2017년 기준) .....	43
<표 II-20> 상호금융기관 총자산 추이 .....	44
<표 II-21>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추이 .....	44
<표 II-22> 농협의 경영성과 .....	45
<표 II-23> 수협의 경영성과 .....	46
<표 II-24> 산림조합의 경영성과 .....	46
<표 II-25> 신협의 경영성과 .....	47
<표 II-26> 새마을금고의 경영성과 .....	48

<표 II-27>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 예수금 금리 추이(연말 기준) .....	48
<표 II-28>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 금리 .....	49
<표 II-29> 농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50
<표 II-30> 수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51
<표 II-31> 산림조합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51
<표 II-32> 신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52
<표 II-33> 새마을금고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	53
<표 II-34>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 .....	54
<표 II-35> 적자 상호금융회사 수 추이 .....	55
<표 II-36> 상호금융기관별 예대율 추이(연말 기준) .....	56
<표 II-37> 상호금융기관 순자본비율 추이 .....	57
<표 II-38> 상호금융기관 고정 이하 여신비율 추이 .....	57
<표 II-39> 상호금융기관 연체율 추이 .....	58
<표 II-40> 상호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	59
<표 III-1> 캐나다 협동조합 지역별 분포(2009~2016년) .....	65
<표 III-2> 캐나다 협동조합 산업별 규모(2013년 기준) .....	67
<표 III-3>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추이 .....	69
<표 III-4>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예의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추이 .....	72
<표 III-5> 일반법인 및 협동조합 법인세 세율 .....	75
<표 III-6> 법인세법 및 조세특별조치법에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조치 .....	75
<표 III-7> 협동조합 익금불산입 비율의 변화 .....	77
<표 IV-1> 순이익 과세제도의 변천 및 개정 연혁 .....	81
<표 IV-2> 협동조합의 범위 .....	84
<표 IV-3> 연도별 감면세액 .....	87
<표 IV-4>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세법 변경사항 .....	88
<표 IV-5> 비과세 출자금에 대한 세법 변경사항 .....	89
<표 IV-6> 농협의 조합원 현황: 2017년말 .....	90

<표 IV-7>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	90
<표 IV-8> 농협의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 .....	91
<표 IV-9> 농협의 출자금 현황 .....	92
<표 IV-10> 농협의 출자 배당금 현황 .....	92
<표 IV-11> 수협의 조합원 현황(2017년말 기준) .....	93
<표 IV-12> 어가 인구 및 어가소득 .....	93
<표 IV-13> 수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	94
<표 IV-14> 수협의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 현황 .....	94
<표 IV-15> 수협의 출자배당금 현황 .....	95
<표 IV-16>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2017년말 .....	96
<표 IV-17>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	96
<표 IV-18> 산림조합의 이자소득 지급액 .....	97
<표 IV-19> 산림조합의 출자금 현황 .....	97
<표 IV-20> 산림조합의 출자배당금 현황 .....	97
<표 IV-21> 신협의 조합원 현황 .....	98
<표 IV-22>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	98
<표 IV-23>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수 및 평균 가입금액 .....	99
<표 IV-24>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수 및 예탁금액별 분포(2017년) .....	99
<표 IV-25> 신협의 비과세 출자금 현황 .....	100
<표 IV-26> 신협의 비과세 출자금 조합원 현황 .....	100
<표 IV-27> 신협의 출자금액별 계좌 수 현황 .....	100
<표 IV-28> 신협의 배당금 현황 .....	101
<표 IV-29> 새마을금고의 회원 현황 .....	101
<표 IV-30>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가입자 현황 .....	102
<표 IV-31>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현황 .....	102
<표 IV-32>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탁금 금액(합산)별 거래자 수 분포 현황(2017년) ...	103
<표 IV-33>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출자금 추이 .....	103
<표 IV-34> 기관별 비과세 예탁금·배당금 비중(2017년 기준) .....	105
<표 IV-35> 상호금융기관 배당 우선 순위 .....	112
<표 IV-36>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 산식 .....	112

<표 V-1> 최종 표본의 분포 .....	116
<표 V-2> 응답자의 소득·자산별 분포 .....	117
<표 V-3> 응답자의 조합가입 현황 .....	118
<표 V-4> 응답자의 출자금·예탁금 동시 가입 여부 .....	118
<표 V-5> 응답자의 출자금 가입금액 .....	119
<표 V-6> 출자금액 회귀분석 .....	120
<표 V-7> 예탁금 가입현황(전체 응답자) .....	121
<표 V-8> 예탁금 가입현황(예탁금 > 0) .....	122
<표 V-9> 예탁금액 회귀분석 .....	122
<표 V-10> 농협 조합원 가입요건 충족현황 .....	123
<표 V-11> 농협 준조합원 가입요건 충족현황 .....	123
<표 V-12> “예탁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에 대한 응답 .....	124
<표 V-13> “예탁상품은 특정계층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에 대한 응답 .....	125
<표 V-14>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26
<표 V-15> “예탁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27
<표 V-16> “고소득 자산가들이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28
<표 V-17>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분석) .....	129
<표 V-18> “조합 가입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에 대한 응답 .....	130
<표 V-19> “조합 가입의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에 대한 응답 .....	131
<표 V-20> “주변에 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조합원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 .....	132
<표 V-21> “우리지역에 거주할 때 조합원이 되는 게 유리하다”에 대한 응답 .....	133
<표 V-22> 출자금 가입 목적(Ordered Probit) .....	134
<표 V-23>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이 절세효과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35
<표 V-24>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의 이자율이 높다”에 대한 응답 .....	136
<표 V-25> “예탁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이다”에 대한 응답 ....	137
<표 V-26>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의 대출이자율이 낮다”에 대한 응답 .....	138
<표 V-27>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에 대한 응답 .....	139
<표 V-28> 조합 등의 예탁상품 가입 목적 정리 .....	140

<표 V-29> 예탁금 가입 목적 (Ordered Probit 분석) .....	141
<표 V-30>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	142
<표 V-31>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출자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에 대한 응답 .....	143
<표 V-32>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44
<표 V-33>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에 대한 응답 .....	145
<표 V-34> “도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	146
<표 V-35> 출자금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분석) .....	147
<표 V-36> “예탁상품에 가입하여 대출이 용이해졌다”에 대한 응답 .....	148
<표 V-37> “예탁상품 가입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	149
<표 V-38>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하려는 의지가 생겼다”에 대한 응답 .....	150
<표 V-39>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에 대한 응답 .....	151
<표 V-40> “조합이 발전하는 데 예탁상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	152
<표 V-41> “자금여력이 된다면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한도까지 불입하겠다”에 대한 응답 .....	153
<표 V-42> 예탁금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 (Ordered Probit) .....	154
<표 V-43> “준조합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탈퇴를 고려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 .....	155
<표 V-44>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56
<표 V-45>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57
<표 V-46>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	158

<표 V-47>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보다 출자금 비과세제도가 적절하다”에 대한 응답 .....	159
<표 V-48> “예탁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60
<표 V-49> “예탁상품의 가입한도를 축소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	161
<표 V-50> “예탁상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	162
<표 V-51> 출자금 가입 목적(Ordered Probit) .....	163
<표 V-52> “예탁상품에 비과세 적용 폐지 시 조합 예탁금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	164
<표 V-53> 예탁상품 비과세 폐지 시 예탁금 이전 비중 .....	165
<표 V-54>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 후 5% 세율로 과세 시 예탁금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	166
<표 V-55>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 후 9% 세율로 과세 시 예탁금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	167
<표 V-56> “현행 예탁금 한도 축소시 시중은행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	168
<표 V-57> 시중은행으로 예탁금 이전 의향(Probit 분석) .....	169
<표 VI-1> 대출금에 대한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CB등급 비교 .....	177
<표 VI-2> 은행별 총자산규모(연말 기준) .....	180
<표 VI-3> 은행별 명목순이자 마진 .....	181
<표 VI-4> 농협·수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예탁금 비율 .....	183
<표 VI-5> 종합소득수준별 예탁금과 출자금 가입자 현황(2016년 귀속) .....	184
<표 VI-6> 농어민과 서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	186
<표 VII-1> 소득수준별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수혜현황 (2016년 기준) .....	192
<표 VII-2> 저율 과세시 상호금융기관별 감면예상액 .....	193

## 그림 목 차

[그림 Ⅲ-1] 캐나다 협동조합 지역별 분포(2013년 기준) .....	64
[그림 Ⅲ-2] 캐나다 협동조합 산업별 분포(2013년 기준) .....	66
[그림 Ⅲ-3] 캐나다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세부분류 분포(2013년 기준) .....	67
[그림 Ⅲ-4] 캐나다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주별 규모(2013년 기준) .....	68
[그림 Ⅵ-1] 타당성 평가의 개념 .....	176
[그림 Ⅵ-2] 수도권과 지방별 농협과 시중은행의 점포분포 비교 .....	178



# I. 서론





## I. 서론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42조에 따르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조세특례는 2018년말에 일몰이 도래하고, 조세특례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약 6,369억원으로 추정되어 심층평가 대상임
  
- 조특법 제88조의 5에서 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농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조특법」 제89조의 3에서는 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농어민 및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두 조항에 따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금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며, 2019년에는 5%의 세율로 과세하고 2020년 이후에는 9%의 세율로 과세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단계적으로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안이 1997년 이래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구조의 전환계획이 계속 실시 연기되어 오늘에 이룸

- 본 보고서에서는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타당한가의 여부와 본래의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 즉,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 제도의 정책수혜자를 구분하고자 하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분석함
  - 이를 위해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금융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응답자의 현 제도에 대한 인식, 가입현황, 저축효과, 현 특례제도 및 저율과세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5개 상호금융기관의 일반적인 현황과 경영실적에 대하여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조세특례제도 현황을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와 조세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출자금 및 이용고 배당에 대한 규정을 고찰함
  - 제Ⅴ장에서는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가입동기와 정책수혜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동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시함
  - 제Ⅵ장에서는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하여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함
  - 제Ⅶ장에서는 경제적 효과, 형평성 효과 및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함
  - 마지막 제Ⅷ장에서는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 II. 상호금융기관 현황

### 1. 상호금융기관 개황

#### 가. 농업협동조합

##### 1) 조합 현황

- 농협은 크게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구분되며 2017년말 현재 지역조합은 1,052개이며 품목조합은 79개
  - 품목조합은 원예, 축산, 인삼, 양돈, 과수, 낙농 등 세부 품목별 조합을 의미

<표 II -1> 농협의 조합 현황

(단위: 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조합	1,084	1,081	1,075	1,055	1,052	1,052
품목조합	81	80	80	79	79	79
계	1,165	1,161	1,155	1,134	1,131	1,13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농협의 총임직원은 2015년 94,416명에서 2016년 95,065명, 2017년에는 95,454명으로 증가추세
  - 이 중 임원은 2014년 13,429명에서 2015년 13,375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13,451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2017년 13,114명으로 감소
  - 반면, 직원은 2012년 78,141명에서 2017년 82,34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표 II -2> 농협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b>임원</b>	<b>14,159</b>	<b>13,603</b>	<b>13,429</b>	<b>13,375</b>	<b>13,451</b>	<b>13,114</b>
상근	1,430	1,437	1,418	1,305	13,44	1,359
비상근	12,729	12,166	12,011	12,070	12,107	117,55
<b>직원</b>	<b>78,141</b>	<b>79,531</b>	<b>80,427</b>	<b>81,041</b>	<b>81,614</b>	<b>82,340</b>
책임자	3,161	3,140	3,019	3,277	6,226	6,243
일반직원	59,131	59,413	59,553	59,453	56,681	56,459
기타	15,849	16,978	17,855	18,311	18,707	19,639
<b>총임직원</b>	<b>92,300</b>	<b>93,134</b>	<b>93,856</b>	<b>94,416</b>	<b>95,065</b>	<b>95,454</b>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조합원은 2000년 200만 3천명, 2005년 238만 7천명, 2010년 244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7년 기준 조합원 수는 221만 6천명
  - 1995년 대비 2000년도에는 약 3.2%가 증가하였고, 2005년 대비 2010년도에는 약 2.5% 증가하였지만 이후 조합원 수는 감소 추세
  
- 그러나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된 1988년도 이후의 추세를 보면, 준조합원은 1990년 62만 8천명으로 전체의 24.3%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7년 준조합원이 1,735만 2천명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
  - 즉, 준조합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조합원의 약 7.8배에 이룸
  - 이러한 추세는 준조합원제도 도입 이후 농협의 신용사업 성장에 준조합원이 크게 기여하였고, 현재도 신용사업에서 준조합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표 II-3>을 보면 2010년 이후 조합원 수는 점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반대로 준조합원 수는 점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을 볼 수 있음

<표 II -3> 농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1990	1,959(75.7)	628(24.3)	2,587(100.0)
1995	1,940(33.5)	3,854(66.5)	5,794(100.0)
2000	2,003(21.7)	7,236(78.3)	9,239(100.0)
2005	2,387(19.8)	9,655(80.2)	12,042(100.0)
2010	2,448(14.5)	14,484(85.5)	16,931(100.0)
2011	2,447(13.8)	15,262(86.2)	17,709(100.0)
2012	2,445(13.3)	15,911(86.7)	18,357(100.0)
2013	2,431(13.0)	16,325(87.0)	18,756(100.0)
2014	2,351(12.3)	16,751(87.7)	19,102(100.0)
2015	2,292(11.3)	16,943(88.7)	19,235(100.0)
2016	2,246(11.6)	17,122(88.4)	19,368(100.0)
2017	2,216(11.3)	17,352(88.7)	19,568(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농협, 각 연도 농·축협 경영계수요람

-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 수의 변화 추세를 보면, 조합당 조합원의 수는 2012년 까지 전년 대비 약 0.1~4.9%로 체증하는 추세였다가 이후 체감하는 추세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합당 조합원의 수가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1.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반면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005년 대비 2006년에 16.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이후 증가세는 둔화되었음
  - 2013년부터 조합원은 감소한 반면, 준조합원은 비록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 -4> 농협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단위: 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2005	1,839	2.9	7,439	12.5	9,278	10.4
2006	1,929	4.9	8,673	16.6	10,602	14.3
2007	2,012	4.3	10,042	15.8	12,054	13.7
2008	2,040	1.4	10,853	8.1	12,893	7.0
2009	2,075	1.7	11,663	7.5	13,738	6.6
2010	2,090	0.7	12,369	6.1	14,459	5.2
2011	2,097	0.3	13,079	5.7	15,175	5.0
2012	2,099	0.1	13,658	4.4	15,757	3.8
2013	2,094	△0.2	14,061	3.0	16,155	2.5
2014	2,035	△2.8	14,503	3.1	16,538	2.4
2015	2,026	△0.4	14,981	3.3	17,007	2.8
2016	1,986	△2.0	15,139	1.1	17,125	0.7
2017	1,954	△1.6	15,301	1.1	172,56	0.8

자료: 농협

## 나. 수산업협동조합

### 1) 조합 현황

□ 수협은 크게 지구별 조합, 업종별 조합과 수산물가공조합으로 구분되며 2017년말 현재 전체 조합 수는 91개

○ 지구별 조합은 어민 소재 지역별로 구성된 조합으로 70개이며 업종별 조합은 굴, 피조개, 멍게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어민으로 구성되며 총 19개 조합이 있음

○ 또한 통조림가공 등의 수산물을 제조하는 2개의 수산물가공조합이 있음

- 수협의 총임직원은 2015년 7,163명에서 2016년 7,038명, 2017년에는 7,218명임
  - 이 중 임원은 2015년 950명에서 2016년 94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7년 964명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직원은 2015년 6,213명에서 2015년 6,095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6,254명으로 증가추세

<표 II -5> 수협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임원	950	939	938	950	943	964
상근	170	163	170	175	173	176
비상근	780	776	768	775	770	788
직원	5,759	5,783	5,826	6,213	6,095	6,254
책임자	175	206	222	233	223	242
일반직원	4,578	4,644	4,668	4,896	4,820	4,932
기타	1,006	933	936	1,084	1,052	1,080
총임직원	6,709	6,722	6,764	7,163	7,038	7,218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수협의 조합원은 1990년 15만명선에서 2005년 17만명선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1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약 16만명선을 유지할 정도로 증가율이 높지 않음
  - 조합원 수는 2011년에서 2017년 동안 613명 정도 증가할 만큼 증가율은 미미함
  - 준조합원 수는 2011년 약 123만명에서 2012년 약 143만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약 137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2011년 준조합원의 비중은 조합원의 약 7.6배였다가 2012년에는 약 9.1배에 달하였다가 다소 감소하여 2017년에는 약 8.6배 수준을 유지
    - 농협과 유사하게 신용사업에 있어서 준조합원의 역할이 커졌음을 알 수 있음

<표 II -6> 수협의 조합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2010	158,704(11.6)	1,204,579(88.4)	1,363,283(100.0)
2011	158,204(11.4)	1,230,272(88.6)	1,388,476(100.0)
2012	158,217 (9.9)	1,432,340(90.1)	1,590,557(100.0)
2013	158,311(10.8)	1,307,558(89.2)	1,465,869(100.0)
2014	159,313(12.2)	1,145,096(87.8)	1,304,409(100.0)
2015	158,510(11.6)	1,210,926(88.4)	1,369,436(100.0)
2016	158,299(11.0)	1,282,668(89.0)	1,440,967(100.0)
2017	158,817(10.4)	1,367,961(89.6)	1,526,778(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수협

- 2017년 수협의 조합당 조합원 수는 2011년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반면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증가하였음
  - 2011~2017년간의 수협의 조합당 조합원 수는 1,720~1,74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 미만의 증가율
  -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010년 13,093명에서 2017년 15,03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2014년 상당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조합원 대비 8배 이상의 수준임

<표 II -7> 수협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단위: 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2011	1,720	△0.3	13,373	2.1	15,092	1.8
2012	1,720	0.0	15,569	16.4	17,289	14.6
2013	1,721	0.1	14,213	△8.7	15,933	△7.8
2014	1,732	0.6	12,447	△12.4	14,178	△11.0
2015	1,723	△0.5	13,162	5.7	14,885	5.0
2016	1,740	1.0	14,095	7.1	15,835	6.4
2017	1,745	0.3	15,033	6.6	16,778	6.0

자료: 수협

## 다. 산림조합

### 1) 조합 현황

- 산림조합은 세부적인 조합 구분은 없으며 137개 조합으로 수년간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산림조합의 총임직원은 2014년 1,240명, 2015년 1,243명이었으나 2016년부터 증가하여 2017년 1,352명임
  - 상근임원의 경우 138명으로 일정하며 직원의 경우 2014년까지 700명 수준이었으나, 2016년부터 급증하여 2017년에는 2,152명에 이르고 있음

<표 II -8> 산림조합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b>임 원</b>	<b>1,246</b>	<b>1,243</b>	<b>1,240</b>	<b>1,243</b>	<b>1,334</b>	<b>1,352</b>
상근	137	137	137	138	138	138
비상근	1,109	1,106	1,103	1,105	1,196	1,214
<b>직 원</b>	<b>754</b>	<b>704</b>	<b>709</b>	<b>702</b>	<b>1,809</b>	<b>2,152</b>
책임자	133	135	137	133	191	201
일반직원	370	208	220	344	1,398	1,448
기타	251	361	352	225	220	503
<b>총임직원</b>	<b>2,000</b>	<b>1,947</b>	<b>1,949</b>	<b>1,945</b>	<b>3,143</b>	<b>3,504</b>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산림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2000년도에 약 50만명이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42만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약 47만명 수준
  - 산림조합의 조합원은 수협(약 16만명)보다는 많지만 농협(약 235만명)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
  - 준조합원은 1993년에 제도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약 33만명 수준으로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의 비중이 낮은 특징이 있음

<표 II -9>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단위: 십만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2000	5.0(84.5)	0.9(15.5)	5.9(100.0)
2005	5.0(77.1)	1.5(22.9)	6.5(100.0)
2010	4.9(67.5)	2.3(32.5)	7.2(100.0)
2011	4.9(66.2)	2.5(33.8)	7.4(100.0)
2012	4.9(64.7)	2.7(35.3)	7.6(100.0)
2013	4.9(63.6)	2.8(36.4)	7.8(100.0)
2014	4.2(58.8)	3.0(41.2)	7.2(100.0)
2015	4.8(60.8)	3.1(39.2)	7.9(100.0)
2016	4.6(59.0)	3.2(41.0)	7.8(100.0)
2017	4.7(58.8)	3.3(41.2)	8.0(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산림조합

- 또한 산림조합의 조합당 조합원 수는 2005년 3,561명, 2010년 3,636명에서 2015년에는 3,538명, 2017년에는 3,418명에 이르고 있음
- 반면에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001년 792명에서 2005년 1,058명 그리고 2010년 1,754명, 2014년에는 2,171명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2,44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증가율이 높지는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 -10> 산림조합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단위: 명, %)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인원	전년대비 증가율
2005	3,561	-	1,058	-	4,619	-
2006	3,485	△2.1	1,179	11.5	4,664	1.0
2007	3,485	0.0	1,275	8.2	4,760	2.1
2008	3,485	0.0	1,390	9.0	4,875	2.4
2009	3,561	2.2	1,584	13.9	5,145	5.5
2010	3,636	2.1	1,754	10.7	5,390	4.7
2011	3,629	△0.2	1,857	5.9	5,486	1.8
2012	3,622	△0.2	1,979	6.6	5,601	2.1
2013	3,633	0.3	2,083	5.2	5,716	2.1
2014	3,096	△14.8	2,171	4.2	5,267	△7.8
2015	3,538	14.3	2,285	5.2	5,823	10.6
2016	3,358	△5.1	2,347	2.7	5,705	△2.0
2017	3,418	1.8	2,440	4.0	5,858	2.7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산림조합

## 라. 신용협동조합

### 1) 조합 현황

- 신협의 회원 조합은 크게 지역, 단체 및 직장신협으로 구분되며 2000년에는 각각 873개, 194개 및 250개로 총 1,317개 조합에서 2017년에는 총 898개 조합으로 감소 추세
- 지역, 단체 및 직장 신협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역 신협의 감소 추세가 가장 낮은 편(<표 II-11> 참조)

<표 II -11> 신협의 조합 현황

(단위: 개, %)

구분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	계
2005	692(65.8)	159(15.1)	200(19.0)	1,051(100.0)
2006	680(66.2)	154(15.0)	193(18.8)	1,027(100.0)
2007	674(66.9)	149(14.8)	184(18.3)	1,007(100.0)
2008	664(66.8)	150(15.1)	180(18.1)	994(100.0)
2009	664(67.6)	142(14.5)	176(17.9)	982(100.0)
2010	663(68.9)	134(13.9)	165(17.2)	962(100.0)
2011	680(71.2)	115(12.0)	160(16.8)	955(100.0)
2012	677(71.3)	114(12.0)	159(16.7)	950(100.0)
2013	681(72.3)	105(11.1)	156(16.6)	942(100.0)
2014	670(72.8)	98(10.7)	152(16.5)	920(100.0)
2015	666(73.2)	94(10.3)	150(16.5)	910(100.0)
2016	667(73.8)	91(10.1)	146(16.2)	904(100.0)
2017	664(73.9)	91(10.1)	143(15.9)	898(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신협의 총임직원은 2011년 17,694명에서 2014년에는 17,471명 2017년에는 17,30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 중 임원은 2011년 8,572명에서 2014년 8,491명, 2017년 8,144명으로 감소
- 반면에 직원 중 책임자의 경우, 2011년 713명에서 2014년 746명, 2017년 79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일반직원은 2011년 8,098명에서 2017년 7,348명으로 감소 추세

<표 II -12> 신협외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임원	8,702	8,592	8,491	8,422	8,236	8,144
상근	488	517	608	626	654	656
비상근	8,214	8,075	7,883	7,796	7,582	7,488
직원	9,081	9,004	8,980	8,967	9,011	9,162
책임자	733	751	746	774	785	793
일반직원	7,822	7,568	7,499	7,439	7,467	7,348
기타	526	685	735	754	759	1,021
<b>총임직원</b>	<b>17,783</b>	<b>17,596</b>	<b>17,471</b>	<b>17,389</b>	<b>17,247</b>	<b>17,306</b>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조합원은 2005년 460만 9천명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12년 592만 5천명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추이를 보이며, 2017년 596만 7천명에 이르고 있음
  - 단체신협의 조합원은 2005년 49만 3천명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쳐 2012년에는 59만 1천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감소하여 2017년에는 31만 3천명 수준임
  - 직장신협 조합원의 경우에도 2015년 34만 2천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7년에 31만 3천명 수준에 이름
  - 세 종류의 신협 가운데 지역신협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조합 수에 있어서 지역신협의 비중이 약 73.9%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합원 비중에 있어서는 그보다 높은 약 89.5%의 비중을 차지함
    - 조합 수에 있어서는 지역신협 다음에 직장신협의 비중이 높으나, 조합원 비중에 있어서는 직장신협과 단체신협의 비중이 비슷함

<표 II -13> 신협외 조합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	계
2005	3,801(82.5)	493(10.7)	315(6.8)	4,609(100.0)
2006	3,867(82.6)	496(10.6)	317(6.8)	4,680(100.0)
2007	3,979(82.9)	500(10.4)	318(6.6)	4,797(100.0)
2008	4,140(83.7)	487(9.8)	318(6.4)	4,945(100.0)
2009	4,371(84.2)	496(9.6)	326(6.3)	5,193(100.0)
2010	4,744(85.0)	541(9.7)	297(5.3)	5,582(100.0)
2011	4,955(84.5)	577(9.8)	331(5.6)	5,863(100.0)
2012	5,029(84.9)	591(10.0)	305(5.1)	5,925(100.0)
2013	4,903(84.2)	586(10.1)	335(5.8)	5,824(100.0)
2014	4,813(84.1)	576(10.1)	333(5.8)	5,722(100.0)
2015	5,094(88.6)	316(5.5)	342(5.9)	5,752(100.0)
2016	5,151(88.8)	312(5.4)	338(5.8)	5,801(100.0)
2017	5,341(89.5)	313(5.2)	313(5.2)	5,967(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신협통계』 각 연도

- 조합당 조합원의 수는 2006년 이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잠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6,645명에 이룸
  - 2006년 조합당 조합원의 수가 4,557명이었던 것이 2012년 6,23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잠시 감소 후 다시 증가함
  
- 지역신협의 경우 2010년의 증가율이 8.7%로 가장 높았던 데 반해, 단체신협과 직장신협은 2011년에 각각 24.3%와 14.9%로 최고 증가율을 보임
  -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단체신협과 직장신협은 조합당 조합원 수가 증가한 데 비하여 지역신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14> 신협의 조합당 조합원 수

(단위: 명, %)

연도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		계	
	조합당 조합원 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조합원 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조합원 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조합원 수	전년대비 증가율
2005	5,493	△2.5	3,101	3.8	1,575	△5.3	4,385	△1.9
2006	5,687	3.5	3,221	3.9	1,642	4.3	4,557	3.9
2007	5,904	3.8	3,356	4.2	1,728	5.2	4,764	4.5
2008	6,235	5.6	3,247	△3.2	1,767	2.2	4,975	4.4
2009	6,583	5.6	3,493	7.6	1,852	4.8	5,288	6.3
2010	7,155	8.7	4,037	15.6	1,800	△2.8	5,802	9.7
2011	7,287	1.8	5,017	24.3	2,069	14.9	6,139	5.8
2012	7,428	1.9	5,184	3.3	1,918	△7.3	6,237	1.6
2013	7,200	△3.1	5,581	7.7	2,147	11.9	6,183	△0.9
2014	7,184	△0.2	5,878	5.3	2,191	2.0	6,220	0.6
2015	7,649	6.5	3,362	△42.8	2,280	4.1	6,321	1.6
2016	7,723	1.0	3,429	2.0	2,315	1.5	6,417	1.5
2017	8,044	4.2	3,440	0.3	2,189	△5.5	6,645	3.5

자료: 신협통계, 금융감독원

## 마. 새마을금고

### 1) 조합 현황

- 새마을금고의 회원 조합은 크게 지역새마을금고와 직장새마을금고로 구분되며 2005년에 각각 1,432개와 180개 조합으로 총 1,612개 조합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총 1,315개 조합으로 감소 추세
  - 지역새마을금고가 전체의 약 92%로서 직장금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지역새마을금고는 2005년 1,432개, 2010년 1,338개, 2015년 1,225개, 2017년 1,211개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직장새마을금고도 2005년에는 180개였던 것이 2010년 142개, 2015년에 110개, 2017년에 10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표 II -15> 새마을금고의 조합 현황

(단위: 개, %)

구분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2005	1,432(88.8)	180(11.2)	1,612(100.0)
2006	1,406(89.0)	173(11.0)	1,579(100.0)
2007	1,377(89.2)	166(10.8)	1,543(100.0)
2008	1,359(89.5)	159(10.5)	1,518(100.0)
2009	1,348(89.8)	153(10.2)	1,501(100.0)
2010	1,338(90.4)	142(9.6)	1,480(100.0)
2011	1,321(91.2)	127(8.8)	1,448(100.0)
2012	1,298(91.4)	122(8.6)	1,420(100.0)
2013	1,284(91.6)	118(8.4)	1,402(100.0)
2014	1,259(91.8)	113(8.2)	1,372(100.0)
2015	1,225(91.8)	110(8.2)	1,335(100.0)
2016	1,213(91.8)	108(8.2)	1,321(100.0)
2017	1,211(92.1)	104(7.9)	1,315(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새마을금고 통계」, 2007, 2015, 2017

- 새마을금고의 총임직원은 2012년 30,202명에서 2017년 29,142명으로 감소 추세
  - 이 중 임원은 2012년 15,672명에서 2017년 13,977명으로 감소
  - 반면에 직원 중 책임자인 전무와 상무의 경우, 2012년 1,361명에서 2017년 1,59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일반직원도 2012년 13,169명에서 2017년 13,568명으로 증가

<표 II -16>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b>임 원</b>	<b>15,672</b>	<b>15,348</b>	<b>14,664</b>	<b>14,276</b>	<b>14,154</b>	<b>13,977</b>
상근	909	914	907	868	904	943
비상근	14,763	14,434	13,757	13,408	13,250	13,034
<b>직 원</b>	<b>14,530</b>	<b>14,741</b>	<b>14,912</b>	<b>14,844</b>	<b>14,971</b>	<b>15,165</b>
전·상무	1,361	1,385	1,424	1,454	1,540	1,597
일반직	13,169	13,356	13,488	13,390	13,431	13,568
<b>총임직원</b>	<b>30,202</b>	<b>30,089</b>	<b>29,576</b>	<b>29,120</b>	<b>29,125</b>	<b>29,142</b>

자료: 「새마을금고 통계」, 2017

-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회원은 2011년 약 910만명에서 2013년에 약 94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에 약 843만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지역금고 회원 수가 전체의 약 9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음

〈표 II -17〉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2011	8,501(93.4)	596(6.6)	9,097(100.0)
2012	8,867(93.6)	611(6.4)	9,478(100.0)
2013	8,873(93.6)	608(6.4)	9,481(100.0)
2014	8,724(93.7)	591(6.3)	9,315(100.0)
2015	8,634(93.7)	580(6.3)	9,214(100.0)
2016	8,533(93.8)	561(6.2)	9,094(100.0)
2017	7,885(93.5)	547(6.5)	8,432(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새마을금고

- 조합당 회원 수는 2010년 5,918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5년 6,902명을 기록하여 정점을 이루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 6,412명임
- 지역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당 회원 수는 2010년 6,115명에서 2015년 7,04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 직장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조합당 회원 수는 2010년 4,056명에서 2015년 5,2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 조합당 회원 수가 증가한 것은 특히 직장새마을금고의 경우 금고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표 II -18〉 새마을금고의 조합당 회원 수

(단위: 명, %)

연도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조합당 회원 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회원 수	전년대비 증가율	조합당 회원 수	전년대비 증가율
2010	6,115	-	4,056	-	5,918	-
2011	6,435	5.2	4,693	15.7	6,282	6.2
2012	6,831	6.2	5,008	6.7	6,675	6.2
2013	6,910	1.2	5,153	2.9	6,762	1.3
2014	6,929	0.3	5,230	1.5	6,789	0.4
2015	7,048	1.7	5,273	0.8	6,902	1.7
2016	7,035	△0.2	5,194	△1.5	6,884	△0.3
2017	6,511	△7.4	5,260	1.3	6,412	△6.9

자료: 새마을금고

## 바. 규모의 비교

- 이상 5개 상호금융기관의 규모를 비교하면 <표 II-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신협이 중간 정도의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합 수에 있어서는 산림조합이 수협보다 많으나 나머지 다른 기준으로 보면 산림조합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임을 알 수 있음

<표 II -19> 상호금융기관 비교(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십억원, 억원)

기관	조합 수	조합원 수 <sup>1)</sup>	총자산규모	당기순이익
농협	1,131	19,568,118	356,393	15,651
수협	91	1,526,778	27,781	1,616
산림조합	137	802,532	6,326	369
신협	898	5,966,602	82,120	3,346
새마을금고	1,315	8,432,876	150,481	6,146

주: 1) 준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준조합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통계

## 2.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 가. 총자산

- 상호금융기관의 2017년 총자산은 2016년 대비 8.4% 증가한 623조원 규모임
- 2017년의 경우 농협이 총자산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이어서 새마을금고 24.2%, 신협 13.2%, 수협 4.4%, 산림조합 1%의 규모임

<표 II -20> 상호금융기관 총자산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협	272.8	282.4	296.5	313.5	331.8	356.4
수협	19.2	19.8	21.0	22.1	24.8	27.7
산림조합	5.0	5.1	5.2	5.4	5.7	6.3
신협	55.3	56.7	60.5	65.8	73.8	82.1
새마을금고	104.8	110.8	119.7	126.7	138.4	150.5
합계	457.2	474.8	502.9	533.5	574.5	623.0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농협, 새마을금고

#### 나. 당기순이익

- 상호금융기관 전체로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4%나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7년 2조 7,128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 개별 그룹으로 보면 농협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의 추세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2015년과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크게 회복함
- 수협은 2013년 이래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산림조합과 신협은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가 2017년에 회복함

<표 II -21>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협	14,119	11,868	12,352	12,798	14,228	15,651
수협	537	364	537	909	1,174	1,616
산림조합	272	182	326	380	268	369
신협	1,139	818	1,896	2,350	2,282	3,346
새마을금고	3,390	3,510	5,335	4,553	3,595	6,146
합계	20,049	17,242	20,445	20,990	21,535	27,128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 다. 영업성과

- 농협의 영업이익은 2012년 이래 약 3조 2천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3조 9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함
  - 영업외손익 중 신용손익은 흑자를 나타내는 반면 비신용사업손익은 2012년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함
  -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여수신, 카드 등의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약 2조 5천억~3조 1천억원으로 최대 영업이익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농협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
  - 반면, 하나로마트, 유통 등의 비신용사업부문에서는 1조 3천억~1조 5천억원의 적자 발생으로 경영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표 II -22〉 농협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16,021,281	14,851,333	14,305,956	13,415,078	13,045,480	13,750,978
영업비용	12,527,578	11,653,317	10,951,182	10,087,916	9,547,319	9,884,332
영업이익	3,493,732	3,198,036	3,354,783	3,327,166	3,498,168	3,866,653
신용사업손익	2,747,896	2,538,530	2,619,607	2,632,758	2,791,386	3,096,403
비신용사업손익	-1,335,963	-1,351,693	-1,384,381	-1,352,964	-1,368,654	-1,531,325
당기순이익	1,411,890	1,186,805	1,235,217	1,279,823	1,422,750	1,565,09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수협의 영업이익은 2013년 약 990억원이었으나, 그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2,2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영업외손익 중 신용사업손익은 흑자를 나타내는 반면 비신용사업손익은 계속 적자 상태임
  - 어업인 및 수산단체에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신용사업 실적이 710억~1,666억원으로 비신용사업 실적보다 월등히 높음
  - 수협은 최근 비신용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등, 최근 들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 -23> 수협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1,109,383	1,058,563	1,040,951	1,016,692	983,456	1,090,507
영업비용	989,437	959,636	921,318	854,377	801,069	869,742
영업이익	119,952	98,932	119,630	162,318	182,382	220,767
신용사업손익	92,904	71,060	91,243	124,325	138,525	166,568
비신용사업손익	-39,236	-34,624	-37,580	-33,420	-21,068	-4,934
당기순이익	53,671	36,439	53,662	90,902	117,449	161,627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산림조합의 영업이익은 2013년 57억원을 기록한 이래 증가하다가 2016년에 2015년 대비 약 30% 감소한 142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에 약 80% 증가한 256억원을 기록
  - 앞서 당기순이익에서 보았듯이 5개 그룹 중에서 산림조합의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 신용사업손익은 2014년 이래로, 비신용사업손익은 2012년 이래로 연속 흑자를 나타냄
  - 이러한 결과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다른 양상인데, 이것은 신용사업보다 산주와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사업, 산림경영지도, 특화품목 전문지도, 대리경영 등의 비신용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

<표 II -24> 산림조합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244,830	234,571	225,883	204,152	187,060	205,163
영업비용	236,909	228,889	210,262	183,914	172,822	179,521
영업이익	7,921	5,682	15,621	20,239	14,237	25,647
신용사업손익	△795	△3,372	7,225	8,226	1,932	10,528
비신용사업손익	27,969	21,617	25,392	29,760	24,863	26,407
당기순이익	27,173	18,244	32,617	37,984	26,792	36,940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신협이 영업이익은 2013년 442억원을 기록한 이래 크게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3,26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함
  - 농협이나 수협과는 달리 신용손익과 비신용사업손익은 계속 흑자를 기록함
  - 특히 신용사업부문에서의 이익이 오히려 영업이익을 상회하거나 동일한 수준에 이르는 등 기관 운영의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음
  - 이는 신협의 경영활동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요사업 영업부분을 위한 재원을 신용사업에서 충당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 II -25〉 신협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2,853,124	2,645,202	2,935,276	2,954,796	2,928,503	3,170,205
영업비용	2,765,983	2,600,999	2,757,887	2,727,303	2,720,776	2,843,664
영업이익	87,146	44,213	177,393	227,503	207,742	326,547
신용사업손익	112,520	81,429	185,535	225,509	220,389	325,233
비신용사업손익	1,399	350	4,034	9,505	7,800	9,346
당기순이익	113,920	81,776	189,566	235,020	228,184	334,58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2017년 새마을금고의 영업이익은 약 8,224억원으로서 2016년 영업이익 5,365억원 대비 53% 증가하였음
  - 영업외손익 중 신용손익과 비신용사업손익 모두 흑자를 기록
  - 회원의 예탁금과 적금 수납,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의 경우 2016년 3,411억 원에서 2017년 6,030억원으로 약 77% 증가
  - 반면 지역사회 개발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 비신용사업의 경우 2015년 188억원에서 2017년 115억원으로 감소
  - 당기순이익은 2016년 3,595억원에서 2017년 6,146억원으로 71%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에서 신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8%로 신용사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표 II -26〉 새마을금고의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영업수익	5,936,995	5,580,663	5,442,987	5,016,242	4,674,012	5,088,870
영업비용	5,344,030	4,974,150	4,649,129	4,357,151	4,137,467	4,266,483
영업이익	592,965	606,513	793,858	659,091	536,546	822,387
신용사업손익	323,366	333,449	516,665	436,525	341,113	603,041
비신용사업손익	15,633	17,572	16,820	18,771	18,396	11,535
당기순이익	338,999	351,021	533,485	455,295	359,509	614,577

자료: 새마을금고

### 라. 금리 수준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 예수금 금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예수금 금리가 1% 중후반에서 2% 초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상호금융기관 중에서는 농협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II -27〉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 예수금 금리 추이(연말 기준)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은행	3.42	2.71	2.42	1.72	1.47	1.52
신협	4.19	3.14	2.87	2.29	2.02	2.25
농협	3.94	2.97	2.67	1.95	1.62	1.73
새마을금고	4.16	3.13	2.85	2.22	1.96	2.03
저축은행	4.23	3.10	2.82	2.31	2.13	2.24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정기예탁금 금리

2. 농협은 축협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수신 가중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수신금리는 1~2%대 전후반 수준이지만 여신금리의 경우 4~11% 수준으로 비은행금융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I -28>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 가중평균 금리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신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1년)	4.23	3.10	2.82	2.31	2.13	2.24
	신협 (정기예탁금1년)	4.19	3.14	2.87	2.29	2.02	2.09
	상호금융 (정기예탁금1년)	3.94	2.97	2.67	1.95	1.62	1.73
여신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15.45	13.16	11.17	11.56	11.22	11.00
	신협 (일반대출)	7.02	5.87	5.34	4.81	4.56	4.67
	상호금융 (일반대출)	6.11	5.24	4.79	4.20	3.85	3.9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마.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 1) 농협

- 농협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보면, 자금 전체의 약 84%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자금 전체의 약 67%를 대출금으로 운용
  - 자금조달의 재원 중에서 예금이 2015년에 83.4%였던 것이 2017년에는 84.0%로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은 2015년 3.5%였던 것이 2017년에는 3.1%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조합원의 출자금은 평균 3%선으로 조달자금에 미미한 수준
  - 자금운용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은 2015년 61.1%였던 것이 2017년에는 66.8%로 증가
  - 대출금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회 예치금은 23.6~28.0% 수준임

〈표 II -29〉 농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261,409	83.4	276,869	83.5	299,396	84.0
	차입금	10,960	3.5	11,461	3.5	11,001	3.1
	출자금	9,951	3.2	10,606	3.2	11,312	3.2
	기타	31,161	9.9	32,823	9.9	34,685	9.7
합계		313,481	100.0	331,759	100.0	356,393	100.0
운용	대출금	191,467	61.1	216,534	65.3	238,080	66.8
	중앙회예치금	87,752	28.0	81,388	24.5	84,024	23.6
	유가증권	3,930	1.3	2,861	0.9	2,035	0.6
	기타	30,332	9.7	30,975	9.3	32,254	9.1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 수협

- 수협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보면, 자금 전체의 약 83%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자금 전체의 약 73%를 대출금으로 운용
  - 자금조달의 재원 중에서 예금이 2015년에 81.5%였던 것이 2017년에는 82.6%로 소폭 증가하였고, 차입금은 2015년 10.5%였던 것이 2017년에는 9.0%로 소폭 감소
  -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은 약 1.8% 수준으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낮음
  - 자금운용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은 2015년 68.5%였지만 2017년에는 73.2%로 증가하였으며, 중앙회 예치금은 약간 감소한 19.3% 수준

<표 II -30> 수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18,008	81.5	20,320	81.7	22,931	82.6
	차입금	2,320	10.5	2,518	10.1	2,496	9.0
	출자금	428	1.9	458	1.8	497	1.8
	기타	1,346	6.1	1,575	6.3	1,851	6.7
합계		22,102	100.0	24,871	100.0	27,775	100.0
운용	대출금	15,150	68.5	17,670	71.0	20,318	73.2
	중앙회예치금	5,107	23.1	5,253	21.1	5,354	19.3
	유가증권	101	0.5	60	0.2	28	0.1
	기타	1,744	7.9	1,888	7.6	2,074	7.5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산림조합

- 산림조합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조달자금의 약 78.3%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55.6% 정도를 대출금으로 운용함
  - 출자금은 2,283억원으로 약 3.6%에 지나지 않음
  - 자금운용 측면에서 대출금 다음으로 중앙회예치금이 1조 9,963억원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

<표 II -31> 산림조합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4,246	78.1	4,489	78.2	4,953	78.3
	차입금	181	3.3	218	3.8	267	4.2
	출자금	177	3.3	201	3.5	228	3.6
	기타	831	15.3	833	14.5	878	13.9
합계		5,434	100.0	5,742	100.0	6,327	100.0
운용	대출금	2,474	45.5	2,908	50.6	3,517	55.6
	중앙회예치금	2,143	39.4	2,058	35.8	1,996	31.6
	유가증권	144	2.7	88	1.5	50	0.8
	기타	673	12.4	688	12.0	764	12.1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4) 신탁

- 신탁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보면, 자금 전체의 약 89%가 예수금을 통해 조달되며, 자금 전체의 약 72%를 대출금으로 운용
- 자금조달의 재원 중에서 예수금이 2015년에 88.6%였던 것이 2017년에는 89.3%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차입금은 2015년 0.6%에서 2017년에도 0.7%로 소폭 증가
  - 출자금은 전체 조달자금 대비 2015년 6.3%, 2016년 6.5% 그리고 2017년 5.9%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음
  - 자금운용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은 2015년 66.2%였던 것이 2017년에는 72.4%로 증가하였으며, 중앙회 예치금은 2015년 24.0%였던 것이 2017년에 20.7%로 감소

〈표 II -32〉 신탁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58,332	88.6	65,409	88.7	73,303	89.3
	차입금	411	0.6	539	0.7	569	0.7
	출자금	4,158	6.3	4,758	6.5	4,823	5.9
	기타	2,919	4.4	3,034	4.1	3,426	4.2
합계		65,820	100.0	73,740	100.0	82,120	100.0
운용	대출금	43,582	66.2	52,401	71.1	59,433	72.4
	중앙회예치금	15,799	24.0	15,748	21.4	16,970	20.7
	유가증권	3,502	5.3	2,708	3.7	2,547	3.1
	기타	2,937	4.5	2,882	3.9	3,170	3.9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5)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의 자금조달과 운용도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금 전체의 약 88.6%를 예금을 통해 조달하며, 자금 전체의 약 69.4%를 대출금으로 운용
  - 2017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예수금 수준은 약 133조원 수준이며, 대출금은 약 104조원 수준
  -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전체 조달자금의 약 4.2% 수준
  - 예수금은 2015년 약 112조원에서 2017년에 약 133조원으로 18.8% 증가하였음
  - 대출금은 2015년 59.1%에서 2017년 69.4%로 증가하였고, 중앙회 예치금은 2015년 30.9%에서 2017년 22.7%로 감소하였음

〈표 II -33〉 새마을금고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달	예수금	112,024	88.4	122,247	88.3	133,318	88.6
	차입금	776	0.6	1,054	0.8	834	0.6
	출자금	5,612	4.4	6,165	4.5	6,267	4.2
	기타	8,281	6.5	8,907	6.4	10,062	6.7
합계	126,693	100.0	138,373	100.0	150,481	100.0	
운용	대출금	74,832	59.1	90,513	65.4	104,403	69.4
	현금 및 예치금	39,156	30.9	36,117	26.1	34,156	22.7
	유가증권	7,527	5.9	6,241	4.5	5,864	3.9
	기타	5,178	4.1	5,502	4.0	5,864	4.0

주: 연말잔액 기준  
 자료: 새마을금고연합회

## 6)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

- 이상 5개 기관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 예수금, 출자금 및 대출금, 중앙회 예치금 비중을 살펴보면 <표 II -34>와 같음
  -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농협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이 가장 규모가 작음

-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주로 예수금에 의존하고, 운용에 있어서는 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출자금은 자금 조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신탁이 5.9%로 가장 크고 수협이 1.8%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음<sup>1)</sup>
- 운용에 있어서 대출금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회예치금을 합산하면, 대출금과 중앙회예치금이 운용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기관 공히 90%를 초과함<sup>2)</sup>

〈표 II -34〉 조달 및 운용 규모 비교

(단위: 십억원, %)

기관	주요 조달 항목		주요 운용 항목	
	예수금	출자금	대출금	중앙회예치금
농협	299,396 (84.0)	11,312 (3.2)	238,080 (66.8)	84,024 (23.6)
수협	22,931 (82.6)	497 (1.8)	20,318 (73.2)	5,354 (19.3)
산림조합	4,953 (78.3)	228 (3.6)	3,517 (55.6)	1,996 (31.6)
신탁	73,303 (89.3)	4,823 (5.9)	59,433 (72.4)	16,970 (20.7)
새마을금고	133,318 (88.6)	6,267 (4.2)	104,403 (69.4)	34,156 (20.7)

주: ( ) 안은 조달 및 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바. 건전성

- 2017년 기준 적자기관 수는 총 237개이며,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적자금고 수가 109개로 전체의 46% 수준이며, 신탁이 96개로 전체의 41% 수준으로 이 두 기관의 적자기관 수가 전체의 87%를 차지함

1) 산림조합만 78.3%

2) 산림조합만 87.2%

- 그러나 각 기관의 전체 조합 수 대비 적자조합의 비율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산림조합이 17.5%(전체 조합 수 137개)로 가장 높고, 신협이 10.7%(전체 조합 수 898개), 새마을금고가 8.3%(전체 조합 수 1,315개)의 순으로 높음
- 농협과 수협은 전체 조합수 대비 비율로 보면 적자 조합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 농협은 전체 1,131개 대비 0.6%, 수협은 전체 91개 대비 1.1% 수준

- 2017년에는 적자 상호금융기관 수가 2015년 대비 36.3% 감소하여 237개임
  -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은 큰 비율로 줄어들었으나, 산림조합과 신협은 2015년과 비슷한 수준

〈표 II -35〉 적자 상호금융회사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15	2016	2017
농협	22	18	7
수협	5	6	1
산림조합	29	44	24
신협	97	108	96
새마을금고	219	223	109
합계	372	399	237

자료: 금융감독원

- 조합 및 중앙회가 준수해야 하는 건전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0조의2)
  -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은 100분의 2 이상
  - 대손충당금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 신협중앙회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 이상 유지해야 함
  -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 기준(예대율)은 다음과 같음<sup>3)</sup>
    - 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의 경우: 100분의 80 이하

3) 2017.4.5. 신설

- 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 이하
- 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 이하

□ 상기 기준에 따른 예대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수협과 신협만 88.6%, 81.1%로 80% 기준을 다소 초과하며, 다른 기관들은 예대율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

<표 II -36> 상호금융기관별 예대율 추이(연말 기준)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농협	여신(A)	191,467	216,534	238,080
	수신(B)	261,409	276,869	299,396
	예대율(A/B)	73.2	78.2	79.5
수협	여신(A)	15,150	17,670	20,318
	수신(B)	18,008	20,320	22,931
	예대율(A/B)	84.1	87.0	88.6
산림조합	여신(A)	2,474	2,908	3,517
	수신(B)	4,246	4,489	4,953
	예대율(A/B)	58.3	64.8	71.0
신협	여신(A)	43,582	52,401	59,433
	수신(B)	58,332	65,409	73,303
	예대율(A/B)	74.7	80.1	81.1
새마을 금고	여신(A)	74,832	90,513	104,403
	수신(B)	112,024	122,247	133,318
	예대율(A/B)	66.8	74.0	78.3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자본의 적정성을 볼 수 있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산림조합이 13.0%로 가장 높은 편이며 이어 새마을금고 9.3%, 농협 8.7%, 수협 4.8%, 신협 4.4%의 순이며 2015년과 2016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는 편임

〈표 II -37〉 상호금융기관 순자본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협	8.5	8.7	8.7	8.3	8.8	8.7
수협	3.0	3.2	3.6	4.1	4.4	4.8
산림조합	11.7	11.8	12.6	-	13.1	13.0
신협	3.6	3.5	3.9	4.0	3.9	4.4
새마을금고	8.8	8.9	8.9	9.3	9.4	9.3

주: 순자본비율은 총자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총여신(대출자산) 중 부실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따라서 지표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음
  - 2017년 기준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수협과 신협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산림조합 1.8%, 새마을금고 1.6%, 농협 1.1%, 수준
    - 2016년과 비교해보면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약간 증가하였고, 농협과 수협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신협은 변화가 없음

〈표 II -38〉 상호금융기관 고정 이하 여신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협	2.1	2.4	2.3	1.5	1.2	1.1
수협	2.7	3.6	4.0	3.0	2.4	2.1
산림조합	2.8	2.8	2.9	2.4	1.7	1.8
신협	4.2	4.6	3.5	2.4	2.1	2.1
새마을금고	2.4	2.4	2.0	1.4	1.5	1.6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새마을금고연합회

-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호금융기관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마을금고만 2017년에 전년과 동일
  - 2017년 기준 신협의 연체율이 1.8%로 가장 높고 수협의 연체율이 1.7%,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1.1%, 농협의 연체율이 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39> 상호금융기관 연체율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협	3.3	2.9	2.4	1.4	1.1	1.0
수협	4.5	4.3	3.7	2.6	1.9	1.7
산림조합	4.9	3.5	2.8	2.3	1.5	1.4
신협	6.4	5.4	3.8	2.3	1.9	1.8
새마을금고	3.3	3.1	2.3	1.6	1.1	1.1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 대손충당금은 기업의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말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을 말하며 「상호금융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3>에서 적립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금융권은 대출 연체 기간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일정 비율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게 됨

<참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7, 2013. 3. 26> <개정 2017. 6. 28.>

1. 동일채무자에 대한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신설 2013. 3. 26> <개정 2017. 6. 28.>

가. 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 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 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신설 2013. 3. 26>

- 2017년 기준 기관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살펴보면 농협이 237.3%로 가장 높으며 이어 수협이 106.2%, 산림조합이 101.8%, 신협 101.1%, 새마을금고 100.0% 순으로 나타남

<표 II -40> 상호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농협	144.9	121.5	129.4	180.9	221.1	237.3
수협	138.1	125.1	116.4	116.9	108.9	106.2
산림조합	-	-	102.8	102.5	101.7	101.8
신협	116.6	101.3	108.5	101.4	101.1	101.1
새마을금고	100.2	100.1	100.0	100.0	100.0	100.0

주: 대손충당금비율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 Ⅲ.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해외사례





### Ⅲ.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해외사례

#### 1. 캐나다

##### 가. 캐나다의 협동조합 개괄

##### 1) 소득세법상 협동조합(Cooperative corporations) 정의

- 캐나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천연 생산물(natural products)의 유통 전반을 관리하고, 조합원들을 위해 구입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물품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협동조합은 적격 주법(state law) 또는 연방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함(ITA §136(2))<sup>4)</sup>
  - 조합의 정관, 내규, 계약서 등에서 이익배당 지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짐
  - 조합원의 90% 이상이 개인, 다른 협동조합법인, 농업을 운영하는 파트너십이나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최소 90% 이상의 주식 지분이 상기 언급된 90% 이상의 조합원 소유이거나, 노후자금 마련 제도, 은퇴 소득 마련 제도, 비과세계좌제도, 교육비 마련 제도 등에 의해 운영되는 신탁 소유여야 함<sup>6)7)</sup>

4) 금융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상호보험 등)의 경우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the Bank Act, Insurance Companies Act에 따라 설립되며 해당 법에 따라 설립 요건이 달라짐

5)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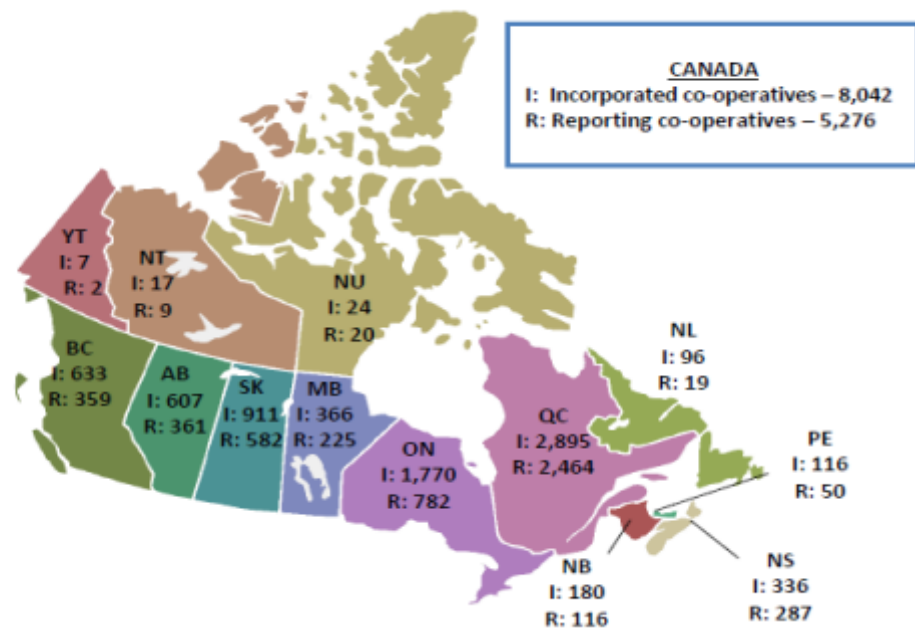
6) 비과세계좌제도(Tax-Free Savings Accounts)는 일반 저축계좌와 동일하나 해당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7) 노후자금 마련 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은퇴 소득 마련 제도(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비과세계좌제도(TFSAs), 교육비 마련 제도(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 2) 협동조합 관련 통계

- 캐나다 산업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는 매년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 및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캐나다 전역에 8,042개 협동조합이 있음<sup>8)</sup>
- 전체 8,042개의 조합 중 5,276개(전체의 66%)의 조합이 본 보고서에 사용된 “캐나다 협동조합 연간 설문 조사(Annual Survey of Canadian Co-operatives)”에 응답하였고 설문조사에 따른 협동조합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sup>9)</sup>
  - 전체 조합(8,042) 개수 기준 밀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퀘벡 주(2,895개, 36%)였으며, 온타리오 주(1,770개, 22%), 서스캐처원 주(911개, 11%)가 그 다음으로 밀집 비율이 높았음

[그림 III-1] 캐나다 협동조합 지역별 분포(2013년 기준)



주: 협동조합의 위치는 조합 본부 주소를 기준으로 설정함

자료: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18

8)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2018)

9) 비금융협동조합(소득세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내용

□ 캐나다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통해, 2013년 전후 지역별 협동조합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I-1> 캐나다 협동조합 지역별 분포(2009~2016년)

(단위: 개)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브리티시 콜롬비아	607	563	548	585	633	618	592	619
앨버타	709	679	609	606	607	619	626	624
서스캐처원	998	969	993	930	911	832	826	811
매니토바	373	367	370	364	366	365	354	346
온타리오	1,579	1,661	1,654	1,717	1,770	1,783	1,806	1,776
퀘벡	2,893	2,873	2,840	2,860	2,895	2,898	2,821	2,757
뉴브런즈윅	247	162	163	175	180	171	175	172
노바스코샤	287	310	338	347	336	338	345	333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16	105	106	109	116	118	118	122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82	69	94	92	96	97	75	75
누나분트	31	24	24	24	24	24	24	24
북서지역	20	15	15	16	17	18	19	19
유콘	6	8	8	5	7	8	9	10
연방	60	60	63	76	84	93	97	103
총합	8,008	7,865	7,825	7,906	8,042	7,982	7,887	7,791

주: 1. 협동조합의 위치는 조합 본부 주소를 기준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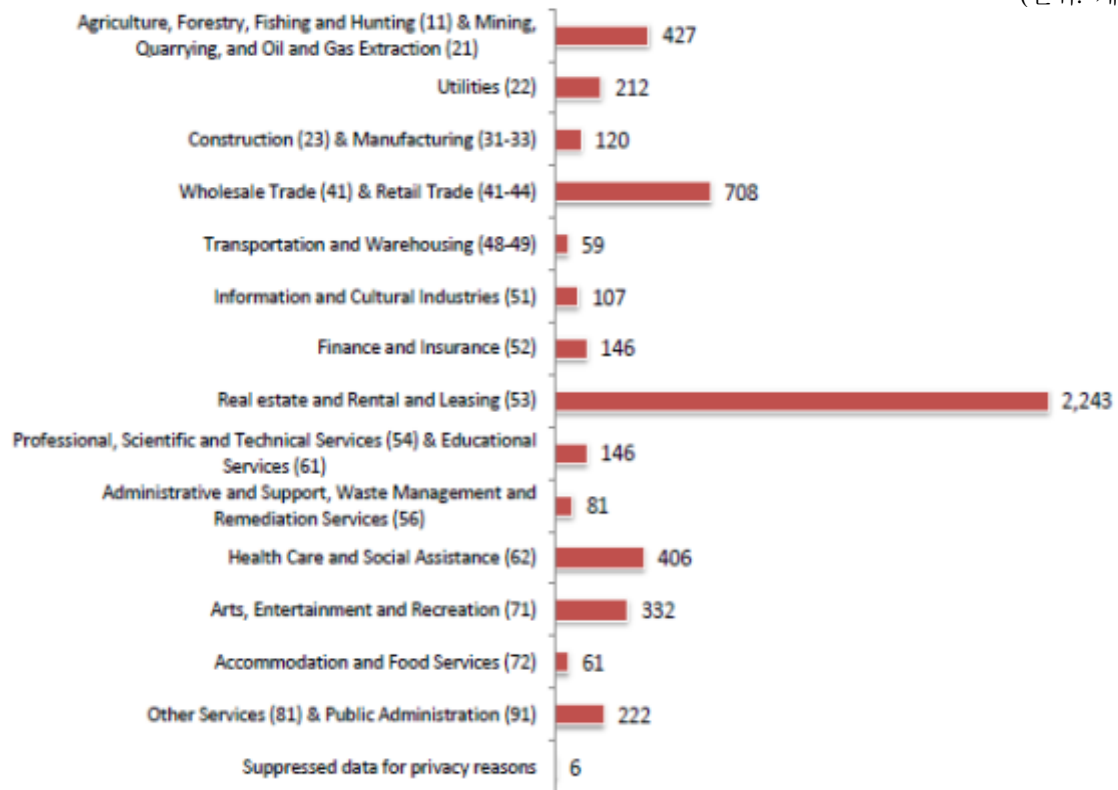
2. “연방”에 속하는 조합은 캐나다 조합법(Canada Cooperatives Act) 및 캐나다 조합법 시행(Canada Cooperatives Regulations)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에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조합  
자료: 캐나다 산업부, <https://www.ic.gc.ca/eic/site/693.nsf/eng/00149.html>, 검색일자:2018.04.23.

□ 2018년 산업부 보고서에서 북아메리카 산업분류기준(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에 따른 조합 분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조합 5,276개 중 부동산 임대업이 2,243개(43%)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유통업이 708개(13%), 농림어업 등<sup>10)</sup>이 427개(8%)로 그 뒤를 이었음

10) 농림어업(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및 채광업(Mining, Quarry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그림 III-3]에서 보듯이 대부분 농림어업에 속하며 원문에서도 이하의 분석에 대해 채광업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농림어업 등”으로 해석함

[그림 III-2] 캐나다 협동조합 산업별 분포(2013년 기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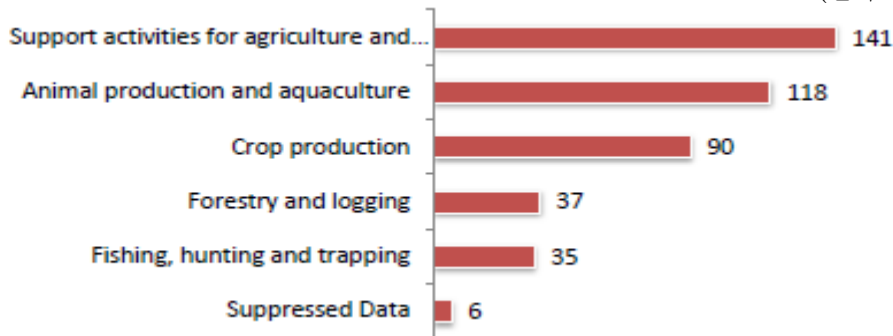
자료: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18

- 농림어업 등에 속하는 427개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5개의 세부 분류로 나누어 보면 농림 지원이 141개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 및 양식이 118개, 작물 재배가 90개로 그 뒤를 이었음<sup>11)</sup>
  - 농업과 관련된 조합(농림 지원 및 작물 재배)은 약 231개로 전체 응답 조합(5,276개)의 약 4.38%에 해당함
- 농림어업 관련 조합 수는 전체 조합 수의 약 8%로 적은 편이나 산업 규모는 약 72.0억캐나다달러로 전체 조합 규모(약 432.1억캐나다달러)의 약 16.65%를 차지함
  - 농림어업관련 조합 규모를 주별로 분석하면 퀘벡 주의 조합 규모가 약 56.1억 캐나다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남

11) 농림지원은 주로 수확된 씨앗 중 불순물을 제거하고 충실한 종자만을 선별하는 종자 정선(seed cleaning) 관련업을 의미함

[그림 III-3] 캐나다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세부분류 분포(2013년 기준)

(단위: 개)



자료: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18

<표 III-2> 캐나다 협동조합 산업별 규모(2013년 기준)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분류	규모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7,194.9
Utilities	264.7
Construction & Manufacturing	7,042.1
Wholesale Trade and Retail trade	26,476.6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134.0
Information and cultural industries	260.0
Finance and insurance	26.5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926.6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Educational services	90.6
Administrative and support,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40.4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288.4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36.8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26.4
Other services and Public administration	397.0
Unknown NAICS	1,462.8
총합	43,205.7

주: 북아메리카 산업분류기준(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라 분류함

자료: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18

[그림 III-4] 캐나다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주별 규모(2013년 기준)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주: BC: 브리티시 콜롬비아, AB: 앨버타, SK: 서스캐처원, MB: 매니토바, ON: 온타리오, QC: 퀘벡, NB: 뉴브런즈윅, NS: 노바스코샤, PE,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NL: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자료: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18

#### 나. 조세지출 보고서상 관련 제도(Patronage dividends paid as shares by agricultural cooperatives)

##### 1) 제도 개요

- 농업조합의 자본형성 지원 및 투자 유도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주식으로 지급된 이익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과세이연하고, 조합원이 지급받은 주식의 처분 시까지 소득세를 과세이연함

##### 2) 정책 대상자

- 농업조합 조합원(ITA §135.1(1))
  - 농업협동조합은 캐나다에 설립되어야 하고 주 영업활동이 농업이어야 하며,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7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협동조합 법인이어야 함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 농업협동조합 법인, 캐나다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관련 종사자여야 함

### 3) 수혜내용

- 캐나다의 경우 이익배당금에 대하여 협동조합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 조합원 배당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2단계 과세 제도를 취함<sup>12)</sup>
- 일반적으로 소비재나 서비스에 대한 배당이 아닌 경우 배당 수령 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만, 동 조세특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적격 주식의 형태로 받은 배당의 경우 해당 주식의 처분 시까지 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음
  - 주식은 2005~2021년 사이에 발행되고 발행 후 5년 이내 상환할 수 없음(ITA §135.1(1))
- 또한, 이익배당을 과세이연 협동조합증권(tax deferred cooperative share)으로 받게 될 경우 해당 주식 상환 시까지 15%의 원천징수를 이연할 수 있음(ITA §135.1(6),(7))
  - 일반적으로 이익배당금은 해당 배당을 수령한 과세연도 조합원의 소득에 포함되며 전체 배당금이 100캐나다달러 이상일 경우 15%를 원천징수함(ITA §135(3))
  -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발행되는 과세이연 협동조합증권은 농협조합 사업소득의 85%를 초과할 수 없음(ITA §135.1(3))

### 4) 조세지출 규모

- 2017년도 조세지출 보고서상 조세지출 규모는 <표 III-3>과 같음

<표 III-3>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추이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득세	2	2	1	1	2	2	2	2
법인세	5	4	3	3	4	4	4	4
총규모	5	5	5	4	5	5	5	5

주: \*항목의 경우 전년도 조세지출규모 추정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망한 값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7

12) 손원익 외(2013)

## 5) 주요 연혁

- 2005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함
  - 2015년 예산안을 통해 해당 세제혜택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함

## 2. 프랑스

### 가. 프랑스 협동조합제도의 특징

- 2015년도 매출액 기준 전 세계 상위 협동조합 10개 중 4개가 프랑스 기관일 정도로 협동조합이 발달한 국가임
  - 2016년 기준 약 22,500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2,750만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프랑스 전체 근로자의 약 5.5%에 해당함<sup>13)</sup>
- 프랑스는 법제적으로 협동조합 전체에 적용하는 공통법(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과 각각의 협동조합 활동 분야 관련 일반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함
  - 예를 들어, 모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공통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은행 형태의 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 소매업협동조합은 「상법」 일부, 농업협동조합은 농촌법 일부, 건설업협동조합법인 및 공공주택조합은 「건축법」 일부를 근거로 관리함
  - 상대적으로 공통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는 조합은 은행 형태의 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이며 나머지 기관은 설립 목적과 조합원 조건, 배당 관련 규정 등이 관련 일반법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일반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음

13) Coop FR 홈페이지, <https://www.entreprises.coop/>(검색일: 2018.4.5.)

## 나. 프랑스 협동조합 관련 세제

- 협동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협동조합이 개인 회사의 형태인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의 형태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sup>14)</sup>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를 면제함
    - 즉, 비조합원과의 거래는 과세대상이며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조합원의 지분이 50%를 넘으면 조합원 간의 거래에 의한 소득이라도 과세면제가 취소됨
  - 공공주택조합은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지닌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이 영리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가 면제됨
  
- 협동조합에 투자한 자에 대한 세제혜택 중 일부만이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프랑스 세법 중 유동자산의 소득에 대한 면세 관련 항목에서 농업 관련 상호신용기관과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 지분에 투자한 금액 자체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특례만을 조세지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다. 조세지출이 아닌 특례제도

### 1) 농업 관련 기관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농업 관련 상호신용기관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채권 또는 지분에의 투자를 통해 얻게 된 자본소득금액은 과세소득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함
  - 원칙적으로 채권이자와 예금이자를 포함한 이자소득 형태의 자본소득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위에 명시한 농업 관련 기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됨

14)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프랑스 일반세법 소득세 부분에는 농업 관련 기관만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조합을 포함한 기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업 관련 기관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합에 투자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농업분야 투자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 2) 조세지출로 분류·관리되는 특례제도

### 가)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예의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해 1986년 관련법이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예의 투자를 포함하여 농축산물 생산액 또는 구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 납세자인 농민을 수혜대상자로 하며 관련 협동조합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또는 다년생인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구입한 경우 해당액에 대하여 연간 소득공제 한도 27,000유로 내에서 5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2016년 기준 약 40,800개의 관련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협동조합 지분을 취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수혜자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협동조합은 농산물 생산 및 치즈 가공, 와인 제조 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 각 협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을 포함함

<표 III-4>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예의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추이

(단위: 백만유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득세	260	150	100	78	N/A
합계	260	150	100	78	N/A

자료: République Française,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Dépenses Fiscales』, 각 연도

### 3. 호주

- 호주에서는 중·소규모 신용조합에 대한 조세감면(Tax exemption for small and medium credit unions)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 제도 개요

- 명목 과세소득(notional taxable income)이 15만호주달러 이하인 중·소규모 신용조합(small credit unions)은 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함

#### 2) 정책대상자

- 대상 법인/대상 사업 범위 및 수혜자
  - 중·소규모 신용조합(small and medium credit unions)으로 정부로부터 ADI(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ion) 면허를 취득한 기관
    - 호주 정부가 공인한 예금수취 기관인 경우에 정책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명목과세소득(notional taxable income)이 15만호주달러 이하인 신용조합을 대상으로 함
    - 신용조합의 규모는 명목 과세소득(notional taxable income)에 따라 구분됨
    - 명목 과세소득이 50,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소규모, 5만호주달러 이상 15만호주달러 미만인 경우 중규모, 15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대규모 신용조합(large credit union)임<sup>15)</sup>

#### 3) 수혜내용

- 감면 방법
  - 중·소규모 신용조합(small credit unions)이 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저율과세

15) Sections 6H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 기준조세체계에서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소규모 신용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면제함
- 정부에서 인증하는 중규모 신용조합(medium credit unions)의 경우에도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하여 실효세율을 적용해 과세함<sup>16)</sup>

## 4. 일본

### 가. 특정협동조합 등의 법인세율 특례(特定の協同組合等の法人税率の特例)<sup>17)</sup>

#### 1) 제도 개요

- 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 800만엔 미만, 10억엔 이하, 10억엔 초과 3가지 과세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함
  - 협동조합의 소득금액 중 연간 800만엔 이하에 대하여는 본 세율 19%가 아닌 경감세율 15%를 적용함
  - 그러나 특정협동조합 등 연간 소득금액 10억엔을 초과하는 대규모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는 경감세율이 아닌 22%의 세율을 적용함

#### 2) 정책대상자

- 협동조합 등은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금고 등을 말함
  - 이 중 특정 협동조합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
    - ①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 금액 중 물품공급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기타 이용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비율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의 수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16)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Australia),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7*

17) 租税特別措置法 第六十八条

- ③ 당해 사업연도의 물품공급사업 중 매장에서 이루어진 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3) 수혜내용

- 일반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특정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2%의 세율을 적용함

<표 III-5> 일반법인 및 협동조합 법인세 세율

(단위: %)

	연간 800만엔 초과	연간 800만엔 이하
보통법인	2016년: 23.4 2018년: 23.2	-
중소법인 <sup>1)</sup>	2016년: 23.4 2018년: 23.2	19 (15) <sup>3)</sup>
공익법인 <sup>2)</sup> , 협동조합 등(단체) 및 특정의료법인(단체)	19	(15) <sup>3)</sup>
협동조합(연결) 및 특정의료법인(연결)	20	(16) <sup>3)</sup>
특정협동조합 등의 특례세율(연 소득금액 10억엔 초과)	22	

주: 1) 중소기업은 일반사단법인과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포함

2) 일반사단 법인 등 제외

3) 괄호 안은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표 III-6>에서와 같은 여타의 지원조치도 있음

<표 III-6> 법인세법 및 조세특별조치법에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조치

조치	내용
1. 경감세율	- 법인세율 19%(법인세법) - 소득 800만엔 이하: 한시적으로 세율 15%(조세특별조치법) - 특정협동조합 <sup>1)</sup> 은 매장의 매출이 연 1,000억엔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 10억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세율 22%(조세특별조치법)
2. 사업분량배당	- 사업분량배당(조합원에 대한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른 분배금)의 손금산입 가능(법인세법)
3. 대손충당금	-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가능(법인세법) - 협동조합을 위한 조치로서 한시적으로 준비금 이월한도를 12% 가산(조세특별조치법)
4. 결손금 관계	①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결손금 이월공제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법인세법) ②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결손금 환불(1년) 가능(법인세법)
5. 정책감세	- 농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감세정책의 대상(조세특별조치법)

주: 1)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 금액 중 물품공급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총수입의 50% 초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의 수가 50만명 이상, 당해 사업연도의 물품 공급사업 중 매장에서 이루어진 수입금액이 1,000억엔 이상인 법인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c04.htm](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c04.htm))

나. 협동조합 등이 가진 보통출자 관련 수취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의 특례(協同組合等が有する普通出資に係る受取配当等の益金不算入の特例)<sup>18)</sup>

1) 제도 개요

- 동 조세지출은 협동조합 상급단체에 출자한 출자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의 비중을 높이고자 도입함<sup>19)</sup>
- 각 사업연도에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연합회에 대한 보통출자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출자보유비율과 관계없이 당해 배당금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 동 조치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 법인세부터 적용

2) 정책대상자

- 협동조합 상급단체(조합연합회 등)에 출자하고 배당금을 수취하는 협동조합

3) 수혜내용

- 협동조합의 상급단체(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보통출자에 따른 수취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비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적용함

4) 주요 연혁

- 도입경과<sup>20)</sup>
  - 2015년 세제개편 당시 농협·삼협·어협 협동조합이 상급단체에 출자한 지분(대

18) 「租税特別措置法」第六十七条の八, 「租税特別措置法」第六十八条の百五

19) 협동조합의 정책목표: 협동조합은 구성원에게 최대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임.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구성원인 개별 조합원의 이익과 지역경제의 유지·활성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됨

20) 日本 農林水産省, 平成29年度地方税制改正(税負担軽減措置等)要望事項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05268.pdf](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05268.pdf))

부분 5% 미만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50%에서 20%로 인하함

- 그러나 농림산업성은 개별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농림중앙금고(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출자는 협동조합의 성격상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자산운용 목적이 아님을 주장함
  - 협동조합의 조합연합회에 대한 출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양도 또한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므로 출자로부터의 자본이득은 기대할 수 없음
  - 또한, 법률에 따라 출자배당금에 대한 상한을 마련하고 있어 배당이익이 제한되고 있음
  -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협동조합 상급단체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다시 올려줄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2017년 4월 1일 세제개편을 통하여 다시 50%로 환원함

<표 III-7> 협동조합 익금불산입 비율의 변화

<2017.4.1. 이전 사업연도> 협동조합 및 주식회사(원칙)		⇒	<2017.4.1. 이후 사업 연도> 협동조합 등(특례)
출자비율 (출자법인의 출자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익금불산입 비율		협동조합의 연합회에 대한 보통출 자에 따른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비율 일률적으로 50%로 함(신설)
5% 이하	20%		
5% 초과 ~ 1/3 이하	50%		
1/3초과	100%		

자료: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c04.htm](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c04.htm))

- 후생노동성은 2018년 세제개정요구서에서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 분  
리 목적으로 행한 현물출자는 협동조합이 일반 사업목적으로 한 출자와는 성격  
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특별조치법」상의 협동조합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수취배당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



## IV.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감면 현황





## IV.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감면 현황

### 1.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함
  -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 등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비용 등 차감전순이익)에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순이익 과세제도의 변천 및 개정 연혁을 요약하면 <표 IV-1>과 같음

<표 IV-1> 순이익 과세제도의 변천 및 개정 연혁

개정연도	개 정 내 용
1965년 12월 20일	○ 법인세 면제
1981년 12월 31일	○ 제도 신설 - 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저율 과세 : 당기순이익 × 5%
1982년 12월 31일	○ 당기순이익과세 대상에 한국은행 추가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면제
1988년 12월 26일	○ 협동조합: 당기순이익 × 5% ○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그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배제 ○ 포기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의무 부담
1990년 12월 31일	○ 협동조합: 당기순이익 × 10%
1998년 4월 10일	○ 협동조합: 당기순이익 × 12%
1998년 12월 28일	○ 협동조합: 당기순이익 × 12% - 일몰시한 신설(2003.12.31)
2000년 12월 29일	○ 협동조합: (당기순이익 +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12%

개정연도	개 정 내 용
2008년 12월 26일	○ 세율 인하: 12% → 9% ○ 일몰시한 3년 연장(2012.12.31)
2013년 1월 1일	○ 세무조정사항 추가(과다경비 등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및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등) ○ 일몰시한 2년 연장(2014.12.31)
2014년 12월 23일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분에 대해 9%, 20억원 초과분에 대해 12% 세율적용(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일몰시한 3년 연장(2017.12.31)
2015년 12월 15일	○ 2016.12.31. 이전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법인인 경우 40억원 이하인 경우 9% 적용
2017년 12월 19일	○ 일몰시한 3년 연장(2020.12.31)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는 해당 조합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기부금(해당 조합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당기순이익 기준 저율과세의 과세표준 =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등

- 조합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이익: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시 적용하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말함
  - 만일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함
  - 해당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함(「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조합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24조)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25조)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 조합법인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해당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해당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시부인 대상이 되는 기부금이 아닌 손금사항임
-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 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 조합법인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해당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해당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시부인 대상이 되는 접대비가 아닌 손금사항임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금액에는 해당 조합법인 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시행령 제69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가 적용되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협동조합법인의 범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협동조합법인의 범위를 정리하면 <표 IV-2>와 같음

〈표 IV-2〉 협동조합의 범위

근거법률	당기순이익 과세의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는 협동조합	해당 법률상의 협동조합의 종류
농업 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지역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조합(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비영리법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새마을금고(비영리법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전문조합(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염연초생산 협동조합법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염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염연초생산협동조합(사단법인), 염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염업조합법	-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염업조합

- 「법인세법」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상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영리내국법인에 해당
  -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는 달리 상법상의 회사와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짐
  
- 일반 협동조합은 소득 발생지나 소득발생 원천을 묻지 아니하고 무제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 즉 전 세계(국내 및 국외)소득에 대하여, 그리고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 또한 일반 협동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짐
  - 동일한 사업과 활동을 함에도 특별법상의 협동조합과의 과세상 차이가 있으며, 일반 협동조합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일반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다음 계산식과 같이 산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익금 - 손금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2.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 가.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 제88조의5)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저율과세(「조특법」 제89조의3)가 있음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특법」 제88조의5)
  - 다음 조합 등의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
-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020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100분의 9로 원천징수함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저율과세(조특법 제89조의3)

-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 예탁금”이라 함)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대상이자소득: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5%로 분리과세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9%로 분리과세

□ 연도별 감면세액은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유지

- 2009년부터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가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4년도 8,943억원이었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에 다시 증가함

〈표 IV-3〉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감면세액	7,520	4,501	3,022	2,966	2,331	1,904
연도	2006	2007	2008 <sup>1)</sup>	2009 <sup>2)</sup>	2010 <sup>3)</sup>	2011
감면세액	2,517	2,54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5,665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sup>4)</sup>
감면세액	7,943	8,935	8,943	7,666	5,673	5,948

주: 1) 2008년(저축지원 1) 이자소득 비과세 통합실적으로 9,704억원, 2008년(저축지원 1) 배당소득 비과세 통합실적으로 1,956억원

2) 2009년(사회복지일반 62) 사회복지기반조성 통합실적으로 10,777억원

3) 2010년(사회복지일반 55) 사회복지기반조성 통합실적으로 12,998억원

4) 잠정치임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나. 비과세 감면 제도 변천 연혁

- 조합 등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1976년(100만원)에 도입되어 1978년(500만원)→1987년(1,000만원)→1991년(2,000만원)→2009년(3,000만원)까지 4차례 한도 증액이 시행되었고 2018년말까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특히 1989년 이후 준조합원도 비과세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자본 확충을 통한 유인책으로 작용

<표 IV-4>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세법 변경사항

시행연도	변천내용
1976	예탁금 100만원 비과세 신설 시행 <조감법 제3조>
1978	예탁금 비과세한도 인상(100만원→500만원) 시행 → 예탁금 500만원 한도 <조감법 제3조>
1987	예탁금 비과세한도 인상 <조감법 제4조> (예탁금 500만원→1,000만원 한도)
1989	준조합원을 비과세대상자에 포함 시행 <조감령 제2조의2>
1991	예탁금 2,000만원으로 한도 증액 시행 <조감법 제4조>
1995	감면 일몰제 도입 <조감법 부칙 제1조> - 1995~1996년: 비과세, 1997~1999년: 5%
1997	감면기한 2년 연장(1996.12.30 개정) <조감법 부칙 제1조> - 1997~1998년: 비과세, 1999년 이후: 5%
1999	감면기한 2년 연장(1998.12.28 개정) <조특법 제89조, 동 부칙> - 1999~2000년: 비과세, 2001년: 5%, 2002년 이후: 10%
2001	감면기한 3년 연장(2000.12.29.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별도조문 신설 - 2001~2003년: 비과세, 2004년: 5%, 2005년 이후: 10%
2004	감면기한 3년 연장(2003.12.30.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 2004~2006년: 비과세, 2007년: 5%, 2008년 이후: 10%
2007	감면기한 3년 연장(2006.12.30.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 2007~2009년: 비과세, 2010년: 5%, 2011년 이후: 9%
2009	한도인상 및 기한연장(2008.12.26 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 2,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인상) - 2012년말까지 연장 - 2009~2012년: 비과세, 2013년: 5% 2014년 이후: 9%
2013	- 2015년말까지 연장(2013.01.01 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 2013~2015년: 비과세, 2016년: 5% 2017년 이후: 9%
2015	- 2018년말까지 연장(2015.12.15 개정) <조특법 제89조의3> - 2015~2018년: 비과세, 2019년: 5% 2020년 이후: 9%

자료: 기획재정부, 법제처

- 조합 등의 비과세 출자금제도는 1976년(200만원)에 도입되어 1988년(500만원) → 1991년(1,000만원)까지 2차례 한도 증액되었고, 2018년말까지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1995년 비과세 감면 일몰제를 도입한 후 2001년까지 3차례 감면시한을 연장하였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
  - 그러나 2007년에 감면 일몰제를 재도입함으로써 3년마다 일몰 연장을 하였고, 2018년 말에 일몰 종료 예정

〈표 IV-5〉 비과세 출자금에 대한 세법 변경사항

시행연도	변천내용
1976	출자금 200만원 비과세 신설 최초 시행
1987	출자금 비과세 한도 인상: 200만원 → 500만원
1991	출자금 비과세 한도 인상: 500만원 → 1,000만원
1995	감면 일몰제 도입, 이후 2001년까지 3회에 걸쳐 감면시한 연장
2001	영구 비과세로 전환
2007	감면 일몰제 재도입('09년말까지)
2009	일몰 연장(2012년말까지)
2013	일몰 연장(2015년말까지)
2015	일몰 연장(2018년말까지)

자료: 기획재정부, 법제처

### 3.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출자금·예탁금 현황<sup>21)</sup>

#### 가. 농업협동조합

##### 1) 조합원 현황

- 2017년말 기준 농협의 조합 수는 1,131개이며 (준)조합원 수는 모두 1,956만 8천명으로 이 가운데 조합원이 222만명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준조합원 수는 1,735만명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하여 준조합원이 조합원의 8배 수준임

21) 본 절에서의 출자금·예탁금 통계는 각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제II장에서의 금융감독원 자료와 약간 차이가 있음

- 조합당 조합원 수는 1,954명,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15,301명이며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는 17,256명

<표 IV-6> 농협의 조합원 현황: 2017년말

(단위: 개, 명)

조합수	조합원수		준조합원 수		합계	
	전국	조합당 조합원 수	전국	조합당 준조합원 수	전국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
1,131	2,216,221	1,954	17,351,897	15,301	19,568,118	17,256

자료: 농협

## 2) 예탁금

- 2017년 기준 총예탁금 296조 5,354억원 중 비과세예탁금은 52조 3,898억원으로 1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이래 하락세임
  -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81.1%로 조합원 예탁금 18.9%에 비해 약 4.3배 많음

<표 IV-7>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금액	금액
총예탁금(A)		2,588,000	2,741,091	2,965,354
비과세 예탁금 (B)	조합원	102,793 (18.6)	99,538 (19.0)	99,154 (18.9)
	준조합원	450,651 (81.4)	425,488 (81.0)	424,744 (81.1)
	계	553,444	525,026	523,898
비율(B/A)		21.4	19.2	17.7

주: ( ) 안의 숫자는 비과세예탁금 중에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금액 비중을 표시  
자료: 농협

- 농협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사업과 생산·유통·가공·소비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권익 대변과 도농교류·농업인 복지·사회공헌활동 등 농업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조 2,798억원에서 2016년 1조 4,23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1조 5,651억원으로 증가
  -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신용사업에서만 당기이익 발생
    - 경제사업은 최근 4,348억~5,694억원의 당기손실 발생
    - 농업인 지원사업의 경우 3년간 9,182억~9,619억원 정도 당기손실 발생
  
- 농업인 배당을 살펴보면 2015년 5,234억원에서 2016년 5,47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5,680억원으로 증가

<표 IV-8> 농협의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사업부문별 손익			당기손익 (D=A+B+C)	농업인배당
	신용사업 (A)	경제사업 (B)	농업인지원사업 (C)		
2014년	26,196	△4,406	△9,438	12,352	6,382
2015년	26,328	△4,348	△9,182	12,798	5,234
2016년	27,913	△4,304	△9,376	14,233	5,470
2017년	30,964	△5,694	△9,619	15,651	5,680

주: 당기손익 중 농업인 배당은 농협법에 의하여 법정적립금(10%), 농업인 지원사업을 위한 차기 법정이월금(20%), 농업인 탈퇴시 개인별로 지급하기 위한 사업준비금(20%) 적립후 실시  
 자료: 농협

### 3) 출자금

- 농협의 출자금을 살펴보면 2015년 9조 9,544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1조 3,148억원
  - 2015년에 출자금이 전년 대비 19.6%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7년에 6.7%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IV-9> 농협의 출자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자금 잔액	83,239	99,544	106,086	113,148
증가율	-	19.6	6.6	6.7

자료: 농협

- 총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9.3%였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 64.0%를 기록
  - 농협의 총출자 배당금은 2015년 3,332억원에서 2017년 3,044억원으로 감소
  - 총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은 2015년 2,244억원에서 2017년 1,948억원으로 감소

<표 IV-10> 농협의 출자 배당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배당금(A)	3,314	3,332	3,189	3,044
비과세 배당금(B)	2,296	2,244	2,090	1,948
비율(B/A)	69.3	67.3	65.5	64.0

자료: 농협

## 나. 수산업협동조합

### 1) 조합원 현황

- 2017년말 기준 수협의 조합 수는 91개이며, 조합원 수는 약 16만명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하고 준조합원 수는 약 137만명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
  - 조합당 조합원 수는 1,745명,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15,033명이며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는 16,778명

<표 IV-11> 수협의 조합원 현황(2017년말 기준)

(단위: 개, 명)

조합수	조합원 수		준조합원 수		합계	
	전국	조합당 조합원 수	전국	조합당 준조합원 수	전국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
91	158,817	1,745	1,367,961	15,033	1,526,778	16,778

자료: 수협

- 어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6년 동안 어가 가구는 연평균 3.2% 감소, 인구는 연평균 3.8% 감소하였으며, 소득은 4.8% 증가
  - 2014년 어가소득은 연 4,101만 5천원에서 2016년 연 4,707만 7천원으로 증가
- 어가소득 중 이자 및 배당이 포함된 사업외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6년 동안 연평균 5.5% 수준으로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2016년 동안 어가소득에서 사업외수입 중 자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3.7% 정도

<표 IV-12> 어가 인구 및 어가소득

(단위: 가구, 명, 천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어업인	가구	58,791	54,793	53,221
	인구	141,344	128,352	125,660
어가소득(A)		41,015	43,895	47,077
사업외수입 중 자본수익(B)		1,479	1,617	1,560
사업외수입 중 자본수입 비중(B/A)		3.6	3.7	3.3

주: 1. 어가소득=어업소득+어업외소득(겸업소득, 사업이외 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사업외 수입=근로수입(급료, 어업임금)+자본수입(이자 및 배당, 유가증권, 농지임대, 어업용임대, 기타임대)

자료: 통계청, 해양수산부

## 2) 예탁금

- 수협의 총예탁금은 2015년 18조 8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2조 9,310억원이며, 비과세 예탁금은 2015년 5조 1,398억원에서 2017년 5조 6,634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전체 예탁금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5%에서 2017년 24.7%로 감소

<표 IV-13> 수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금액	금액
총예탁금(A)		180,081	203,204	229,310
비과세 예탁금 (B)	조합원	2,855 (5.6)	2,913 (5.6)	3,076 (5.4)
	준조합원	48,542 (94.4)	49,578 (94.4)	53,558 (94.6)
	계	51,398	52,492	56,634
비율(B/A)		28.5	25.8	24.7

주: ( ) 안의 숫자는 비과세예탁금 중에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금액 비중을 표시  
 자료: 수협

## 3) 출자배당금

- 수협의 회원조합에 대한 최근 3년간(2015~2017년)의 평균 배당금은 약 226억원으로 2015년 208억원에서 2017년 약 246억원으로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였음
- 배당금 평균 증가율은 5.8%

<표 IV-14> 수협의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배당금	20,836	22,411	24,600

자료: 수협

- 2015~2017년 동안 출자금에 대한 배당과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자 배당금 중 출자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금이 2015년 74.6%, 2016년 73.5%, 2017년 72.4%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출자금 1천만원 초과에 대한 배당금은 증가 추세
  
- 2015년의 총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4.6%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6년 73.5%, 2017년 72.4%를 기록
  - 수협의 총출자 배당금은 2015년 115억원에서 2017년 120억원으로 증가
  - 총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은 2015년 86.2억원에서 2017년 약 86.9억원으로 7천만원 정도 증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표 IV-15〉 수협의 출자배당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출자 배당금			이용고 배당 (D)	합계 (E=C+D)
	1천만원 이하(A)	1천만원 초과(B)	합계 (C=A+B)		
2015년	8,624 (74.6)	2,939 (25.4)	11,563 (100.0)	9,273	20,836
2016년	8,488 (73.5)	3,062 (26.5)	11,550 (100.0)	10,861	22,411
2017년	8,691 (72.4)	3,317 (27.6)	12,008 (100.0)	12,592	24,6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수협

## 다. 산림조합

### 1) 조합원 현황

- 2017년말 기준 산림조합의 조합 수는 137개이며, 조합원 수는 47만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준조합원 수는 33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
  -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합원 수가 준조합원 수보다 많다는 특징
  - 조합당 조합원 수는 3,418명,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440명이며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는 5,858명

<표 IV-16>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2017년말

(단위: 개, 명)

조합수	조합원 수		준조합원 수		계	
	전국	조합당 조합원 수	전국	조합당 준조합원 수	전국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
137	468,308	3,418	334,224	2,440	802,532	5,858

자료: 산림조합

## 2) 예탁금

- 2017년 기준 총예탁금 4조 9,531억원 중 비과세예탁금은 1조 2,873억원으로 2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29.8% 이래 하락세임
  - 비과세 예탁금은 총예탁금의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81.3%로 조합원 예탁금 18.7%에 비해 약 4.3배 많음
  - 산림조합은 타 조합에 비해, 조합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비과세 예탁금으로 수혜를 받는 금액이 전체 비과세 예탁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적은 편임

<표 IV-17>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금액	금액
총예탁금(A)		42,462	44,894	49,531
비과세 예탁금 (B)	조합원	2,149 (17.0)	2,197 (17.7)	2,410 (18.7)
	준조합원	10,525 (83.0)	10,243 (82.3)	10,463 (81.3)
	계	12,674	12,440	12,873
비율(B/A)		29.8	27.7	26.0

주: ( ) 안의 숫자는 비과세예탁금 중에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금액 비중을 표시  
 자료: 산림조합

-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02억원에서 2017년 242억원으로 감소하여 2015년과 비교하면 39.8% 감소

<표 IV-18> 산림조합의 이자소득 지급액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자소득	456	402	286	242
증가율	△23.6	△11.8	△28.9	△18.2

자료: 산림조합

### 3) 출자금

- 산림조합의 출자금을 살펴보면 2015년 1,793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31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IV-19> 산림조합의 출자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자금 잔액	1,793	2,041	2,311
증가율	-	13.8	13.2

자료: 산림조합

- 2017년 총배당금 74억원 중 출자 배당금이 58억원, 이용고 배당금이 16억원  
 ○ 출자 배당금 중 과세부분은 33억원(56.9%), 비과세 부분은 각각 25억원(43.1%)이며, 이용고 배당 중 과세 배당 실적은 없고 전액이 비과세 이용고 배당임

<표 IV-20> 산림조합의 출자배당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출자 배당금			이용고 배당금			합계
	과세	비과세	총배당금	과세	비과세	총배당금	
2015년	30 (50.0)	30 (50.0)	60 (100.0)	0	16	16	76
2016년	29 (53.7)	25 (46.3)	54 (100.0)	0	16	16	70
2017년	33 (56.9)	25 (43.1)	58 (100.0)	0	16	16	74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산림조합

## 라. 신용협동조합

### 1) 조합원 현황

- 2015년 신협의 조합 수는 910개에서 2017년 898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조합당 조합원 수는 6,321명에서 2016년 6,417명, 2017년 6,645명으로 소폭 증가

〈표 IV-21〉 신협의 조합원 현황

(단위: 개, 천명, 명)

2015년			2016년			2017년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당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당 조합원수	조합 수	조합원 수	조합당 조합원수
910	5,752	6,321	904	5,801	6,417	898	5,967	6,645

자료: 신협

### 2) 예탁금

- 2015년 총수신 51조 7,681억원 중 비과세 예탁금은 32조 1,986억원(62.2%)으로 2014년(44.7%)과 비교하면 총수신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p 급증하였음
- 총수신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에 62.2%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전체 예탁금의 56.4% 정도가 비과세 예탁금임

〈표 IV-22〉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예금(A)	536,393	517,681	582,691	655,266
비과세예탁금(B)	239,744	321,986	345,604	369,825
비율(B/A)	44.7	62.2	59.3	56.4

자료: 신협

- 2014년 이후 가입자 1인당 평균 비과세 예탁금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954만원이던 평균 가입금액이 2017년 2,047만원으로 소폭 증가

<표 IV-23> 신협외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수 및 평균 가입금액

(단위: 천명,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입자 수	1,729	1,647	1,636	1,806
평균 가입금액	13,865	19,539	20,149	20,472

자료: 신협

- 2017년 비과세 예탁금액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 가입자가 28.1%, 1천만원~3천만원 구간 가입자가 36.6%, 3천만원 이상 구간 가입자가 35.3%로 나타남
  - 비과세 예탁금은 3천만원 이하 가입자가 가입자 수에 있어서는 전체의 64.7%이나 가입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43.5%이며, 전체 평균하면 1인당 비과세 예탁금액은 2,047만원 수준

<표 IV-24> 신협외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수 및 예탁금액별 분포(2017년)

(단위: 천명, 억원, 만원, %)

구분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	합계
가입자 수	507(28.1)	661(36.6)	638(35.3)	1,806(100.0)
예탁금	23,186(6.3)	137,531(37.2)	209,041(56.5)	369,758
1인당 예탁금액	457	2,080	3,276	2,047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신협

### 3) 출자금

- 비과세 출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2조 6,912억원에서 2017년 3조 1,49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왔음

<표 IV-25> 신협외 비과세 출자금 현황

(단위: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9,233	26,912	30,159	31,493

자료: 신협

- 전체 조합원 중 비과세 출자금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6.7%, 2016년 72.4%, 2017년에는 71.8%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표 IV-26> 신협외 비과세 출자금 조합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조합원(A)	35,089	41,652	43,892
비과세 조합원(B)	26,912	30,159	31,493
비과세 조합원 비율(B/A)	76.7	72.4	71.8

자료: 신협

- 2015~2017년 출자금액별 계좌 수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인 출자금의 계좌 수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출자자 비중이 높으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계좌 수는 0.03~0.1%에 불과
- 출자금 1천만원 미만인 계좌 수가 2015~2017년 동안 전체의 99%를 넘어서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표 IV-27> 신협외 출자금액별 계좌 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1백만원 미만	5백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합계
2015년	5,919,033 (90.9)	376,851 (5.8)	182,475 (2.8)	21,455 (0.3)	10,020 (0.2)	2,712 (0.04)	6,512,546 (100.0)
2016년	6,023,583 (90.2)	400,455 (6.0)	211,954 (3.2)	26,269 (0.4)	12,588 (0.2)	3,958 (0.1)	6,678,807 (100.0)
2017년	6,250,409 (90.4)	400,074 (5.8)	216,196 (3.1)	29,829 (0.4)	13,478 (0.2)	4,274 (0.1)	6,914,260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신협

-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인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39.2%에서 2017년 37.3%로 감소
  - 2016년 대비 2017년의 배당성향은 약 5%p 정도 감소하였고, 총당기순이익이 2015년 2,350억원에서 2017년 3,345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비과세 배당금은 2015년 686억원에서 2017년에 893억원으로 증가
  - 총배당금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4.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71.6% 수준

〈표 IV-28〉 신협외 배당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당기순이익(A)	1,896	2,350	2,282	3,345
배당금액(B)	888	921	965	1,247
과세	180	235	280	354
비과세(C)	708	686	685	893
배당성향(B/A)	46.8	39.2	42.3	37.3
비과세배당금 비중(C/B)	79.7	74.5	71.0	71.6

자료: 신협

## 마. 새마을금고

### 1) 조합원 현황

- 2015년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335개에서 2017년 1,315개로 감소하였고, 회원 수도 2015년 921만 4천명에서 2017년 843만 2천명으로 감소

〈표 IV-29〉 새마을금고의 회원 현황

(단위: 개, 천명, 명)

2015년			2016년			2017년		
금고 수	회원 수	금고당 회원 수	금고 수	회원 수	금고당 회원 수	금고 수	회원 수	금고당 회원 수
1,335	9,214	6,902	1,321	9,094	6,884	1,315	8,432	6,412

자료: 새마을금고

## 2) 예탁금

- 회원과 비회원을 합한 모든 거래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927만명인 반면, 새마을금고 전체 개인 회원 수는 843만 2천명이고, 이 중 예탁금 가입자는 236만 7천명
  - 2015년과 비교할 때 2017년의 금고 거래인원과 예탁금 가입자 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새마을금고 회원 수는 감소하였음

〈표 IV-30〉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거래 인원(회원+비회원)(A)	18,144	18,578	19,102	19,270	
새마을금고 회원수(B)	9,315	9,214	9,094	8,432	
조합예탁금 가입자(C)	2,616	2,347	2,322	2,367	
비율	C/B	28.1	25.5	25.5	28.1
	B/A	51.3	49.6	47.6	43.8

자료: 새마을금고

- 2014년 새마을금고의 총예탁금은 106조원에 육박하던 것이 2015년에 87조 6,218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06조 5,033억원임
  - 비과세 예탁금은 2014년 43조 7,065억원에서 2016년 36조 6,919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41조 1,39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예탁금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1.3%이었던 것이 2015년에 44.9%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 38.6%로 감소하였음

〈표 IV-31〉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예탁금(A)	1,058,864	876,218	968,438	1,065,033
비과세 예탁금(B)	437,065	393,576	366,919	411,390
비율(B/A)	41.3	44.9	37.9	38.6

자료: 새마을금고

- 2017년말 기준 예탁금 금액별 거래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예탁금이 3천만원 이하인 거래자가 전체의 89.2%를 차지
  - 예탁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80.1%, 다음으로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9.1%,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5.9%를 차지

<표 IV-32>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탁금 금액(합산)별 거래자 수 분포 현황(2017년)

(단위: 천명, %)

구분	5백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합계
거래자 수	10,530	560	1,253	819	499	183	13,844
비율	76.1	4.0	9.1	5.9	3.6	1.3	100.0

자료: 새마을금고

### 3) 출자금

-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계좌 수는 2014년 671만 계좌에서 2017년 664만 계좌로 감소한 반면 비과세 배당액은 2014년 1,392억원에서 2017년 1,760억원으로 증가
  - 비과세 출자금에 대한 감면액은 2014년 195억원에서 2017년 246억원으로 증가

<표 IV-33>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출자금 추이

(단위: 천좌,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좌수		6,705	6,810	6,616	6,642
배당금액	과세	197	226	261	331
	비과세	1,392	1,515	1,500	1,760
감면효과		195	212	210	246

자료: 새마을금고

## 바. 소결

### 1) 비과세 예탁금

- 이상에서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이 5개 상호금융기관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제1그룹)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제2그룹)는 직장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서민 대상의 상호금융기관
  - 제1그룹은 준조합원제도를 통하여 가입을 개방하고 있으며, 제2그룹은 회원제(신협은 조합원)로 운영하여 준조합원이 없음
  - 제1그룹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나 직종에 따른 협동조합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제2그룹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큼
  - 또한 제2그룹은 제1그룹과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의 영업 규모가 훨씬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제1그룹의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는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비중은 전체 예탁금에 대비하여 높지 않은 편이나, 동시에 비과세 예탁금에서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표 IV-39> 참조)
  - 제2그룹의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제1그룹에 비하여 높으며, 특히 신협의 경우에는 전체 예탁금의 절반 이상이 비과세 예탁금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신협의 경우에도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예탁금 비과세 한도인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체의 56.5%를 차지함<sup>22)</sup>
    - 즉 신협의 비과세 예탁금 1인 평균은 2,047만원으로서 비과세 적용대상금액으로 보이지만, 다른 조합에의 불입 등의 이유로 실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탁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
    - 이러한 예탁금의 유치는 비과세가 예탁의 주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22) 인원으로 보면 전체 예탁금 가입자의 35.3%가 3천만원 이상 가입자임(<표 IV-24> 참조)

- 반면, 비과세 배당금은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출자금은 대부분 비과세 한도인 1천만원 내에서 출자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표 IV-34> 기관별 비과세 예탁금·배당금 비중(2017년 기준)

(단위: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	17.7	24.7	26.0	56.4	38.6
준조합원의 예탁금 비중	14.4	23.4	21.1	-	-
비과세 배당금	64.0	72.4	43.1	71.5	84.2

- 또한 제1그룹보다는 제2그룹의 비과세 예탁금·배당금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그룹은 협동조합의 성격보다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신협과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에게는 조합의 복합적 혜택보다는 비과세혜택이 보다 중요한 거래 이유임을 짐작할 수 있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개인 회원의 28.1%만이 예탁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7년말 기준으로 예탁금이 3천만원 이하인 거래자가 전체의 89.2%를 차지함<sup>23)</sup>
  - 인원 기준으로 89.2%가 예탁금 3천만원 이하인데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전체의 38.6%라는 것은 금액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예탁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반증함
  
- 신협의 1인당 평균 비과세 예탁금 수준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 거래자 비중을 <표 IV-34>에 견주어 보면, 3천만원이 넘는 과세 예탁금도 금액으로는 상당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예탁금은 비과세 여부에 관심이 없는 예탁금이라고 볼 수 있음

23) 세부적인 금액기준 자료는 입수하지 못함

- 따라서 현재의 비과세 예탁금으로 한정한다면 3천만원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한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 비과세 출자금

- 2017년의 총출자 배당금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합별로 비교하면 농협은 64.0%, 수협은 72.4% 산림조합은 43.1%임
  - 농협의 경우 2015년 비과세 출자 배당금 비중이 67.3% 수준이었다가 2016년 65.5%, 2017년 64.0%로 감소
  - 수협의 경우 2015년 비과세 출자 배당금 비중이 74.6%이었다가 2016년부터 감소하여, 2017년에 72.4%임
  - 산림조합은 2015년 비과세 출자 배당금 비중이 50.0%이었다가 2016년 46.3%으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 43.1%으로 하락하였음
- 신협의 경우 출자금에 대한 전체 배당금 대비 비과세 배당금의 비중이 71.5%, 새마을금고는 81.7%
  - 신협의 경우, 1천만원 미만 출자금 계좌 수가 전체의 99.3%로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본다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천만원 미만의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음
- 배당금의 경우에는 예탁금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비중이 크고, 특히 수협,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출자금은 회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가입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조합에서의 의사 결정이 1인 1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을 많이 납부할 유인은 없음
  - 다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산출은 1년 만기 정기에탁금 결산기준 연평균금리보다 1~2% 높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출자금을 많이 납부하려는 유인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배당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합한 금액인 4천만원을 채울 만큼의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굳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 출자금을 납부할 유인은 없다고 판단됨
- 이러한 이유로 출자금은 대부분 비과세 한도인 1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4. 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여 조합 등은 두 가지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에 한하여)
  -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조합 등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용고 배당)
  - 각 상호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을 보전하고 재적립금을 적립한 후 남은 잔여금에 대해 배당을 실시
- 이하에서는 각 조합별 출자금 배당과 이용고 배당에 관한 규정 및 배당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봄
  - 준조합원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은 출자의 개념이 없고 가입금과 경비를 분담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준조합원에게는 출자금 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이용고 배당만 실시하고 있음

##### 가. 농업협동조합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에 있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간의 규정은 매우 유사함
  - 중앙회 정관 제126조 제1항/ 제68조 제3항에서 잉여금 배당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음
    - i)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ii)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iii)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 지역농협 정관 제147조 제2항에서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배당의 순서를 규정하여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배당 실시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 배당액 중 20% 이상 배당이 정해지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함

- (중앙회) 정관 제126조(잉여금배당)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에 의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의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행하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배당액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항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명시

- (지역농협) 정관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제1항에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147조 제2항에 따른 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sup>24)</sup>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 출자금에 대한 배당산출은 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다르지만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2%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최고 10%를 초과할 수는 없음

- (중앙회) 정관 제126조(잉여금배당) 제3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에 의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결산기준 연 평균

24) 제148조 제3항에서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조합경영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게 함

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본회의 경영성과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

- (지역농협) 정관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제2항에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수산업협동조합

- 수협의 경우에는 배당의 우선 순위가 농협과 다름
  - 정관 제96조(잉여금의 처분) 제2항에서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비율에 따라 배당을 실시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이내에서 배당이 정해지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며 정해진 최저 배당률은 없음
  - 정관 제97조(잉여금의 배당) 제1항에서 “회원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회원의 납입완료 출자금에 따라 이를 행하되 그 율은 각 사업부문 배당금을 합하여 회원조합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연평균금리가 100분의 10을 넘더라도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
  - 정관 제97조(잉여금의 배당) 제3항에서 “사업의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 가격,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이를 행한다”라고 명시

#### 다. 산림조합

-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다시 농협의 경우와 동일한 우선 순위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함

- 정관 제77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제2항에서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배당하게 됨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며 정해진 최저 배당률은 없지만 조합 이사회의 결정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에탁금 연평균금리에 2%를 더한 범위 내에서 배당이 정해지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음
  - 정관 제78조(잉여금의 배당) 제1항에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그 밖의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명시
  - 정관 제78조(잉여금의 배당) 제2항에서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이 경우 배당률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에탁금 연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

## 라. 신용협동조합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총회의 결의로 실시하며,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조합사업의 이용분량 비율에 근거해 배당을 실시하는데 정해진 최저 배당률은 없으며, 정관에서 배당률에 대한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정관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1항에서 “조합은 매 사업연도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제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한다”고 규정
  - 정관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 또는 조합사업 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고 되어 있어 특별히 우선 순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음
  - 배당금 계산은 제72조(배당금의 계산)에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평잔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당하도록 규정

## 마.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의 경우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배당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총회 의결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음
  - 정관 제59조(잉여금의 배당) 제1항에서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배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배당률에 대한 상한은 없음
  - 정관 제59조(잉여금의 배당)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행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

## 바. 소결

- 이상으로 상호금융기관별 정관을 살펴보면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경우 농협에서만 사업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총배당액 중 20% 이상을 배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배당률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음
- 배당의 우선 순위는 <표 IV-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출자액 비율 또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고,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함
  - 농협과 산림조합은 i)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ii) 회원의 납입출자액 iii)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 수협의 경우에는 i) 회원의 납입출자액 ii)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 농협의 경우에만 이용고 배당에 대하여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나머지 4개의 기관은 특별한 최저한 없이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실시
  - 농협은 사업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총배당액 중 20% 이상을 배당

〈표 IV-35〉 상호금융기관 배당 우선 순위

구분	배당의 우선 순위
농협	①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②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③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수협	①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②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산림조합	①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②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③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신협	•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 또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새마을금고	①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②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음

자료: 각 기관의 정관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경우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2% 가산되며 최고 10%를 초과할 수 없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회 의결에 따라 배당이 정해짐

〈표 IV-36〉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 산식

구분	배당률
농협	• (중앙회)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금리 + 1% 이내, 최대 10% 미만 • (지역농협)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 이내, 최대 10% 미만
수협	•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이내, 최대 10% 미만
산림조합	•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 이내, 최대 10% 미만
신협	• 총회 의결에 따라 배당
새마을금고	• 총회 의결에 따라 배당

자료: 각 기관의 정관

## V.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V.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1. 설문조사의 설계

#### □ 설문조사의 목적

- 이 설문조사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에 출자금이나 예탁금이 있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비과세 상품에 대한 인식, 가입 당시의 상황, 가상적인 세계개편에 대한 반응 등을 분석하는 데 있음
-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제도를 이용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들의 비과세 제도에 대한 인식과 비과세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 이 제도에 대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 □ 설문의 개요: 설문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성됨

- 응답자 개인 특성
- 출자금 및 예탁금 가입현황
-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 목적과 상황
-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
- 출자금과 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된 행태
- 응답자의 소득, 자산, 지출 현황
- 인구통계학 정보

### 2. 표본의 성격

#### □ 표본은 예탁금·출자금을 불입한 가입자 1,054명으로 구성됨

- 표본 중 농협 458명, 신협 332명, 새마을금고 341명인데, 이 중 농협과 신협 동

시 가입자가 26명, 신협과 새마을금고 동시가입자는 19명, 새마을금고와 농협 동시 가입자는 42명임

-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개인 대면 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함

□ 응답자의 개인 특성은 <표 V-1>에 요약되어 있음

- 남자는 530명으로 50.3%, 여자는 524명으로 49.2%로 거의 동수이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29.5%(311명), 40~50대가 31.7%(327명), 60대 이상은 39.5%(416명)로 고령층의 비중이 다소 높음
-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약 3분의 1과 비수도권 3분의 2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결과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의 권역별로 제시함
- 학력은 중졸 이하 14.8%, 고졸 49.6%, 전문대졸 이상 35.8%로 구성됨

<표 V-1> 최종 표본의 분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조합별	농협	458	43.5
	신협	332	31.5
	새마을금고	341	32.4
성 별	남자	530	50.3
	여자	524	49.7
연 령	만20~39세	311	29.5
	만40~59세	327	31.0
	만60세 이상	416	39.5
거주지역	서울	120	11.4
	경기/인천	234	22.2
	대전/충청	141	13.4
	광주/전라	145	13.8
	대구/경북	167	15.8
	부산/울산/경남	202	19.2
학 력	중졸 이하	156	14.8
	고졸	523	49.6
	대졸/전문대졸	372	35.3
	대학원 이상	3	0.3

□ 또한 응답자의 소득별 및 자산별 분포는 <표 V-2>와 같음

- 응답자의 개인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대략 월 300만원 이하가 27%, 300~500만원 사이가 40%, 500만원 이상이 33% 정도임
- 개인과 가구 총자산 분포에서는 무응답이거나 불충분 응답인 18% 정도로 많았으며 전체 표본중에서 1억원 미만인 7.2%, 1억~2억원 사이가 17.9%, 2억~3억원 미만인 19.62%, 3억~5억원이 22.6%, 5억원 이상이 15.6%로 3~5억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 불충분 응답은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등의 자산 항목 중 일부 항목에 응답을 하지 못한 경우임
- 소득이 낮을수록 무응답 혹은 불충분 응답이 많은 경향이 있어 무응답자들은 응답자들에 비해 자산이 낮은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됨
- 가구 금융자산 분포를 보면 1천만~3천만원 구간이 32.6%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구간이 22.8%, 5천만~1억원 사이가 24.2%로 그다음을 차지하여 1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약 80%를 차지

<표 V-2> 응답자의 소득·자산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	0.95
	100~300만원 미만	277	26.3
	300~500만원 미만	420	39.9
	500~700만원 미만	273	25.9
	700만원 이상	74	7.0
가구 총자산	1억 미만	76	7.2
	1억 ~ 2억	189	17.9
	2억 ~ 3억	207	19.6
	3억 ~ 5억	238	22.6
	5억 ~ 10억	129	12.2
	10억 이상	25	2.4
	모름/불충분 응답	190	18.0
가구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99	9.4
	1,000~3,000만원	344	32.6
	3,000~5,000만원	240	22.8
	5,000만원~1억	255	24.2
	1억 이상	74	7.0
	모름/무응답	42	4.0

- 표본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회원구분과 조합구분은 다음과 같음
  - 농협은 조합원과 준조합원만을 설문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58명 중 조합원은 33.6%인 154명이며 준조합원은 66.4%인 304명임
  - 신협의 경우, 총응답자 331명 중 지역신협이 9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 가입 응답자 총 341명 중에는 지역새마을금고가 94.4%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V-3> 응답자의 조합가입 현황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농협	조합원	154	14.6(33.6)
	준조합원	304	28.8(66.4)
신협	지역신협	309	29.3(93.1)
	단체신협	4	0.4(1.2)
	직장신협	19	1.8(5.7)
새마을금고	지역새마을금고	322	30.6(94.4)
	직장새마을금고	19	1.8(5.6)

주: ( ) 안은 각 기관에서 세부 구분 그룹이 차지하는 응답자 비율임

### 3. 설문분석의 결과

#### 가.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가입현황

- 조합 등에 출자한 응답자 1,131명(두 조합에 동시에 가입한 인원들 포함) 중 예탁금 가입자는 71.3%인 806명이고, 출자만 하고 예탁금에는 미가입한 사람들은 28.7%인 325명임(<표 V-4> 참조)

<표 V-4> 응답자의 출자금·예탁금 동시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출자하고 예탁금에 가입	806	71.3
출자만 하고 예탁금에 미가입	325	28.7
합 계	1,131	100.0

- 응답자의 출자금 가입금액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협 출자금은 평균 467만원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분포하는데, 1만원은 준조합원 가입 시 최소 출자하는 금액이며 비과세 출자금한도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도 관찰됨
    - 가장 빈도가 높은 출자금액은 최소 출자액인 1만원으로 120건이며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금액은 한도인 1천만원으로 33건으로 나타남
    - 비과세 한도 1천만원을 넘는 출자 건수는 20건으로 약 4.5%에 달함
  - 신협 출자금은 평균 약 248만원이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분포
    - 빈도가 가장 높은 출자액은 최소액인 1만원과 10만원으로 두 금액은 각각 51건으로 두 금액을 출자한 빈도가 약 30%에 달함
    - 1천만원 이상의 출자 건수는 9건으로 3.4% 정도임
  -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평균 302만원으로 최소 1만~1억원의 분포를 보임
    - 역시 빈도가 가장 높은 출자액은 최소액인 1만원으로 71건이며 이는 새마을금고 출자 표본의 21%에 달함
    - 1천만원 이상의 출자는 12건 3.5%가량임
  - 농협 출자금의 중간값은 50만원, 신협 출자금은 15만원,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중간값은 13만원으로 상당수의 가입자가 50만원 미만으로 출자금을 유지함을 보여줌

〈표 V-5〉 응답자의 출자금 가입금액

(단위: 만원)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출자금	농협	467.49	1735.94	1	50	30,000
	신협	248.36	604.51	1	14	6,000
	새마을금고	302.53	862.64	1	50	10,000

- 출자금액의 집단별,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출자금의 자연대수값을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실시
  - 설명변수로는 수도권 더미, 동(읍면 지역에 대비한), 소득계층(월소득으로 300만원 이하, 300만~500만원 중간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 금융자산 많음(금융자산 1억원 이상). 대출 이상 여부 등을 이용했음

- 회귀분석 결과 출자금은 수도권에서 높고, 고소득층에서 높으며, 자산이 많은 계층에서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조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농협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들의 출자금액이 8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탁이나 새마을금고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음
- 고소득층은 조합별로 저소득층에 비해 61~85% 출자금액이 많았음
- 농협의 경우 금융 자산이 1억원 이상인 계층의 출자금이 그 이하 계층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음
- 가입기간이 길수록 출자금이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가입 기간이 1년에 늘어날 수록 6% 정도 출자금이 증가하고 있음
- 농협의 경우 준조합원의 출자금이 현저하게 낮음

〈표 V-6〉 출자금액 회귀분석

	전체	농협	신탁	새마을금고
수도권	0.514*** (0.192)	0.858*** (0.302)	0.298 (0.310)	0.535 (0.326)
동/읍면	-0.162 (0.194)	0.368 (0.297)	-0.500 (0.316)	0.180 (0.322)
중간소득	0.118 (0.220)	0.392 (0.334)	0.277 (0.358)	-0.428 (0.379)
고소득	0.613** (0.241)	0.633* (0.363)	0.755* (0.407)	0.848** (0.391)
자산 많음	0.762*** (0.192)	1.064*** (0.290)	0.389 (0.314)	0.701** (0.331)
가입기간	0.0622*** (0.0118)	0.0349** (0.0168)	0.0563** (0.0251)	0.0830*** (0.0209)
대출	-0.0841 (0.222)	-0.196 (0.342)	-0.503 (0.342)	0.770* (0.417)
준조합원		-2.225*** (0.294)		
상수	2.266*** (0.254)	3.353*** (0.434)	2.776*** (0.396)	1.785*** (0.415)
관측치 수	859	359	289	276
R-squared	0.078	0.219	0.060	0.161

주: 1. 종속변수는 출자금의 자연대수값임  
 2.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 농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농협의 총예탁금 평균은 1,590만원이며, 신협은 1,176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1,242만원임
- 농협의 비과세예탁금 평균은 1,209만원이며, 신협의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1,000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1,013만원임
- 농협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380만원, 신협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176만원, 새마을금고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228만원으로 각각 비과세 예탁금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표 V-7〉 예탁금 가입현황(전체 응답자)

(단위: 명, 만원)

구 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농협	총예탁금	458	1,590.2	731.2	0	1,000	30,000
	비과세예탁금	458	1,209.8	158.7	0	500	30,000
	과세예탁금	458	380.4	1,293.7	0	0	15,000
신협	총예탁금	332	1,176.2	1,544.73	0	500	6,000
	비과세예탁금	332	999.6	1,288.90	0	500	6,000
	과세예탁금	332	176.6	1,146.18	0	0	5,000
새마을금고	총예탁금	341	1,242.2	1,242.2	0	500	25,000
	비과세예탁금	341	1,013.4	1,013.4	0	500	20,000
	과세예탁금	341	228.8	806.4	0	0	10,000

- 농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예탁금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농협의 총예탁금 평균은 2,287만원이며, 신협은 1,708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1,917만원임
- 농협의 비과세예탁금 평균은 1,885만원이며, 신협의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1,565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1,623만원임
- 농협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1,570만원, 신협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1,011만원, 새마을금고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1,164만원으로 각각 비과세 예탁금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표 V-8> 예탁금 가입현황(예탁금 > 0)

(단위: 명, 만원)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농협	총예탁금	294	2,287.3	3,075.3	5	30,000
	비과세예탁금	294	1,884.7	2,448.0	1	30,000
	과세예탁금	111	1,569.6	2,251.6	20	15,000
신협	총예탁금	212	1,707.8	1,421.8	10	6,000
	비과세예탁금	212	1,565.4	1,288.9	10	6,000
	과세예탁금	58	1,011.0	1,146.2	50	5,000
새마을금고	총예탁금	213	1,917.1	2,269.7	3	25,000
	비과세예탁금	213	1,622.5	1,873.1	1	20,000
	과세예탁금	67	1,164.3	1,498.1	50	10,000

□ 예탁금액에 대한 회귀분석은 출자금액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예탁금액은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소득에 따른 예탁금 차이도 나타나지 않음
- 자산이 많은 계층이 예탁금이 많은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농협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예탁금이 많으며 준조합원의 경우 예탁금이 낮은 경향을 보임

<표 V-9> 예탁금액 회귀분석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도권	0.0200 (0.0887)	0.166 (0.119)	-0.0823 (0.159)	0.0460 (0.187)
동/읍면	-0.00485 (0.0938)	-0.0420 (0.127)	0.0490 (0.170)	0.155 (0.188)
중간소득	0.0578 (0.109)	0.0942 (0.142)	0.0466 (0.200)	-0.0661 (0.233)
고소득	-0.0104 (0.117)	-0.0436 (0.155)	-0.157 (0.225)	-0.0826 (0.224)
자산 많음	0.913*** (0.0892)	1.025*** (0.120)	0.933*** (0.163)	0.928*** (0.187)
가입기간	0.0207*** (0.00573)	0.0161** (0.00717)	0.0210 (0.0139)	0.00978 (0.0120)
대졸	0.0115 (0.103)	0.00760 (0.138)	0.0468 (0.184)	-0.00490 (0.228)
준조합원		-0.235* (0.128)		
상수	6.580*** (0.126)	6.803*** (0.191)	6.515*** (0.221)	6.569*** (0.255)
관측치 수	560	231	186	178
R-squared	0.198	0.314	0.180	0.153

주: 1. 종속변수는 출자금의 자연대수값임  
 2.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 농협에 출자금이나 예탁금이 있는 조합원 중 가입요건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153명이었는데 이들의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음
  -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하는 응답자가 53.2%(82명),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응답자가 18.2%(28명), 농림축산업 종사자가 25.3%(39명)으로 나타남
  - 대부분 거주자이거나 농림업 종사자라고 할 수 있음

〈표 V-10〉 농협 조합원 가입요건 충족현황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82	53.2
1,000㎡ 이상 농지 경작	28	18.2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1	0.6
농림축산업에 종사	39	25.3
330㎡ 이상의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	1	0.6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	2	1.3
계	153	100.0

- 농협 준조합원의 가입요건
  - 대부분은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자영업자도 17.8%를 차지하며 회사원은 7.6%

〈표 V-11〉 농협 준조합원 가입요건 충족현황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응답비율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225	74.3
회사원	23	7.6
자영업	54	17.8
계	304	100.0

## 나.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현행 출자금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설문들을 실시함
  - 절세효과, 조세회피, 비과세 혜택 인지 여부 등임
  - 아래의 표에서 숫자 1, 2, 3, 4, 5는 차례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를 의미
  
- “예탁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답이 많음
  -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대체로 10%를 넘지 않음
  - 조합별 차이는 거의 없음

〈표 V-12〉 “예탁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3	4.6	26.7	59.5	9.0	1,054	3.72	
조합	농협	0.0	4.4	27.1	58.5	10.0	458	3.74
	신협	0.3	4.5	27.1	60.2	7.8	332	3.71
	새마을금고	0.6	4.4	26.1	58.4	10.6	341	3.74
연령	20대 ~ 30대	0.0	6.1	30.2	56.9	6.8	311	3.64
	40대 ~ 50대	0.6	4.9	23.5	58.7	12.2	327	3.77
	60대 이상	0.2	3.1	26.4	62.0	8.2	416	3.75
지역	서울	0.0	0.8	27.5	62.5	9.2	120	3.80
	경기/인천	0.0	4.3	18.4	63.7	13.7	234	3.87
	대전/충청	0.0	0.0	33.3	65.2	1.4	141	3.68
	광주/전라	2.1	14.5	26.2	53.1	4.1	145	3.43
	대구/경북	0.0	6.0	20.4	66.5	7.2	167	3.75
	부산/울산/경남	0.0	1.5	38.6	45.5	14.4	202	3.73
학력	강원	0.0	6.7	17.8	68.9	6.7	45	3.76
	중졸 이하	1.3	6.4	33.3	54.5	4.5	156	3.54
	고졸	0.2	3.6	26.4	61.2	8.6	523	3.74
소득	전문대졸 이상	0.0	5.1	24.5	58.9	11.6	372	3.77
	100만원 미만	0.0	0.0	20.0	80.0	0.0	10	3.80
	100~300만원	0.72	7.22	28.16	57.76	6.14	277	3.61
	300~500만원	0.24	4.29	29.05	58.57	7.86	420	3.70
	500~700만원	0.0	2.93	21.98	61.17	13.92	273	3.86
금융자산	700만원 이상	0.0	2.79	25.68	62.16	9.46	74	3.78
	1,000만원 미만	0.0	4.04	47.47	48.48	0.0	99	3.44
	1,000~3,000만원	0.0	4.65	26.45	62.21	6.69	344	3.71
	3,000~5,000만원	0.83	5.42	26.67	58.75	8.33	240	3.68
	5,000만원~1억	0.0	1.96	19.61	61.96	16.47	255	3.93
1억 이상	1.35	1.35	21.62	64.86	10.81	74	3.82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좀 더 긍정적인 답이 많으며 광주/전라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부정적인 답이 많음
- 소득에 따른 차이는 많지 않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가구에서 긍정적인 답이 많아서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가 많은 집단에서 절세효과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추론됨
- 다른 표본이기는 하지만 3년 전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많았음(평균 3.72 대 3.6)

□ “예탁상품은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에 대한 응답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가운데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많았음
- 3년 전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많았음(3.78 대 3.50)

<표 V-13> “예탁상품은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4	4.0	31.6	45.5	18.5	1,054	3.78	
조합	농협	0.4	3.3	30.6	46.7	19.0	458	3.81
	신협	0.0	4.2	32.8	42.8	20.2	332	3.79
	새마을금고	0.6	4.1	30.2	47.5	17.6	341	3.77
연령	20대 ~ 30대	0.0	5.1	36.3	40.5	18.0	311	3.71
	40대 ~ 50대	0.6	3.7	27.5	51.1	17.1	327	3.80
	60대 이상	0.5	3.4	31.3	45.0	20.0	416	3.81
지역	서울	0.0	3.3	31.7	39.2	25.8	120	3.88
	경기/인천	0.4	5.6	23.5	44.9	25.6	234	3.90
	대전/충청	0.0	0.7	36.2	48.2	14.9	141	3.77
	광주/전라	2.1	5.5	45.5	33.8	13.1	145	3.50
	대구/경북	0.0	4.2	35.3	46.1	14.4	167	3.71
	부산/울산/경남	0.0	2.0	26.7	54.5	16.8	202	3.86
학력	강원	0.0	11.1	22.2	53.3	13.3	45	3.69
	중졸 이하	1.9	3.2	35.9	45.5	13.5	156	3.65
	고졸	0.2	4.0	29.1	47.6	19.1	523	3.81
소득	전문대졸 이상	0.0	4.3	33.1	43.0	19.6	372	3.78
	100만원 미만	10.0	0.0	20.0	50.0	20.0	10	3.70
	100-300만원	0.72	5.42	34.3	48.38	11.19	277	3.64
	300-500만원	0.0	4.05	29.76	46.43	19.76	420	3.82
	500-700만원	0.37	2.56	30.40	45.05	21.61	273	3.85
	700만원 이상	0.0	4.05	37.84	31.08	27.03	74	3.81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1	2.02	38.38	50.51	8.08	99	3.63
	1,000~3,000만원	0.0	4.36	34.30	43.90	17.44	344	3.74
	3,000~5,000만원	0.42	3.33	27.50	52.08	16.67	240	3.81
	5,000만원~1억	0.39	4.31	27.84	39.22	28.24	255	3.91
	1억 이상	1.35	4.05	33.78	47.30	13.51	74	3.68

-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에 대한 응답은 보통 이상 값을 보여 조세 회피사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합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 및 자산 별로 차이가 없음
  - 강원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조세회피사례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음
  - 3년 전 조사에 비해서 회피사례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음(3.34 대 2.97)

<표 V-14>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2	17.1	37.3	35.1	9.3	1,054	3.34	
조합	농협	1.5	16.6	38.6	34.9	8.3	458	3.32
	신협	1.5	16.6	38.3	34.9	8.7	332	3.33
	새마을금고	1.8	18.8	35.8	33.4	10.3	341	3.32
연령	20대 ~ 30대	0.6	16.1	36.7	38.3	8.4	311	3.38
	40대 ~ 50대	2.4	19.3	37.0	31.2	10.1	327	3.27
	60대 이상	0.7	16.1	38.0	35.8	9.4	416	3.37
지역	서울	0.0	25.0	29.2	35.0	10.8	120	3.32
	경기/인천	0.0	17.1	32.9	37.6	12.4	234	3.45
	대전/충청	0.7	6.4	46.8	37.6	8.5	141	3.47
	광주/전라	1.4	17.9	37.2	35.9	7.6	145	3.30
	대구/경북	1.8	16.2	40.7	34.1	7.2	167	3.29
	부산/울산/경남	0.5	10.4	43.6	36.1	9.4	202	3.44
	강원	13.3	60.0	11.1	11.1	4.4	45	2.33
학력	중졸 이하	2.6	21.2	39.1	27.6	9.6	156	3.21
	고졸	0.8	16.6	38.8	35.9	7.8	523	3.33
	전문대졸 이상	1.3	16.1	34.7	36.6	11.3	372	3.40
소득	100만원 미만	0.0	10.0	40.0	30.0	20.0	10	3.60
	100~300만원	2.17	20.58	38.63	33.21	5.42	277	3.19
	300~500만원	0.95	13.81	39.76	35.71	9.76	420	3.40
	500~700만원	1.1	16.85	34.43	35.90	11.72	273	3.40
	700만원 이상	0.0	24.32	28.38	36.49	10.81	74	3.34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7.17	40.40	36.36	6.06	99	3.31
	1,000~3,000만원	2.03	18.02	38.95	32.27	8.72	344	3.27
	3,000~5,000만원	1.25	17.92	35.83	35.42	9.58	240	3.34
	5,000만원~1억	0.78	14.12	34.51	39.22	11.37	255	3.46
	1억 이상	1.35	18.92	36.49	32.43	10.81	74	3.32

- 비과세 혜택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혜택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것은 반드시 본인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님
  -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대구/경북이나 강원지역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3년 전 조사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임(3.52 대 3.38)

〈표 V-15〉 “예탁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8	13.4	27.1	50.5	8.3	1,054	3.52	
조합	농협	0.7	14.2	27.3	50.9	7.0	458	3.49
	신협	1.2	12.0	26.5	50.9	9.3	332	3.55
	새마을금고	0.6	13.5	27.6	48.7	9.7	341	3.53
연령	20대 ~ 30대	0.3	13.2	28.3	48.2	10.0	311	3.54
	40대 ~ 50대	0.3	16.5	27.2	48.0	8.0	327	3.47
	60대 이상	1.4	11.1	26.2	54.1	7.2	416	3.55
지역	서울	0.0	12.5	11.7	65.8	10.0	120	3.73
	경기/인천	0.0	14.1	16.7	57.7	11.5	234	3.67
	대전/충청	0.0	8.5	31.9	55.3	4.3	141	3.55
	광주/전라	1.4	8.3	34.5	52.4	3.4	145	3.48
	대구/경북	3.0	25.7	28.1	36.5	6.6	167	3.18
	부산/울산/경남	0.5	5.4	39.1	43.1	11.9	202	3.60
	강원	0.0	33.3	26.7	35.6	4.4	45	3.11
학력	중졸 이하	2.6	12.2	38.5	42.3	4.5	156	3.34
	고졸	0.6	14.7	25.2	52.4	7.1	523	3.51
	전문대졸 이상	0.3	12.1	25.3	51.1	11.3	372	3.61
소득	100만원 미만	0.0	30.00	20.00	50.00	0.0	10	3.20
	100~300만원	2.17	13.72	32.49	46.57	5.05	277	3.39
	300~500만원	0.0	15.24	24.05	50.71	10.00	420	3.55
	500~700만원	0.73	10.26	28.94	50.18	9.89	273	3.58
	700만원 이상	01.81	18.92	64.86	64.86	5.41	73	3.65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01	11.11	37.37	46.46	4.04	99	3.41
	1,000~3,000만원	0.87	15.12	29.36	48.84	5.81	344	3.44
	3,000~5,000만원	0.83	15.00	25.42	49.58	9.17	240	3.51
	5,000만원~1억	0.78	10.20	21.57	55.29	12.16	255	3.68
	1억 이상	0.0	13.51	21.62	52.70	12.16	74	3.64

- “고소득 자산가들이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에서도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
  - 거의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0%를 넘음
  -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이 보임
  - 이는 현실과 일치하는 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 3년 전에 비해 이러한 인식이 높아졌음(3.67 대 3.48)

<표 V-16> “고소득 자산가들이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3	4.4	32.3	54.6	8.4	1,054	3.67	
조합	농협	0.0	3.7	33.6	54.1	8.5	458	3.67
	신협	0.6	5.4	33.4	51.5	9.0	332	3.63
	새마을금고	0.6	5.6	30.5	55.1	8.2	341	3.65
연령	20대 ~ 30대	0.0	6.1	33.4	50.2	10.3	311	3.65
	40대 ~ 50대	0.6	4.3	30.9	56.3	8.0	327	3.67
	60대 이상	0.2	3.1	32.5	56.7	7.5	416	3.68
지역	서울	0.0	0.8	23.3	65.8	10.0	120	3.85
	경기/인천	0.0	4.3	25.2	59.0	11.5	234	3.78
	대전/충청	0.0	0.7	40.4	52.5	6.4	141	3.65
	광주/전라	0.7	6.2	48.3	42.1	2.8	145	3.40
	대구/경북	0.0	3.0	35.3	52.1	9.6	167	3.68
	부산/울산/경남	1.0	8.4	24.3	56.9	9.4	202	3.65
	강원	0.0	6.7	40.0	48.9	4.4	45	3.51
학력	중졸 이하	1.3	6.4	39.1	50.0	3.2	156	3.47
	고졸	0.0	3.6	31.7	55.8	8.8	523	3.70
	전문대졸 이상	0.3	4.6	30.1	54.8	10.2	372	3.70
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40.00	60.00	0.0	10	3.60
	100~300만원	0.36	7.22	35.02	51.62	5.78	277	3.55
	300~500만원	0.24	3.57	33.10	55.71	7.38	420	3.66
	500~700만원	0.37	2.93	28.21	56.04	12.45	273	3.77
	700만원 이상	0.0	4.05	31.08	54.05	10.81	74	3.72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2.02	45.45	49.49	3.03	99	3.54
	1,000~3,000만원	0.0	6.40	33.14	52.91	7.56	344	3.62
	3,000~5,000만원	0.83	4.17	30.42	55.00	9.58	240	3.68
	5,000만원~1억	0.39	2.75	29.41	56.08	11.37	255	3.75
	1억 이상	0.0	5.41	21.62	64.86	8.11	74	3.76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는 요인으로 소득과 자산, 지역 등을 꼽을 수 있음을 보았음
- 이를 감안하여 5단계 척도 설문문항 분석에 적합한 순위 프로빗(ordered-probit) 분석을 실시해 봄
  - 분석결과는 절세효과에 대해서 수도권 거주자들과 고소득층, 자산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가입기간이 긴 것도 절세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임
  - 고소득자가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도 수도권에서 많음
  - 전반적으로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7>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분석)

	절세효과 뛰어남	특정계층 지원	편법이용	비과세혜택 비인지	고소득자 이용
농협	0.0826 (0.0918)	0.0931 (0.0881)	-0.103 (0.0863)	-0.0802 (0.0882)	-0.00140 (0.0902)
신협	-0.0291 (0.0946)	0.0903 (0.0908)	-0.108 (0.0890)	0.0350 (0.0912)	-0.0565 (0.0930)
수도권	0.292*** (0.0879)	0.356*** (0.0841)	0.0721 (0.0816)	0.260*** (0.0845)	0.226*** (0.0857)
동/읍면	0.284*** (0.0883)	0.0523 (0.0845)	0.266*** (0.0829)	0.193** (0.0846)	0.338*** (0.0868)
중간소득	0.0164 (0.0993)	0.194** (0.0955)	0.163* (0.0936)	0.206** (0.0958)	-0.00910 (0.0977)
고소득	0.215** (0.110)	0.220** (0.105)	0.0814 (0.103)	0.123 (0.105)	0.164 (0.107)
자산 많음	0.360*** (0.0886)	0.100 (0.0839)	0.130 (0.0819)	0.205** (0.0845)	0.0906 (0.0857)
가입기간	0.0169*** (0.00563)	0.00810 (0.00537)	-0.00403 (0.00526)	0.00579 (0.00540)	0.00221 (0.00550)
대졸	0.0223 (0.101)	-0.0517 (0.0967)	0.0555 (0.0946)	0.198** (0.0977)	0.00413 (0.0990)

주: 1. 관측치 수는 859개

2.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 다.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 목적과 상황

### 1) 출자금

- 가입 목적과 관련하여 “조합 가입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
  - 집단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있음
  - 지역에서 부산/울산/경남이나 강원에서 긍정적 비중이 낮은 편임
  - 3년 전에 비해서는 이러한 그렇다는 응답의 비중이 다소 낮아졌음(3.38 대 3.45)

<표 V-18> “조합 가입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9	15.6	32.1	47.7	3.8	1,054	3.38
조합	농협	0.9	15.9	31.4	48.7	3.1	458	3.37
	신협	0.9	14.5	34.3	46.4	3.9	332	3.38
	새마을금고	0.9	17.3	31.7	45.7	4.4	341	3.35
연령	20대 ~ 30대	1.9	16.4	34.1	44.4	3.2	311	3.31
	40대 ~ 50대	0.3	17.4	31.8	45.3	5.2	327	3.38
	60대 이상	0.5	13.5	30.8	52.2	3.1	416	3.44
지역	서울	0.0	5.8	30.8	56.7	6.7	120	3.64
	경기/인천	0.4	15.4	26.5	51.7	6.0	234	3.47
	대전/충청	0.0	4.3	42.6	53.2	0.0	141	3.49
	광주/전라	2.1	19.3	34.5	41.4	2.8	145	3.23
	대구/경북	0.6	17.4	27.5	49.1	5.4	167	3.41
	부산/울산/경남	2.0	20.8	33.7	42.1	1.5	202	3.20
학력	강원	0.0	35.6	33.3	26.7	4.4	45	3.00
	중졸 이하	0.6	16.7	29.5	51.3	1.9	156	3.37
	고졸	0.4	15.3	33.3	48.4	2.7	523	3.38
소득	전문대졸 이상	1.6	15.3	31.7	45.2	6.2	372	3.39
	100만원 미만	0.0	10.00	40.00	50.00	0.0	10	3.40
	100~300만원	0.72	20.58	30.69	45.49	2.53	277	3.29
	300~500만원	0.71	14.76	34.29	45.71	4.52	420	3.39
	500~700만원	1.10	11.72	32.60	50.55	4.03	273	3.45
금융자산	700만원 이상	1.35	16.22	21.62	56.76	4.05	74	3.46
	1,000만원 미만	0.0	18.18	43.43	38.38	0.0	99	3.20
	1,000~3,000만원	2.33	18.90	29.36	44.48	4.94	344	3.31
	3,000~5,000만원	0.0	14.17	32.92	49.58	3.33	240	3.42
	5,000만원~1억	0.39	11.76	31.37	51.37	5.10	255	3.49
	1억 이상	0.0	10.81	24.32	62.16	2.70	74	3.57

- “조합 가입의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이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
- 조합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이 주목됨
  - 출자금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조합가입의 중요한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3년 전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비중임(3.66 대 3.72)

<표 V-19> “조합 가입의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3	8.9	30.5	45.6	14.7	1,054	3.66	
조합	농협	0.2	9.4	27.7	47.4	15.3	458	3.68
	신협	0.3	7.8	34.3	42.5	15.1	332	3.64
	새마을금고	0.3	10.3	29.6	45.2	14.7	341	3.64
연령	20대 ~ 30대	0.3	10.9	33.8	42.8	12.2	311	3.56
	40대 ~ 50대	0.6	9.8	31.2	44.6	13.8	327	3.61
	60대 이상	0.0	6.7	27.4	48.6	17.3	416	3.76
지역	서울	0.0	5.8	11.7	58.3	24.2	120	4.01
	경기/인천	0.0	12.4	19.2	46.6	21.8	234	3.78
	대전/충청	0.0	2.1	39.7	52.5	5.7	141	3.62
	광주/전라	0.0	8.3	43.4	43.4	4.8	145	3.45
	대구/경북	0.6	10.8	33.5	41.9	13.2	167	3.56
	부산/울산/경남	1.0	7.4	35.6	39.6	16.3	202	3.63
	강원	0.0	22.2	33.3	33.3	11.1	45	3.33
학력	중졸 이하	0.0	6.4	32.1	51.3	10.3	156	3.65
	고졸	0.0	9.8	27.5	45.7	17.0	523	3.70
	전문대졸 이상	0.8	8.9	33.9	43.3	13.2	372	3.59
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40.00	50.00	10.00	10	3.70
	100~300만원	0.0	11.19	31.41	45.85	11.55	277	3.58
	300~500만원	0.24	9.33	34.29	44.52	12.62	420	3.61
	500~700만원	0.73	8.42	23.81	46.52	20.51	273	3.78
	700만원 이상	0.0	6.76	28.38	47.30	17.57	74	3.76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8.08	40.40	45.45	6.06	99	3.49
	1,000~3,000만원	0.58	11.63	31.98	45.06	10.76	344	3.54
	3,000~5,000만원	0.0	6.67	32.92	45.42	15.00	240	3.69
	5,000만원~1억	0.39	8.63	26.27	42.75	21.96	255	3.77
	1억 이상	0.0	9.46	18.92	50.00	21.62	74	3.84

- “주변에 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조합원이 되었다”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
  - 조합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주목됨
  - 지역별로는 강원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음
  - 3년 전의 조사와 큰 차이 없으나 농협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다소 낮아짐

<표 V-20> “주변에 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조합원이 되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0	15.5	30.2	42.4	10.9	1,054	3.47	
조합	농협	0.4	14.2	30.8	43.2	11.4	458	3.51
	신협	1.2	15.7	29.2	42.8	11.1	332	3.47
	새마을금고	1.5	17.6	31.1	39.3	10.6	341	3.40
연령	20대 ~ 30대	1.0	17.0	33.8	37.6	10.6	311	3.40
	40대 ~ 50대	2.1	15.9	30.3	41.0	10.7	327	3.42
	60대 이상	0.2	13.9	27.4	47.1	11.3	416	3.55
지역	서울	0.0	13.3	25.8	42.5	18.3	120	3.66
	경기/인천	0.4	17.1	21.4	43.6	17.5	234	3.61
	대전/충청	0.0	7.1	39.7	48.9	4.3	141	3.50
	광주/전라	3.4	17.9	34.5	37.9	6.2	145	3.26
	대구/경북	1.2	14.4	29.3	44.9	10.2	167	3.49
	부산/울산/경남	1.5	14.4	32.7	42.1	9.4	202	3.44
	강원	0.0	40.0	35.6	22.2	2.2	45	2.87
학력	중졸 이하	0.0	16.0	30.1	46.2	7.7	156	3.46
	고졸	1.1	14.5	30.2	43.6	10.5	523	3.48
	전문대졸 이상	1.3	16.7	30.4	39.0	12.6	372	3.45
소득	100만원 미만	0.0	10.00	20.00	60.00	10.00	10	3.70
	100~300만원	0.36	16.97	29.60	46.93	6.14	277	3.42
	300~500만원	1.43	14.29	32.38	39.76	12.14	420	3.47
	500~700만원	1.47	16.85	29.30	39.56	12.82	273	3.45
	700만원 이상	0.0	12.16	24.32	28.65	14.86	74	3.66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8.18	34.34	44.44	3.03	99	3.43
	1,000~3,000만원	1.74	14.53	34.01	38.95	10.76	344	3.32
	3,000~5,000만원	0.0	15.42	33.75	39.58	11.25	240	3.42
	5,000만원~1억	1.18	17.25	21.57	46.67	13.33	255	3.47
	1억 이상	0.0	12.16	22.97	54.05	10.81	74	3.64

□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조합원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음

- 조합별로는 농협에서 긍정적 응답이 많았으며 고령층에서 긍정적 응답이 많음
- 서울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이 많은 점도 주목됨
- 3년 전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중이 다소 낮아졌으며 특히 농협에서 많이 낮아짐

<표 V-21>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조합원이 되는 게 유리하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2	6.6	29.4	51.8	12.0	1,054	3.69	
조합	농협	0.2	5.7	26.6	53.7	13.8	458	3.75
	신협	0.3	7.8	31.3	48.8	11.7	332	3.64
	새마을금고	0.0	8.2	31.7	49.6	10.6	341	3.62
연령	20대 ~ 30대	0.3	8.0	32.8	48.6	10.3	311	3.60
	40대 ~ 50대	0.3	7.3	30.3	50.5	11.6	327	3.66
	60대 이상	0.0	5.0	26.2	55.3	13.5	416	3.77
지역	서울	0.0	7.5	12.5	61.7	18.3	120	3.91
	경기/인천	0.0	9.8	23.5	49.1	17.5	234	3.74
	대전/충청	0.0	3.5	39.7	53.2	3.5	141	3.57
	광주/전라	0.7	7.6	46.2	39.3	6.2	145	3.43
	대구/경북	0.0	2.4	24.0	62.3	11.4	167	3.83
	부산/울산/경남	0.5	8.4	28.2	50.5	12.4	202	3.66
학력	강원	0.0	2.2	44.4	42.2	11.1	45	3.62
	중졸 이하	0.0	3.8	26.9	60.9	8.3	156	3.74
	고졸	0.2	6.1	31.0	50.3	12.4	523	3.69
소득	전문대졸 이상	0.3	8.6	28.5	49.7	12.9	372	3.66
	100만원 미만	0.0	0.0	60.00	30.00	10.00	10	3.50
	100~300만원	0.36	5.42	31.77	56.32	6.14	277	3.62
	300~500만원	0.0	8.10	29.29	50.71	11.90	420	3.66
	500~700만원	0.37	6.23	26.37	50.18	16.85	273	3.77
	700만원 이상	0.0	5.41	28.38	50.00	16.22	74	3.77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5.05	37.37	52.53	5.05	99	3.58
	1,000~3,000만원	0.58	6.10	31.40	50.00	11.92	344	3.66
	3,000~5,000만원	0.0	5.00	32.08	53.33	9.58	240	3.68
	5,000만원~1억	0.0	9.41	24.71	51.76	14.12	255	3.71
	1억 이상	0.0	8.11	18.92	59.46	13.51	74	3.78

- 출자금 가입 목적과 관련한 순위 프로빗 분석 결과를 보면 수도권 거주자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각종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음
-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 거주자들이 배당금이 많기 때문에, 혹은 배당금 비과세 때문에 가입했다는 반응을 보임
  - 또한 수도권에서 지역에서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반응을 보임
  - 가입기간이 긴 것도 배당금에 대한 각종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고소득자들이 배당금이 많기 때문에, 또한 배당금 비과세 때문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2> 출자금 가입 목적(Ordered Probit)

	배당금 많기 때문에 가입	배당금 비과세 때문에 가입	주변을 보고 가입	지역 조합원 유리
농협	-0.0324 (0.0895)	0.0721 (0.0876)	0.108 (0.0865)	0.116 (0.0887)
신협	0.00572 (0.0922)	0.112 (0.0903)	0.128 (0.0894)	0.0937 (0.0915)
수도권	0.440*** (0.0861)	0.534*** (0.0843)	0.379*** (0.0828)	0.374*** (0.0849)
동/읍면	0.0614 (0.0857)	-0.00285 (0.0839)	0.00101 (0.0831)	-0.1000 (0.0852)
중간소득	0.130 (0.0966)	0.00375 (0.0947)	0.0419 (0.0939)	0.0763 (0.0961)
고소득	0.237** (0.107)	0.216** (0.104)	0.0632 (0.103)	0.283*** (0.106)
자산 많음	0.150* (0.0854)	0.167** (0.0834)	0.0921 (0.0824)	0.0432 (0.0844)
가입기간	0.0147*** (0.00549)	0.0189*** (0.00538)	0.00992* (0.00529)	0.0161*** (0.00544)
대출	-0.0622 (0.0982)	-0.0136 (0.0960)	-0.0230 (0.0950)	0.00158 (0.0974)

주: 1. 관측치 수는 859개  
 2.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 2) 예탁금

- 은행상품과 조합 예탁상품의 절세효과 비교에서는 예탁상품의 절세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많음
- 조합별·지역별 차이는 적은 편임
  - 금융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절세효과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3년 전의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적 응답 비중이 다소 낮음(3.75 대 3.82)

<표 V-23>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이 절세효과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3.7	23.3	67.7	5.3	759	3.75	
조합	농협	0.0	3.6	25.2	66.5	4.7	337	3.72
	신협	0.0	2.1	24.7	69.5	3.8	239	3.75
	새마을금고	0.0	5.6	21.8	64.9	7.7	248	3.75
연령	20대 ~ 30대	0.0	5.1	23.6	66.7	4.6	216	3.71
	40대 ~ 50대	0.0	2.6	22.7	69.1	5.6	233	3.78
	60대 이상	0.0	3.5	23.5	67.4	5.5	310	3.75
지역	서울	0.0	3.6	19.1	70.0	7.3	110	3.81
	경기/인천	0.0	1.6	14.4	73.9	10.1	188	3.93
	대전/충청	0.0	0.9	29.5	69.6	0.0	112	3.69
	광주/전라	0.0	4.1	41.1	50.7	4.1	73	3.55
	대구/경북	0.0	4.7	16.3	75.6	3.5	86	3.78
	부산/울산/경남	0.0	4.6	28.1	63.4	3.9	153	3.67
	강원	0.0	16.2	24.3	56.8	2.7	37	3.46
학력	중졸 이하	0.0	6.7	29.8	61.5	1.9	104	3.59
	고졸	0.0	3.4	22.8	68.4	5.3	377	3.76
	전문대졸 이상	0.0	2.9	21.7	68.8	6.5	276	3.79
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16.67	83.33	0.0	6	3.83
	100~300만원	0.0	5.29	21.69	68.25	4.76	189	3.72
	300~500만원	0.0	3.62	26.32	64.80	5.26	304	3.72
	500~700만원	0.0	3.03	20.71	70.71	5.56	198	3.79
	700만원 이상	0.0	1.61	22.58	69.35	6.45	62	3.81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6.00	36.00	54.00	4.00	50	3.56
	1,000~3,000만원	0.0	4.95	20.27	71.17	3.60	222	3.73
	3,000~5,000만원	0.0	4.76	26.98	65.08	3.17	189	3.67
	5,000만원~1억	0.0	1.44	21.63	70.19	6.73	208	3.82
	1억 이상	0.0	1.52	18.18	72.73	7.58	66	3.86

□ 은행상품보다 조합 예탁상품의 이자율이 높다는 인식도 많음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모든 집단에서 5% 내외로 매우 적음
- 연령, 학력, 지역, 소득, 금융자산 등에 따른 집단 별 차이는 거의 없음
- 은행 이자율에 비해 조합의 이자율이 높다는 인식이 많다는 것은 절세효과 이상으로 이자율 수준이 조합에 예탁금을 맡기는 이유임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응답은 3년 전 조사에 비해 더 긍정적이지만(3.82 대 3.76) 신협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많이 낮아진 편임(3.82 대 3.99)

<표 V-24>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의 이자율이 높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4.5	24.5	56.8	14.2	759	3.81	
조합	농협	0.0	3.9	25.8	55.8	14.5	337	3.81
	신협	0.0	3.8	22.2	62.3	11.7	239	3.82
	새마을금고	0.0	5.6	23.0	53.6	17.7	248	3.83
연령	20대 ~ 30대	0.0	5.1	22.2	57.9	14.8	216	3.82
	40대 ~ 50대	0.0	4.3	26.2	54.9	14.6	233	3.80
	60대 이상	0.0	4.2	24.8	57.4	13.5	310	3.80
지역	서울	0.0	10.0	7.3	67.3	15.5	110	3.88
	경기/인천	0.0	2.7	16.0	61.7	19.7	188	3.98
	대전/충청	0.0	0.0	34.8	57.1	8.0	112	3.73
	광주/전라	0.0	15.1	46.6	27.4	11.0	73	3.34
	대구/경북	0.0	3.5	19.8	70.9	5.8	86	3.79
	부산/울산/경남	0.0	1.3	32.7	49.0	17.0	153	3.82
학력	강원	0.0	5.4	21.6	56.8	16.2	37	3.84
	중졸 이하	0.0	5.8	35.6	52.9	5.8	104	3.59
	고졸	0.0	2.9	21.5	61.8	13.8	377	3.86
소득	전문대졸 이상	0.0	6.2	24.3	51.4	18.1	276	3.82
	100만원 미만	0.0	0.0	16.67	83.33	0.0	6	3.83
	100~300만원	0.0	4.23	29.63	58.20	7.94	189	3.70
	300~500만원	0.0	4.28	26.64	56.25	12.83	304	3.78
	500~700만원	0.0	3.54	18.69	57.58	20.20	198	3.94
	700만원 이상	0.0	9.68	17.74	50.00	22.58	62	3.85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4.00	22.00	68.00	6.00	50	3.76
	1,000~3,000만원	0.0	2.25	24.77	60.36	12.61	222	3.83
	3,000~5,000만원	0.0	5.29	31.22	53.97	9.52	189	3.67
	5,000만원~1억	0.0	4.33	20.67	53.37	21.63	208	3.92
	1억 이상	0.0	6.06	16.67	60.61	16.67	66	3.88

□ 예탁상품 가입이유가 대출받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많음

-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다소 낮음
- 소득이 낮은 집단(300만원 이하)에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함
- 3년 전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다소 높아짐(3.14 대 2.95)

<표 V-25> “예탁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6	23.7	40.8	26.4	7.5	759	3.14	
조합	농협	2.1	24.0	39.2	27.0	7.7	337	3.14
	신협	0.8	23.0	43.5	25.9	6.7	239	3.15
	새마을금고	1.6	24.2	42.3	24.6	7.3	248	3.12
연령	20대 ~ 30대	0.9	26.9	39.4	24.5	8.3	216	3.13
	40대 ~ 50대	1.7	19.7	42.9	28.3	7.3	233	3.20
	60대 이상	1.9	24.5	40.3	26.1	7.1	310	3.12
지역	서울	0.9	23.6	43.6	17.3	14.5	110	3.21
	경기/인천	1.1	28.2	36.7	21.8	12.2	188	3.16
	대전/충청	0.0	13.4	51.8	33.0	1.8	112	3.23
	광주/전라	1.4	13.7	34.2	39.7	11.0	73	3.45
	대구/경북	4.7	34.9	45.3	12.8	2.3	86	2.73
	부산/울산/경남	2.6	24.2	36.6	32.7	3.9	153	3.11
학력	강원	0.0	24.3	40.5	35.1	0.0	37	3.11
	중졸 이하	1.9	23.1	44.2	26.9	3.8	104	3.08
	고졸	2.1	24.7	40.3	24.9	8.0	377	3.12
소득	전문대졸 이상	0.7	22.5	40.6	28.3	8.0	276	3.20
	100만원 미만	0.0	16.67	66.67	0.0	16.67	6	3.17
	100~300만원	3.17	28.04	39.68	25.40	3.70	189	2.98
	300~500만원	0.33	20.39	43.09	28.62	7.57	304	3.23
	500~700만원	2.02	25.25	38.89	24.24	9.60	198	3.14
금융자산	700만원 이상	1.61	22.58	37.10	27.42	11.29	62	3.24
	1,000만원 미만	2.00	30.00	34.00	32.00	2.00	50	3.02
	1,000~3,000만원	2.25	20.27	38.74	29.28	9.46	222	3.23
	3,000~5,000만원	0.53	21.69	51.32	21.16	5.29	189	3.09
	5,000만원~1억	1.44	25.48	40.87	25.96	6.25	208	3.10
1억 이상	3.03	31.82	25.76	25.76	13.64	66	3.15	

- 은행보다 조합의 대출이자율이 낮다는 인식이 많음
  -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많지 않음
  -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자율상의 이득이 조합을 이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비과세 혜택보다 중요한 이유로 볼 수는 없음
  - 3년 전 조사와 거의 같은 값을 보임

<표 V-26>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의 대출이자율이 낮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5	10.3	41.2	42.8	5.1	759	3.42	
조합	농협	0.9	9.8	43.9	40.1	5.3	337	3.39
	신협	0.0	9.6	42.3	42.7	5.4	239	3.44
	새마을금고	0.4	11.3	36.7	46.4	5.2	248	3.45
연령	20대 ~ 30대	0.0	9.7	42.1	44.9	3.2	216	3.42
	40대 ~ 50대	1.3	9.4	40.8	43.3	5.2	233	3.42
	60대 이상	0.3	11.3	41.0	41.0	6.5	310	3.42
지역	서울	0.0	2.7	40.0	51.8	5.5	110	3.60
	경기/인천	0.0	14.9	32.4	44.1	8.5	188	3.46
	대전/충청	0.0	4.5	54.5	39.3	1.8	112	3.38
	광주/전라	2.7	8.2	50.7	35.6	2.7	73	3.27
	대구/경북	2.3	17.4	47.7	30.2	2.3	86	3.13
	부산/울산/경남	0.0	10.5	34.0	48.4	7.2	153	3.52
학력	강원	0.0	13.5	45.9	40.5	0.0	37	3.27
	중졸 이하	1.0	12.5	45.2	35.6	5.8	104	3.33
	고졸	0.5	10.3	40.6	43.0	5.6	377	3.43
소득	전문대졸 이상	0.4	9.4	40.9	44.9	4.3	276	3.43
	100만원 미만	0.0	33.33	16.67	33.33	16.67	6	3.33
	100~300만원	1.06	11.11	44.44	38.62	4.76	189	3.35
	300~500만원	0.33	9.21	42.11	44.08	4.28	304	3.43
	500~700만원	0.51	11.62	40.40	40.91	6.57	198	3.41
금융자산	700만원 이상	0.0	6.45	32.26	56.45	4.84	62	3.60
	1,000만원 미만	0.0	12.00	52.00	36.00	0.0	50	3.24
	1,000~3,000만원	0.90	9.46	38.74	44.59	6.31	222	3.46
	3,000~5,000만원	0.0	10.05	47.09	39.15	3.70	189	3.37
	5,000만원~1억	0.48	9.13	38.46	46.63	5.29	208	3.47
1억 이상	1.52	18.18	28.79	40.91	10.61	66	3.41	

-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에 대한 응답도 긍정적이어서 이자율과 절세효과 외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설문 대상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3년 전의 동일 질문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답의 비중이 약간 높아졌지만 차이는 크지 않음

<표 V-27>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예탁상품에 가입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5	5.8	31.6	57.2	4.9	759	3.60	
조합	농협	0.9	4.2	32.6	56.4	5.9	337	3.62
	신협	0.0	6.7	31.4	58.2	3.8	239	3.59
	새마을금고	1.2	7.7	31.5	55.2	4.4	248	3.54
연령	20대 ~ 30대	0.5	6.0	31.0	57.9	4.6	216	3.60
	40대 ~ 50대	0.4	7.3	33.0	54.1	5.2	233	3.56
	60대 이상	0.6	4.5	31.0	59.0	4.8	310	3.63
지역	서울	0.0	5.5	21.8	70.9	1.8	110	3.69
	경기/인천	0.0	6.4	22.3	63.3	8.0	188	3.73
	대전/충청	0.0	0.9	37.5	58.9	2.7	112	3.63
	광주/전라	1.4	8.2	49.3	38.4	2.7	73	3.33
	대구/경북	1.2	4.7	32.6	59.3	2.3	86	3.57
	부산/울산/경남	1.3	6.5	37.9	45.8	8.5	153	3.54
	강원	0.0	13.5	27.0	59.5	0.0	37	3.46
학력	중졸 이하	1.0	8.7	44.2	44.2	1.9	104	3.38
	고졸	0.3	5.6	28.1	60.5	5.6	377	3.66
	전문대졸 이상	0.7	5.1	31.5	57.6	5.1	276	3.61
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33.33	50.00	16.67	6	3.83
	100~300만원	1.06	5.82	35.98	55.56	1.59	189	3.51
	300~500만원	0.33	6.91	30.92	56.25	5.59	304	3.60
	500~700만원	0.51	4.04	31.82	57.07	6.57	198	3.65
	700만원 이상	0.0	6.45	20.97	67.74	4.84	62	3.71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2.00	42.00	54.00	2.00	50	3.56
	1,000~3,000만원	1.35	4.95	31.53	57.66	4.50	222	3.59
	3,000~5,000만원	0.0	8.47	34.92	53.44	3.17	189	3.51
	5,000만원~1억	0.48	5.77	24.52	62.98	6.25	208	3.69
	1억 이상	0.0	6.06	28.79	57.58	7.58	66	3.67

- 이상에서 살펴본 조합예탁상품 가입 목적들을 정리해 보면 높은 예탁금 이자율과 절세효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음
  - 낮은 대출 이자율과 편리성 등 대출과 관련한 장점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3년 전의 설문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V-28〉 조합 등의 예탁상품 가입 목적 정리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절세효과	0.0	3.7	23.3	67.7	5.3	759	3.75
높은 이자율	0.0	4.5	24.5	56.8	14.2	759	3.81
대출의 용이	1.6	23.7	40.8	26.4	7.5	759	3.14
낮은 대출이자율	0.5	10.3	41.2	42.8	5.1	759	3.42
각종 혜택	0.5	5.8	31.6	57.2	4.9	759	3.60

- 예탁금 가입 목적과 관련한 순위 프로빗 분석에서도 수도권 거주자들이 각종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절세효과, 높은 예탁금 이자율, 대출 편의, 낮은 대출 이자율 때문에 가입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강함
  -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행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다른 개인 특성들은 예탁금 가입 목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

<표 V-29> 예탁금 가입 목적(Ordered Probit 분석)

	절세효과	높은 예탁금 이자율	대출 편의	낮은 대출 이자율	기타 혜택
농협	-0.0514	0.0736	-0.0255	-0.145	0.0951
	(0.110)	(0.104)	(0.0993)	(0.102)	(0.105)
신협	-0.0355	0.0553	0.0409	0.00496	0.0612
	(0.114)	(0.107)	(0.102)	(0.105)	(0.108)
수도권	0.427***	0.366***	0.195**	0.314***	0.309***
	(0.106)	(0.0979)	(0.0930)	(0.0958)	(0.0988)
동/읍면	0.0842	0.132	-0.0705	0.0936	0.156
	(0.108)	(0.101)	(0.0972)	(0.0997)	(0.102)
중간소득	-0.0828	0.0636	0.279**	0.0328	-0.0219
	(0.126)	(0.117)	(0.113)	(0.115)	(0.119)
고소득	0.00559	0.236*	0.199	0.0387	0.0770
	(0.136)	(0.127)	(0.122)	(0.124)	(0.128)
자산 많음	0.192*	0.167*	-0.0383	0.0199	0.135
	(0.103)	(0.0960)	(0.0918)	(0.0941)	(0.0970)
가입기간	0.00111	-0.00541	0.000287	0.00641	0.000589
	(0.00693)	(0.00644)	(0.00619)	(0.00635)	(0.00652)
대출	0.0615	-0.00965	0.0328	0.126	-0.00159
	(0.122)	(0.113)	(0.108)	(0.111)	(0.115)

주: 1. 관측치 수는 628개

2.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 라.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가입 효과에 대한 인식

### 1) 출자금

- 응답자들은 조합 출자로 인해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소득이 높고 금융자산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남
  - 지역별, 연령별, 조합별 차이는 크지 않음
  - 3년 전 조사와 비교할 때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는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농협의 경우는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다소 낮아짐

<표 V-30>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2	5.1	31.5	58.3	4.8	1,054	3.63	
조합	농협	0.0	4.8	31.9	57.9	5.5	458	3.64
	신협	0.3	6.9	30.4	58.1	4.2	332	3.59
	새마을금고	0.3	5.0	32.3	57.2	5.3	341	3.62
연령	20대 ~ 30대	0.3	6.4	35.7	54.3	3.2	311	3.54
	40대 ~ 50대	0.3	5.5	28.1	59.9	6.1	327	3.66
	60대 이상	0.0	3.8	31.0	60.1	5.0	416	3.66
지역	서울	0.0	1.7	30.0	65.8	2.5	120	3.69
	경기/인천	0.0	3.4	26.9	60.3	9.4	234	3.76
	대전/충청	0.0	0.7	41.8	56.7	0.7	141	3.57
	광주/전라	0.7	10.3	30.3	55.9	2.8	145	3.50
	대구/경북	0.0	6.6	30.5	61.7	1.2	167	3.57
	부산/울산/경남	0.5	5.4	29.7	57.4	6.9	202	3.65
	강원	0.0	13.3	42.2	33.3	11.1	45	3.42
학력	중졸 이하	0.0	5.8	32.7	57.7	3.8	156	3.60
	고졸	0.4	3.8	31.5	59.1	5.2	523	3.65
	전문대졸 이상	0.0	6.7	30.6	57.8	4.8	372	3.61
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20.00	70.00	10.00	10	3.90
	100~300만원	0.0	5.42	36.82	54.51	3.25	277	3.56
	300~500만원	0.24	6.90	28.57	57.57	5.71	420	3.63
	500~700만원	0.37	2.93	32.60	58.61	5.49	273	3.66
	700만원 이상	0.0	2.70	25.68	68.92	2.70	74	3.72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3.03	40.40	54.55	2.02	99	3.56
	1,000~3,000만원	0.29	6.40	35.47	51.47	6.10	344	3.57
	3,000~5,000만원	0.0	5.42	31.67	58.75	4.17	240	3.62
	5,000만원~1억	0.0	3.92	25.49	66.67	3.92	255	3.71
	1억 이상	0.0	2.70	25.68	67.57	4.05	74	3.73

□ 배당금 비과세로 인해 수익률이 높아졌음을 인식하고 있음

- 본 질문에서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가 정답이므로 모든 집단에서 어느 정도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3년 전 조사와 매우 유사한 결과임

<표 V-31>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출자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1	8.6	40.5	38.8	12.0	1,054	3.54	
조합	농협	0.2	6.1	41.0	41.3	11.4	458	3.57
	신협	0.0	9.6	41.0	37.3	12.0	332	3.52
	새마을금고	0.0	10.9	39.0	37.0	13.2	341	3.52
연령	20대 ~ 30대	0.3	10.6	43.7	32.8	12.5	311	3.47
	40대 ~ 50대	0.0	8.0	41.6	39.1	11.3	327	3.54
	60대 이상	0.0	7.7	37.3	43.0	12.0	416	3.59
지역	서울	0.0	9.2	22.5	52.5	15.8	120	3.75
	경기/인천	0.0	7.3	35.9	38.0	18.8	234	3.68
	대전/충청	0.0	2.8	45.4	44.7	7.1	141	3.56
	광주/전라	0.7	15.9	49.7	24.8	9.0	145	3.26
	대구/경북	0.0	9.0	43.1	38.3	9.6	167	3.49
	부산/울산/경남	0.0	8.9	40.1	39.6	11.4	202	3.53
	강원	0.0	6.7	60.0	31.1	2.2	45	3.29
학력	중졸 이하	0.0	11.5	39.7	44.9	3.8	156	3.41
	고졸	0.0	7.5	40.2	40.2	12.2	523	3.57
	전문대졸 이상	0.3	9.1	41.1	34.7	14.8	372	3.55
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10.00	80.00	10.00	10	4.00
	100~300만원	0.0	11.91	41.16	38.99	7.94	277	3.43
	300~500만원	0.24	8.10	41.67	39.29	10.71	420	3.52
	500~700만원	0.0	6.96	38.46	37.73	16.85	273	3.64
	700만원 이상	0.0	6.76	43.24	33.78	16.22	74	3.59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12.12	42.42	39.39	6.06	99	3.43
	1,000~3,000만원	0.0	9.59	40.70	43.02	6.69	344	3.39
	3,000~5,000만원	0.0	8.33	44.58	35.00	12.08	240	3.47
	5,000만원~1억	0.39	6.67	35.29	37.25	20.39	255	3.71
	1억 이상	0.0	6.76	41.89	31.08	20.27	74	3.65

□ 배당금 비과세로 인해 출자자가 많아졌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은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이러한 인식을 강하게 갖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3년 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낮아졌으며 농협과 신협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함

<표 V-32>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1	6.2	33.0	50.7	10.1	1,054	3.64	
조합	농협	0.0	6.6	33.2	51.7	8.5	458	3.62
	신협	0.3	7.2	35.2	48.8	8.4	332	3.58
	새마을금고	0.0	4.7	32.6	50.4	12.3	341	3.70
연령	20대 ~ 30대	0.0	8.4	31.5	49.8	10.3	311	3.62
	40대 ~ 50대	0.3	5.5	33.0	51.4	9.8	327	3.65
	60대 이상	0.0	5.0	34.1	50.7	10.1	416	3.66
지역	서울	0.0	6.7	25.0	52.5	15.8	120	3.78
	경기/인천	0.0	4.7	22.6	58.1	14.5	234	3.82
	대전/충청	0.0	5.0	37.6	54.6	2.8	141	3.55
	광주/전라	0.7	9.7	30.3	51.0	8.3	145	3.57
	대구/경북	0.0	5.4	42.5	43.7	8.4	167	3.55
	부산/울산/경남	0.0	4.5	40.1	45.0	10.4	202	3.61
학력	강원	0.0	15.6	35.6	44.4	4.4	45	3.38
	중졸 이하	0.0	5.1	41.7	47.4	5.8	156	3.54
	고졸	0.0	5.9	32.9	51.8	9.4	523	3.65
소득	전문대졸 이상	0.3	6.7	29.8	50.5	12.6	372	3.69
	100만원 미만	0.0	10.00	60.00	10.00	20.00	10	3.40
	100~300만원	0.0	7.94	36.10	50.18	5.78	277	3.54
	300~500만원	0.0	4.76	34.05	51.43	9.76	420	3.66
	500~700만원	0.37	5.49	30.04	52.01	12.09	273	3.70
금융자산	700만원 이상	0.0	9.46	22.97	48.65	18.92	74	3.77
	1,000만원 미만	0.0	5.05	40.40	49.49	5.05	99	3.55
	1,000~3,000만원	0.0	5.81	36.92	47.97	9.30	344	3.61
	3,000~5,000만원	0.0	5.83	33.75	50.42	10.00	240	3.65
	5,000만원~1억	0.39	6.27	26.67	53.33	13.33	255	3.73
1억 이상	0.0	4.05	32.43	56.76	6.76	74	3.66	

-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도 많음
  -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러한 인식이 많음
  - 고졸 이상에 비해서는 중졸 이하 학력에서 이러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함
  - 평균적으로는 3년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V-33>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4	8.6	36.3	47.4	7.2	1,054	3.52	
조합	농협	0.2	8.1	38.0	45.4	8.3	458	3.53
	신협	0.6	8.7	36.1	49.1	5.4	332	3.50
	새마을금고	0.3	10.6	36.4	44.9	7.9	341	3.50
연령	20대 ~ 30대	0.3	8.0	37.3	45.7	8.7	311	3.54
	40대 ~ 50대	0.3	8.6	36.4	48.3	6.4	327	3.52
	60대 이상	0.5	9.1	35.6	48.1	6.7	416	3.51
지역	서울	0.8	7.5	22.5	58.3	10.8	120	3.71
	경기/인천	0.0	9.0	31.2	51.7	8.1	234	3.59
	대전/충청	0.0	4.3	44.7	49.6	1.4	141	3.48
	광주/전라	2.1	12.4	38.6	39.3	7.6	145	3.38
	대구/경북	0.0	6.0	38.3	46.7	9.0	167	3.59
	부산/울산/경남	0.0	8.9	40.1	44.1	6.9	202	3.49
학력	강원	0.0	20.0	42.2	33.3	4.4	45	3.22
	중졸 이하	0.6	10.3	44.2	40.4	4.5	156	3.38
	고졸	0.4	9.0	36.1	47.2	7.3	523	3.52
소득	전문대졸 이상	0.3	7.5	33.3	50.8	8.1	372	3.59
	100만원 미만	0.0	20.00	30.00	40.00	10.00	10	3.40
	100-300만원	0.36	9.75	40.43	44.77	4.69	277	3.44
	300-500만원	0.71	9.05	37.14	47.62	5.48	420	3.48
	500-700만원	0.0	6.59	34.80	46.52	12.09	273	3.64
금융자산	700만원 이상	0.0	8.11	22.97	60.81	8.11	74	3.68
	1,000만원 미만	0.0	10.10	36.36	50.51	3.03	99	3.46
	1,000~3,000만원	0.29	7.85	38.95	45.35	7.56	344	3.52
	3,000~5,000만원	0.42	10.00	35.83	46.25	7.50	240	3.50
	5,000만원~1억	0.0	7.45	32.94	52.16	7.45	255	3.60
	1억 이상	2.70	4.05	33.78	51.35	8.11	74	3.58

□ 친인척들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나 자산구간에서는 특별한 패턴을 찾기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모두 긍정적인 대답
- 3년 전에 조사에 비하면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3.33 대 3.10),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함

<표 V-34> “도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0	15.0	39.0	39.8	5.2	1,054	3.33	
조합	농협	0.2	15.9	39.7	38.2	5.9	458	3.34
	신협	1.5	14.8	40.4	38.0	5.4	332	3.31
	새마을금고	2.1	13.2	35.2	45.5	4.1	341	3.36
연령	20대 ~ 30대	1.3	19.6	37.3	34.7	7.1	311	3.27
	40대 ~ 50대	1.2	15.3	41.0	38.5	4.0	327	3.29
	60대 이상	0.7	11.3	38.7	44.5	4.8	416	3.41
지역	서울	0.0	21.7	31.7	42.5	4.2	120	3.29
	경기/인천	0.4	16.2	34.6	37.2	11.5	234	3.43
	대전/충청	0.0	5.0	44.7	49.6	0.7	141	3.46
	광주/전라	6.2	11.7	42.1	37.9	2.1	145	3.18
	대구/경북	0.0	15.0	42.5	36.5	6.0	167	3.34
	부산/울산/경남	0.5	13.9	41.6	39.6	4.5	202	3.34
	강원	0.0	37.8	28.9	33.3	0.0	45	2.96
학력	중졸 이하	1.3	12.8	40.4	42.9	2.6	156	3.33
	고졸	0.6	14.7	40.0	40.5	4.2	523	3.33
	전문대졸 이상	1.6	16.4	36.8	37.4	7.8	372	3.33
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30.00	70.00	0.0	10	3.70
	100~300만원	1.08	14.44	40.07	39.71	4.69	277	3.32
	300~500만원	0.95	16.19	40.00	37.62	5.24	420	3.30
	500~700만원	1.10	16.85	35.90	40.29	5.86	273	3.33
	700만원 이상	1.35	5.41	41.89	45.95	5.41	74	3.49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02	13.13	41.41	40.40	3.03	99	3.29
	1,000~3,000만원	0.29	14.53	45.64	34.88	4.65	344	3.29
	3,000~5,000만원	0.42	18.33	37.92	38.75	4.58	240	3.29
	5,000만원~1억	0.39	12.55	35.29	44.31	7.45	255	3.46
	1억 이상	1.35	20.27	28.38	41.89	8.11	74	3.35

- 출자금 가입 효과에 대해서도 수도권에서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출자금 가입으로 인해 조합과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배당금 비과세로 수익률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수도권에서 조합 발전을 위해서는 출자금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친인척들에게도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당금 비과세로 수익률이 증가했다는 인식은 고소득층과 자산이 많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표 V-35> 출자금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분석)

	조합과 관계 개선	배당금 비과세로 수익률 증가	배당금 비과세로 조합원 증가	출자금 증가 필요	친인척에 가입 권유
농협	-0.0514	0.0736	-0.0255	-0.145	0.0951
	(0.110)	(0.104)	(0.0993)	(0.102)	(0.105)
신협	-0.0355	0.0553	0.0409	0.00496	0.0612
	(0.114)	(0.107)	(0.102)	(0.105)	(0.108)
수도권	0.427***	0.366***	0.195**	0.314***	0.309***
	(0.106)	(0.0979)	(0.0930)	(0.0958)	(0.0988)
동/읍면	0.0842	0.132	-0.0705	0.0936	0.156
	(0.108)	(0.101)	(0.0972)	(0.0997)	(0.102)
중간소득	-0.0828	0.0636	0.279**	0.0328	-0.0219
	(0.126)	(0.117)	(0.113)	(0.115)	(0.119)
고소득	0.00559	0.236*	0.199	0.0387	0.0770
	(0.136)	(0.127)	(0.122)	(0.124)	(0.128)
자산 많음	0.192*	0.167*	-0.0383	0.0199	0.135
	(0.103)	(0.0960)	(0.0918)	(0.0941)	(0.0970)
가입기간	0.00111	-0.00541	0.000287	0.00641	0.000589
	(0.00693)	(0.00644)	(0.00619)	(0.00635)	(0.00652)
대출	0.0615	-0.00965	0.0328	0.126	-0.00159
	(0.122)	(0.113)	(0.108)	(0.111)	(0.115)

주: 1. 관측치 수는 628개  
 2.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 2) 예탁금

- 예탁상품에 가입한 후 대출이 용이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농협이나 신협에서 새마을금고보다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임
  - 연령대별로는 낮은 연령에서, 소득이나 금융자산에서도 낮은 쪽에서 부정적 응답 비중이 다소 높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음
  - 3년 전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V-36〉 “예탁상품에 가입하여 대출이 용이해졌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1	9.6	41.4	46.6	2.2	759	3.41
조합	농협	0.3	8.6	39.8	49.0	2.4	337	3.45
	신협	0.0	8.8	48.5	40.6	2.1	239	3.36
	새마을금고	0.4	9.7	39.9	47.6	2.4	248	3.42
연령	20대 ~ 30대	0.0	13.0	42.1	43.1	1.9	216	3.34
	40대 ~ 50대	0.0	9.0	39.5	49.4	2.1	233	3.45
	60대 이상	0.3	7.7	42.3	47.1	2.6	310	3.44
지역	서울	0.0	4.5	38.2	55.5	1.8	110	3.55
	경기/인천	0.0	5.3	34.0	54.8	5.9	188	3.61
	대전/충청	0.0	8.0	50.9	41.1	0.0	112	3.33
	광주/전라	0.0	12.3	39.7	46.6	1.4	73	3.37
	대구/경북	0.0	18.6	48.8	32.6	0.0	86	3.14
	부산/울산/경남	0.7	14.4	44.4	38.6	2.0	153	3.27
학력	강원	0.0	5.4	32.4	62.2	0.0	37	3.57
	중졸 이하	0.0	8.7	49.0	42.3	0.0	104	3.34
	고졸	0.3	10.9	40.8	45.1	2.9	377	3.40
소득	전문대졸 이상	0.0	8.0	39.5	50.4	2.2	276	3.47
	100만원 미만	0.0	0.0	66.67	33.33	0.0	6	3.33
	100~300만원	0.53	14.81	42.33	41.80	0.53	189	3.27
	300~500만원	0.0	9.21	40.79	47.04	2.96	304	3.44
	500~700만원	0.0	6.57	42.42	47.98	3.03	198	3.47
금융자산	700만원 이상	0.0	6.45	35.48	56.45	1.61	62	3.53
	1,000만원 미만	0.0	16.00	44.00	38.00	2.00	50	3.26
	1,000~3,000만원	0.45	13.51	35.41	48.20	2.70	222	3.39
	3,000~5,000만원	0.0	6.88	48.15	44.44	0.53	189	3.39
	5,000만원~1억	0.0	5.77	40.87	51.44	1.92	208	3.50
1억 이상	0.0	10.61	36.36	46.97	6.06	66	3.48	

- 예탁상품 가입 이후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농협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임
  -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고, 소득과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3년 전에 비해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약간 높아짐(3.69 대 3.62)

<표 V-37> “예탁상품 가입으로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3	4.3	33.5	50.1	11.9	759	3.69	
조합	농협	0.3	2.7	32.9	51.9	12.2	337	3.73
	신협	0.4	3.8	35.1	51.5	9.2	239	3.65
	새마을금고	0.4	6.0	31.5	48.4	13.7	248	3.69
연령	20대 ~ 30대	0.0	4.6	36.6	47.7	11.1	216	3.65
	40대 ~ 50대	0.4	3.4	31.3	51.9	12.9	233	3.73
	60대 이상	0.3	4.8	32.9	50.3	11.6	310	3.68
지역	서울	0.0	0.9	30.0	54.5	14.5	110	3.83
	경기/인천	0.0	4.3	24.5	48.9	22.3	188	3.89
	대전/충청	0.0	3.6	36.6	58.0	1.8	112	3.58
	광주/전라	1.4	9.6	37.0	39.7	12.3	73	3.52
	대구/경북	0.0	5.8	53.5	37.2	3.5	86	3.38
	부산/울산/경남	0.7	5.2	30.7	53.6	9.8	153	3.67
	강원	0.0	0.0	37.8	54.1	8.1	37	3.70
학력	중졸 이하	1.0	5.8	34.6	51.9	6.7	104	3.58
	고졸	0.3	4.5	34.5	49.1	11.7	377	3.67
	전문대졸 이상	0.0	3.6	31.5	50.7	14.1	276	3.75
소득	100만원 미만	0.0	0.0	16.67	16.67	66.67	6	3.50
	100~300만원	1.06	5.29	42.33	43.39	7.94	189	3.52
	300~500만원	0.0	4.28	28.95	54.61	12.17	304	3.75
	500~700만원	0.0	3.03	35.86	48.48	12.63	198	3.71
	700만원 이상	0.0	4.84	22.58	51.61	20.97	62	3.89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2.00	50.00	44.00	4.00	50	3.50
	1,000~3,000만원	0.45	4.95	35.14	50.90	8.56	222	3.62
	3,000~5,000만원	0.0	6.35	30.69	51.32	11.64	189	3.68
	5,000만원~1억	0.0	2.88	29.33	50.48	17.31	208	3.82
	1억 이상	0.0	4.55	37.88	46.97	10.61	66	3.64

-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로 인하여 저축의지가 생겼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신탁 가입자가 다른 조합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이었음
  - 전반적으로는 저축의지가 생겼다는 긍정적 응답이 많지만 소득 수준별, 자산 수준별로는 높은 쪽에서 긍정적인 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
  - 이러한 결과는 예탁금 비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인 조합원의 저축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평균적으로는 3년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임

〈표 V -38〉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하려는 의지가 생겼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1	7.2	30.4	52.2	10.0	759	3.65	
조합	농협	0.0	6.8	31.5	50.7	11.0	337	3.66
	신탁	0.0	7.9	25.9	55.2	10.9	239	3.69
	새마을금고	0.4	8.1	35.1	48.4	8.1	248	3.56
연령	20대 ~ 30대	0.0	6.5	32.9	51.4	9.3	216	3.63
	40대 ~ 50대	0.0	6.9	30.5	50.6	12.0	233	3.68
	60대 이상	0.3	8.1	28.7	53.9	9.0	310	3.63
지역	서울	0.0	16.4	20.0	47.3	16.4	110	3.64
	경기/인천	0.0	5.9	19.1	59.6	15.4	188	3.85
	대전/충청	0.0	4.5	34.8	59.8	0.9	112	3.57
	광주/전라	1.4	8.2	43.8	42.5	4.1	73	3.40
	대구/경북	0.0	8.1	33.7	54.7	3.5	86	3.53
	부산/울산/경남	0.0	2.0	38.6	47.1	12.4	153	3.70
	강원	0.0	13.5	37.8	40.5	8.1	37	3.43
학력	중졸 이하	1.0	8.7	38.5	47.1	4.8	104	3.46
	고졸	0.0	6.4	30.5	53.1	10.1	377	3.67
	전문대졸 이상	0.0	7.6	27.5	53.3	11.6	276	3.69
소득	100만원 미만	0.0	16.67	66.67	16.67	0.0	6	3.00
	100~300만원	0.53	8.47	35.45	49.74	5.82	189	3.52
	300~500만원	0.0	6.25	33.55	50.66	9.54	304	3.63
	500~700만원	0.0	6.57	23.74	56.57	13.13	198	3.76
	700만원 이상	0.0	9.68	17.74	56.45	16.13	62	3.79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6.00	30.00	54.00	10.00	50	3.68
	1,000~3,000만원	0.45	4.05	36.04	48.20	11.26	222	3.66
	3,000~5,000만원	0.0	10.58	35.98	47.09	6.35	189	3.49
	5,000만원~1억	0.0	6.73	24.04	59.13	10.10	208	3.73
1억 이상	0.0	6.06	15.15	60.61	18.18	66	3.91	

- 조합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임
  - 조합별 차이는 없으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쪽에서 긍정적 응답이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긍정적 응답이 많음
  -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3년 전보다는 낮아짐(3.62 대 3.78)

〈표 V-39〉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3	7.1	31.4	52.7	8.6	759	3.62	
조합	농협	0.0	8.3	31.5	50.1	10.1	337	3.62
	신협	0.8	5.0	33.1	53.6	7.5	239	3.62
	새마을금고	0.0	8.9	30.2	50.8	10.1	248	3.62
연령	20대 ~ 30대	0.0	6.5	32.9	51.9	8.8	216	3.63
	40대 ~ 50대	0.9	5.6	32.6	54.9	6.0	233	3.60
	60대 이상	0.0	8.7	29.4	51.6	10.3	310	3.64
지역	서울	0.0	10.9	17.3	61.8	10.0	110	3.71
	경기/인천	0.0	3.7	19.1	68.1	9.0	188	3.82
	대전/충청	0.0	5.4	39.3	51.8	3.6	112	3.54
	광주/전라	2.7	12.3	43.8	39.7	1.4	73	3.25
	대구/경북	0.0	5.8	44.2	43.0	7.0	86	3.51
	부산/울산/경남	0.0	5.9	35.9	42.5	15.7	153	3.68
학력	강원	0.0	16.2	37.8	40.5	5.4	37	3.35
	중졸 이하	0.0	12.5	39.4	44.2	3.8	104	3.39
	고졸	0.3	5.8	31.8	53.3	8.8	377	3.64
소득	전문대졸 이상	0.4	6.9	27.5	55.1	10.1	276	3.68
	100만원 미만	0.0	0.0	83.33	16.67	0.0	6	3.17
	100~300만원	0.0	9.52	38.10	47.09	5.29	189	3.48
	300~500만원	0.33	6.91	30.92	53.29	8.55	304	3.63
	500~700만원	0.51	5.05	26.77	56.57	11.11	198	3.73
	700만원 이상	0.0	8.06	22.58	58.06	11.29	62	3.73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6.00	44.00	46.00	4.00	50	3.48
	1,000~3,000만원	0.0	4.95	36.49	53.60	4.95	222	3.59
	3,000~5,000만원	0.53	11.11	28.57	52.38	7.41	189	3.55
	5,000만원~1억	0.48	5.29	27.40	52.40	14.42	208	3.75
	1억 이상	0.0	6.06	27.27	57.58	9.09	66	3.70

□ 조합의 발전에 예탁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에 비해  
서도 더 긍정적인 응답이 많음

- 농협에 비해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역시 소득과 자산이 높은 쪽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음
- 평균적으로는 3년 전과 유사한 결과임

<표 V-40> “조합이 발전하는 데 예탁상품의 비과세제도가 기여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5	3.6	27.9	57.7	10.3	759	3.74	
조합	농협	0.6	4.2	31.5	54.6	9.2	337	3.68
	신협	0.4	2.9	27.2	59.8	9.6	239	3.75
	새마을금고	0.4	3.6	25.8	58.5	11.7	248	3.77
연령	20대 ~ 30대	0.5	4.6	26.4	59.3	9.3	216	3.72
	40대 ~ 50대	0.9	2.6	30.0	56.7	9.9	233	3.72
	60대 이상	0.3	3.5	27.4	57.4	11.3	310	3.76
지역	서울	0.0	0.9	20.9	68.2	10.0	110	3.87
	경기/인천	0.0	2.7	12.2	64.4	20.7	188	4.03
	대전/충청	0.0	1.8	38.4	56.3	3.6	112	3.62
	광주/전라	5.5	6.8	41.1	43.8	2.7	73	3.32
	대구/경북	0.0	3.5	30.2	61.6	4.7	86	3.67
	부산/울산/경남	0.0	5.2	35.3	47.7	11.8	153	3.66
	강원	0.0	8.1	35.1	56.8	0.0	37	3.49
학력	중졸 이하	1.0	4.8	34.6	53.8	5.8	104	3.59
	고졸	0.5	4.5	28.1	54.6	12.2	377	3.73
	전문대졸 이상	0.4	1.8	25.4	63.0	9.4	276	3.79
소득	100만원 미만	0.0	16.67	50.00	33.33	0.0	6	3.17
	100~300만원	1.06	5.29	30.16	52.38	11.11	189	3.67
	300~500만원	0.66	4.61	28.62	58.22	7.89	304	3.68
	500~700만원	0.0	1.01	25.76	61.11	12.12	198	3.84
	700만원 이상	0.0	0.0	22.58	62.90	14.52	62	3.92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00	6.00	36.00	48.00	8.00	50	3.54
	1,000~3,000만원	0.0	3.60	29.28	57.66	9.46	222	3.73
	3,000~5,000만원	0.53	2.12	34.39	55.56	7.41	189	3.67
	5,000만원~1억	0.48	4.33	21.15	60.58	13.46	208	3.82
	1억 이상	1.52	1.52	22.73	63.64	10.61	66	3.80

- 저축여력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한도까지 예탁금에 가입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긍정적 응답이 많음
  - 조합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수도권에서 긍정적 응답 비중이 높음
  - 역시 소득과 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 비중이 높음
  - 3년 전 조사에 비하면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다소 낮아짐(3.65 대 3.70)

<표 V-41> “자금융력이 된다면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한도까지 불입하겠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0	4.3	32.4	56.9	6.3	759	3.65	
조합	농협	0.0	4.7	33.2	54.3	7.7	337	3.65
	신협	0.0	2.9	35.6	54.0	7.5	239	3.66
	새마을금고	0.0	5.6	30.6	58.9	4.8	248	3.63
연령	20대 ~ 30대	5.1	34.7	55.1	5.1	5.1	216	3.60
	40대 ~ 50대	5.2	30.5	58.4	6.0	5.2	233	3.65
	60대 이상	3.2	32.3	57.1	7.4	3.2	310	3.69
지역	서울	2.7	19.1	75.5	2.7	2.7	110	3.78
	경기/인천	4.3	16.0	67.6	12.2	4.3	188	3.88
	대전/충청	0.9	47.3	45.5	6.3	0.9	112	3.57
	광주/전라	8.2	52.1	39.7	0.0	8.2	73	3.32
	대구/경북	1.2	38.4	58.1	2.3	1.2	86	3.62
	부산/울산/경남	7.2	39.9	45.1	7.8	7.2	153	3.54
학력	강원	8.1	27.0	62.2	2.7	8.1	37	3.59
	중졸 이하	1.9	48.1	45.2	4.8	1.9	104	3.53
	고졸	6.1	30.0	56.5	7.4	6.1	377	3.65
소득	전문대졸 이상	2.9	29.7	62.0	5.4	2.9	276	3.70
	100만원 미만	0.0	16.67	33.33	50.00	0.0	6	3.33
	100~300만원	0.0	6.88	35.98	52.91	4.23	189	3.54
	300~500만원	0.0	3.62	32.24	56.91	7.24	304	3.68
	500~700만원	0.0	3.54	30.81	60.10	5.56	198	3.69
금융자산	700만원 이상	0.0	1.61	27.42	59.68	11.29	62	3.81
	1,000만원 미만	0.0	6.00	40.00	52.00	2.00	50	3.5
	1,000~3,000만원	0.0	4.50	34.68	54.05	6.76	222	3.63
	3,000~5,000만원	0.0	7.41	33.86	53.44	5.29	189	3.57
	5,000만원~1억	0.0	1.44	29.33	62.98	6.25	208	3.74
1억 이상	0.0	4.55	22.73	63.64	9.09	66	3.77	

□ 예탁금 가입 효과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수도권 거주자들이 예탁금 가입으로 인해 대출이 용이해졌고 조합과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저축의지가 제고되었고, 비과세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였으며, 비과세가 조합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예탁금으로 인해 대출이 용이해졌다는 인식은 고소득층과 자산이 많은 계층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남
- 고소득자들이 예탁금 가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비과세 한도까지 불입 의사가 있다는 견해는 수도권에서,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에서 강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강하게 나타남

<표 V-42> 예탁금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Ordered Probit)

	대출용이	조합과 관계개선	저축의지 제고	비과세로 조합원 증가	비과세는 조합발전에 기여	비과세 한도까지 불입의사
농협	-0.0266	0.0893	0.122	-0.0423	-0.166	-0.0265
	(0.104)	(0.103)	(0.102)	(0.103)	(0.105)	(0.105)
신협	-0.0314	0.00209	0.185*	0.0475	-0.0196	0.0732
	(0.108)	(0.106)	(0.106)	(0.106)	(0.108)	(0.109)
수도권	0.463***	0.454***	0.192**	0.286***	0.608***	0.411***
	(0.0990)	(0.0975)	(0.0963)	(0.0973)	(0.100)	(0.0999)
동/읍면	0.0821	0.137	0.168*	0.286***	0.203**	0.295***
	(0.102)	(0.101)	(0.100)	(0.101)	(0.102)	(0.103)
중간소득	0.250**	0.308***	0.105	0.231**	-0.0319	0.233*
	(0.118)	(0.117)	(0.116)	(0.117)	(0.118)	(0.120)
고소득	0.260**	0.255**	0.277**	0.318**	0.163	0.175
	(0.128)	(0.126)	(0.126)	(0.127)	(0.128)	(0.129)
자산 많음	0.118	0.153	0.219**	0.171*	0.0907	0.153
	(0.0968)	(0.0954)	(0.0954)	(0.0958)	(0.0968)	(0.0979)
가입기간	0.0199***	0.0102	-0.00430	0.00505	0.00556	0.0119*
	(0.00657)	(0.00644)	(0.00637)	(0.00645)	(0.00652)	(0.00658)
대출	0.231**	0.194*	-0.0860	-0.113	-0.0210	0.0414
	(0.115)	(0.113)	(0.112)	(0.113)	(0.114)	(0.116)

주: 1. 관측치 수는 628개

2.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 마.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변화

### 1) 준조합원제도 폐지에 따른 조합 탈퇴 여부

- 농협 조합원과 준조합원 304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강화해 준조합원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탈퇴를 고려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왔음
  -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집단은 지역으로는 강원도, 학력으로는 중졸 이하, 소득으로는 100만원 미만, 금융자산으로는 1,000만원 미만인 집단이었는데 이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강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움
  -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은 편으로 준조합원 폐지가 대거 탈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3년 전에 비하면 탈퇴의사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3.19 대 2.76)

<표 V-43> “준조합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 탈퇴를 고려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연령	20대 ~ 30대	0.0	25.5	32.7	38.8	3.1	98	3.19
	40대 ~ 50대	0.0	28.3	40.2	26.1	5.4	92	3.09
	60대 이상	1.8	18.4	35.1	40.4	4.4	114	3.27
지역	서울	0.0	24.4	17.1	58.5	0.0	41	3.34
	경기/인천	1.3	25.3	32.9	34.2	6.3	79	3.19
	대전/충청	0.0	15.1	50.9	34.0	0.0	53	3.19
	광주/전라	5.9	5.9	41.2	35.3	11.8	17	3.41
	대구/경북	0.0	22.2	37.0	40.7	0.0	27	3.19
	부산/울산/경남	0.0	26.0	38.4	27.4	8.2	73	3.18
	강원	0.0	57.1	28.6	14.3	0.0	14	2.57
학력	중졸 이하	2.9	22.9	51.4	22.9	0.0	35	2.94
	고졸	0.6	21.7	31.7	39.8	6.2	161	3.29
	전문대졸 이상	0.0	27.1	37.4	32.7	2.8	107	3.11
소득	100만원 미만	0.0	50.00	50.00	0.0	0.0	4	2.50
	100~300만원	1.47	25.00	39.71	30.88	2.94	68	3.09
	300~500만원	0.82	25.41	33.61	35.25	4.92	122	3.18
	500~700만원	0.0	17.65	40.00	40.00	2.35	85	3.27
	700만원 이상	0.0	28.00	20.00	40.00	12.00	25	3.36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0.0	37.50	31.25	31.25	32	2.94
	1,000~3,000만원	1.04	26.04	37.50	32.29	3.13	96	3.10
	3,000~5,000만원	1.37	24.66	34.25	38.36	1.37	73	3.14
	5,000만원~1억	0.0	16.67	33.33	40.28	9.72	72	3.43
	1억 이상	0.0	20.83	33.33	37.50	8.33	24	3.33

## 2) 출자금 한도와 비과세제도의 폐지에 따른 행태 변화

-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축소할 경우 그 한도초과 출자금을 인출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은 인출한다는 쪽이 더 많았음
-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자산보유가 많을수록 인출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비과세 제도에 대한 활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3년 전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V-44>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1	21.5	30.6	41.3	5.5	1,054	3.28	
조합	농협	1.1	21.2	31.0	38.6	8.1	458	3.31
	신협	0.9	21.7	32.8	40.4	4.2	332	3.25
	새마을금고	1.8	20.8	28.4	45.7	3.2	341	3.28
연령	20대 ~ 30대	0.6	22.8	30.5	40.2	5.8	311	3.28
	40대 ~ 50대	1.5	21.4	31.2	40.4	5.5	327	3.27
	60대 이상	1.2	20.7	30.0	42.8	5.3	416	3.30
지역	서울	0.0	15.8	20.8	56.7	6.7	120	3.54
	경기/인천	0.0	17.1	34.2	39.7	9.0	234	3.41
	대전/충청	1.4	24.1	33.3	40.4	0.7	141	3.15
	광주/전라	2.8	18.6	34.5	40.0	4.1	145	3.24
	대구/경북	1.8	31.1	24.0	38.9	4.2	167	3.13
	부산/울산/경남	1.5	18.8	34.2	39.6	5.9	202	3.30
	강원	0.0	37.8	24.4	31.1	6.7	45	3.07
학력	중졸 이하	2.6	28.2	28.8	39.1	1.3	156	3.08
	고졸	1.3	20.3	31.9	40.5	5.9	523	3.29
	전문대졸 이상	0.3	20.4	29.6	43.3	6.5	372	3.35
소득	100만원 미만	0.0	20.00	40.00	40.00	0.0	10	3.20
	100~300만원	1.81	25.27	32.13	36.46	4.33	277	3.16
	300~500만원	0.95	25.00	29.52	39.05	5.48	420	3.23
	500~700만원	1.10	14.65	31.87	45.05	7.33	273	3.43
	700만원 이상	0.0	13.51	24.32	58.11	4.05	74	3.53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4.04	30.30	31.31	31.31	3.03	99	2.99
	1,000~3,000만원	0.58	26.45	29.94	36.92	6.10	344	3.22
	3,000~5,000만원	1.25	20.42	35.00	40.42	2.92	240	3.23
	5,000만원~1억	0.39	13.73	30.59	48.24	7.06	255	3.48
	1억 이상	1.35	20.27	14.86	52.70	10.81	74	3.51

-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출자금을 인출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역시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자산보유가 많을수록 인출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서는 서울 지역의 인출의사가 높았음
  - 신탁과 새마을금고는 3년 전 조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농협에서는 출자금 인출의사가 3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짐(3.30 대 2.77)

<표 V-45>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5	19.1	35.7	34.6	9.1	1,054	3.31	
조합	농협	1.7	17.9	37.1	34.9	8.3	458	3.30
	신탁	1.5	19.9	36.7	32.5	9.3	332	3.28
	새마을금고	1.8	19.4	33.1	35.5	10.3	341	3.33
연령	20대 ~ 30대	1.0	19.9	30.5	38.3	10.3	311	3.37
	40대 ~ 50대	2.1	20.8	36.1	32.4	8.6	327	3.24
	60대 이상	1.4	17.1	39.2	33.7	8.7	416	3.31
지역	서울	0.0	15.0	22.5	47.5	15.0	120	3.63
	경기/인천	1.7	16.7	33.8	34.6	13.2	234	3.41
	대전/충청	1.4	23.4	38.3	31.2	5.7	141	3.16
	광주/전라	1.4	15.2	47.6	29.0	6.9	145	3.25
	대구/경북	2.4	26.3	31.1	32.9	7.2	167	3.16
	부산/울산/경남	1.5	15.8	40.1	35.6	6.9	202	3.31
	강원	2.2	28.9	31.1	31.1	6.7	45	3.11
학력	중졸 이하	1.3	19.9	42.3	32.7	3.8	156	3.18
	고졸	2.1	18.5	36.5	33.5	9.4	523	3.29
	전문대졸 이상	0.5	19.6	31.7	37.4	10.8	372	3.38
소득	100만원 미만	0.0	10.00	60.00	30.00	0.0	10	3.20
	100~300만원	1.81	23.10	38.63	29.60	6.86	277	3.17
	300~500만원	1.90	19.76	35.95	33.57	8.81	420	3.28
	500~700만원	0.73	17.22	33.70	38.83	9.52	273	3.39
	700만원 이상	1.35	8.11	27.03	44.59	18.92	74	3.72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5.05	24.24	35.35	31.31	4.04	99
1,000~3,000만원	2.03	22.38	35.17	33.72	6.69	344	3.21	
3,000~5,000만원	0.83	19.58	37.92	34.58	7.08	240	3.28	
5,000만원~1억	0.39	13.33	38.04	34.12	14.12	255	3.48	
1억 이상	1.35	14.86	21.62	44.59	17.57	74	3.62	

-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조합운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았음
  - 역시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자산보유가 많을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남
  - 조합에서는 농협,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이러한 경향이 더 높음
  - 평균적으로는 3년 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음

<표 V-46> “출자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3	6.5	26.6	55.6	11.1	759	3.71	
조합	농협	0.3	5.9	23.1	59.1	11.6	337	3.76
	신협	0.0	7.5	28.0	53.6	10.9	239	3.68
	새마을금고	0.4	7.3	27.0	52.8	12.5	248	3.70
연령	20대 ~ 30대	0.0	5.6	32.4	51.4	10.6	216	3.67
	40대 ~ 50대	0.4	8.2	25.8	55.4	10.3	233	3.67
	60대 이상	0.3	5.8	23.2	58.7	11.9	310	3.76
지역	서울	0.0	3.6	15.5	73.6	7.3	110	3.85
	경기/인천	0.0	1.6	14.4	63.3	20.7	188	4.03
	대전/충청	0.0	4.5	37.5	54.5	3.6	112	3.57
	광주/전라	2.7	13.7	50.7	30.1	2.7	73	3.16
	대구/경북	0.0	7.0	27.9	55.8	9.3	86	3.67
	부산/울산/경남	0.0	7.8	32.0	48.4	11.8	153	3.64
	강원	0.0	24.3	16.2	45.9	13.5	37	3.49
학력	중졸 이하	1.0	6.7	28.8	55.8	7.7	104	3.63
	고졸	0.3	7.2	27.1	53.8	11.7	377	3.69
	전문대졸 이상	0.0	5.1	25.4	58.0	11.6	276	3.76
소득	100만원 미만	0.0	33.33	33.33	33.33	0.0	6	3.00
	100~300만원	0.53	8.47	28.57	52.38	10.05	189	3.63
	300~500만원	0.33	6.58	29.29	56.25	8.55	304	3.66
	500~700만원	0.0	4.55	25.25	57.07	13.13	198	3.79
	700만원 이상	0.0	3.23	16.13	59.68	20.97	62	3.98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2.00	30.00	60.00	8.00	50	3.74
	1,000~3,000만원	0.45	9.91	26.13	55.86	7.66	222	3.60
	3,000~5,000만원	0.0	8.99	31.75	49.74	9.52	189	3.60
	5,000만원~1억	0.48	3.37	24.04	58.65	13.46	208	3.81
	1억 이상	0.0	1.52	15.15	65.15	18.18	66	4.00

□ 다른 방식에 비해 출자금 비과세제도가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는 견해가 많았음

- 이러한 견해가 서로 다른 집단에서 고르게 나왔지만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자산보유가 많을수록 비과세 제도의 적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3년 전보다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아짐(3.66 대 3.50)

<표 V-47>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보다 출자금 비과세제도가 적절하다” 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1	3.2	35.0	54.3	7.4	759	3.66	
조합	농협	0.0	3.3	37.7	52.8	6.2	337	3.62
	신협	0.4	2.5	36.0	52.7	8.4	239	3.66
	새마을금고	0.0	3.2	33.5	54.4	8.9	248	3.69
연령	20대 ~ 30대	0.0	2.8	36.6	54.2	6.5	216	3.64
	40대 ~ 50대	0.4	0.9	36.1	54.9	7.7	233	3.69
	60대 이상	0.0	5.2	33.2	53.9	7.7	310	3.64
지역	서울	0.0	1.8	22.7	66.4	9.1	110	3.83
	경기/인천	0.0	0.5	23.4	62.2	13.8	188	3.89
	대전/충청	0.0	1.8	44.6	52.7	0.9	112	3.53
	광주/전라	1.4	9.6	45.2	42.5	1.4	73	3.33
	대구/경북	0.0	3.5	31.4	54.7	10.5	86	3.72
	부산/울산/경남	0.0	4.6	44.4	45.8	5.2	153	3.52
	강원	0.0	5.4	51.4	40.5	2.7	37	3.41
학력	중졸 이하	0.0	5.8	45.2	44.2	4.8	104	3.48
	고졸	0.3	3.4	32.9	56.0	7.4	377	3.67
	전문대졸 이상	0.0	1.8	34.4	55.4	8.3	276	3.70
소득	100만원 미만	0.0	16.67	50.00	33.33	0.0	6	3.17
	100~300만원	0.0	5.82	37.57	51.85	4.76	189	3.56
	300~500만원	0.33	2.63	34.54	53.95	8.55	304	3.68
	500~700만원	0.0	2.02	36.87	54.04	7.07	198	3.66
	700만원 이상	0.0	0.0	22.58	66.13	11.29	62	3.89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2.00	52.00	42.00	4.00	50	3.48
	1,000~3,000만원	0.0	2.70	34.23	57.66	5.41	222	3.66
	3,000~5,000만원	0.53	6.88	39.68	49.74	3.17	189	3.48
	5,000만원~1억	0.0	1.92	30.29	58.65	9.13	208	3.75
	1억 이상	0.0	0.0	27.27	57.58	15.15	66	3.88

## 2) 예탁금 한도와 비과세제도의 폐지에 따른 행태 변화

-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조합, 연령, 소득, 자산, 학력 등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고르게 의견이 분포되어 있으나 고소득층에서 이러한 의견이 더 많았음
  - 비과세 폐지 시 해지 의사는 3년 전 조사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3.43 대 3.20), 특히 농협에서 상당히 높아졌으며(3.43 대 2.90), 신한과 새마을금고에서도 농협만큼은 아니지만 높아졌음

<표 V-48> “예탁상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1	12.8	37.2	40.3	8.7	759	3.43	
조합	농협	1.2	13.6	39.5	38.6	7.1	337	3.37
	신협	0.8	13.0	36.4	38.9	10.9	239	3.46
	새마을금고	1.2	14.1	34.3	41.9	8.5	248	3.42
연령	20대 ~ 30대	0.5	12.0	35.2	42.6	9.7	216	3.49
	40대 ~ 50대	0.9	12.9	36.5	38.6	11.2	233	3.46
	60대 이상	1.6	13.2	39.0	40.0	6.1	310	3.36
지역	서울	0.0	10.9	30.9	47.3	10.9	110	3.58
	경기/인천	1.6	8.5	28.2	50.5	11.2	188	3.61
	대전/충청	0.0	17.0	34.8	44.6	3.6	112	3.35
	광주/전라	2.7	8.2	49.3	34.2	5.5	73	3.32
	대구/경북	0.0	14.0	43.0	34.9	8.1	86	3.37
	부산/울산/경남	1.3	15.0	45.8	28.8	9.2	153	3.29
	강원	2.7	24.3	35.1	27.0	10.8	37	3.19
학력	중졸 이하	1.9	21.2	44.2	30.8	1.9	104	3.10
	고졸	1.3	11.9	37.4	42.4	6.9	377	3.42
	전문대졸 이상	0.4	10.5	34.4	40.9	13.8	276	3.57
소득	100만원 미만	0.0	66.67	16.67	16.67	0.0	6	2.50
	100~300만원	1.59	16.40	38.10	38.62	5.29	189	3.30
	300~500만원	0.99	12.83	39.14	39.80	7.24	304	3.39
	500~700만원	1.01	6.57	38.89	41.41	12.12	198	3.57
	700만원 이상	0.0	16.13	20.97	46.77	16.13	62	3.63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22.00	32.00	40.00	6.00	50	3.30
	1,000~3,000만원	1.35	11.71	40.99	36.94	9.01	222	3.41
	3,000~5,000만원	1.06	14.81	40.21	37.57	6.35	189	3.33
	5,000만원~1억	0.96	11.54	32.69	43.75	11.06	208	3.52
	1억 이상	1.52	9.09	31.82	46.97	10.61	66	3.56

- 예탁상품의 가입한도 축소 시에도 가입 예탁상품 해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과 금융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함
  - 강원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예탁상품 가입 한도 축소 시 예탁상품 해지 의사도 3년 전에 비해서 높아졌으며(3.33 대 2.91), 특히 농협에서 두드러짐

<표 V-49> “예탁상품의 가입한도를 축소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집)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1.3	14.6	38.9	40.3	4.9	759	3.33	
조합	농협	1.5	15.7	38.6	38.0	6.2	337	3.32
	신협	1.3	14.6	38.9	41.8	3.3	239	3.31
	새마을금고	1.2	16.1	38.7	39.9	4.0	248	3.29
연령	20대 ~ 30대	1.4	17.1	32.9	45.4	3.2	216	3.32
	40대 ~ 50대	1.3	14.2	41.6	37.8	5.2	233	3.31
	60대 이상	1.3	13.2	41.0	38.7	5.8	310	3.35
지역	서울	0.0	12.7	32.7	49.1	5.5	110	3.47
	경기/인천	2.1	8.5	33.0	46.3	10.1	188	3.54
	대전/충청	0.0	12.5	39.3	47.3	0.9	112	3.37
	광주/전라	5.5	20.5	37.0	34.2	2.7	73	3.08
	대구/경북	0.0	17.4	45.3	37.2	0.0	86	3.20
	부산/울산/경남	1.3	15.0	49.0	28.8	5.9	153	3.23
	강원	0.0	37.8	32.4	29.7	0.0	37	2.92
학력	중졸 이하	1.9	18.3	54.8	25.0	0.0	104	3.03
	고졸	1.9	13.3	37.1	41.9	5.8	377	3.37
	전문대졸 이상	0.4	14.9	35.1	44.2	5.4	276	3.39
소득	100만원 미만	0.0	16.67	83.33	0.0	0.0	6	2.83
	100~300만원	2.12	15.87	44.44	34.92	2.65	189	3.20
	300~500만원	0.99	17.76	38.82	38.16	4.28	304	3.27
	500~700만원	1.52	11.11	35.35	45.45	6.57	198	3.44
	700만원 이상	0.0	6.45	29.03	54.84	9.68	62	3.68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22.00	46.00	32.00	0.0	50	3.10
	1,000~3,000만원	0.90	17.12	41.89	37.39	2.70	222	3.24
	3,000~5,000만원	2.12	15.34	41.27	37.04	4.23	189	3.26
	5,000만원~1억	1.44	10.10	36.06	45.19	7.21	208	3.47
	1억 이상	1.52	10.61	24.24	53.03	10.61	66	3.61

□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수도권 지역에서 이러한 의견이 강함
- 또한 고학력, 고소득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함
- 3년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큰 차이는 없음

<표 V-50> “예탁상품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조합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응답비율					응답자	평균	
	1	2	3	4	5			
전체	0.1	4.5	29.6	57.3	8.4	759	3.69	
조합	농협	0.0	5.0	29.1	57.6	8.3	337	3.69
	신협	0.0	6.3	28.0	58.6	7.1	239	3.67
	새마을금고	0.4	5.6	29.0	54.4	10.5	248	3.69
연령	20대 ~ 30대	0.0	3.2	28.2	60.6	7.9	216	3.73
	40대 ~ 50대	0.0	5.2	30.0	56.2	8.6	233	3.68
	60대 이상	0.3	4.8	30.3	55.8	8.7	310	3.68
지역	서울	0.0	1.8	18.2	74.5	5.5	110	3.84
	경기/인천	0.0	2.1	13.3	67.0	17.6	188	4.00
	대전/충청	0.0	1.8	33.0	62.5	2.7	112	3.66
	광주/전라	1.4	12.3	58.9	26.0	1.4	73	3.14
	대구/경북	0.0	1.2	40.7	53.5	4.7	86	3.62
	부산/울산/경남	0.0	3.3	37.9	51.0	7.8	153	3.63
	강원	0.0	29.7	18.9	37.8	13.5	37	3.35
학력	중졸 이하	1.0	6.7	39.4	49.0	3.8	104	3.48
	고졸	0.0	4.2	29.4	56.8	9.5	377	3.72
	전문대졸 이상	0.0	4.0	26.4	60.9	8.7	276	3.74
소득	100만원 미만	0.0	16.67	50.00	33.33	0.0	6	3.17
	100~300만원	0.53	5.29	35.98	47.62	10.58	189	3.62
	300~500만원	0.0	3.95	27.96	61.84	6.25	304	3.70
	500~700만원	0.0	5.05	29.29	56.06	9.60	198	3.70
	700만원 이상	0.0	1.61	17.74	70.97	9.68	62	3.89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0.0	6.00	38.00	54.00	2.00	50	3.52
	1,000~3,000만원	0.45	4.50	27.03	57.21	10.81	222	3.73
	3,000~5,000만원	0.0	6.35	35.45	54.50	3.70	189	3.56
	5,000만원~1억	0.0	3.37	25.48	61.06	10.10	208	3.78
	1억 이상	0.0	1.52	24.24	65.15	9.09	66	3.82

- 출자금 인출이나 예탁상품 해지 의사에 대한 순위 프로빗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에서 출자금 한도 축소나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층과 자산이 많은 계층도 출자금 관련 비과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출자금 인출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출자들도 출자금 관련 비과세 제도 폐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 예탁금 이자 비과세 폐지나 가입한도 폐지 시 해지 의사는 읍면지역에 비해 동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고소득층과 자산이 많은 계층에서도 높게 나타남
  - 한편, 가입기간이 길수록 해지 의사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V-51> 출자금 가입 목적(Ordered Probit)

	출자금한도 축소되면 인출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시 인출	예탁 이자 비과세 폐지 시 해지 의사	예탁상품 가입한도 폐지 시 해지 의사
농협	0.0814	0.0177	-0.0434	0.0248
	(0.0877)	(0.0863)	(0.100)	(0.101)
신협	-0.00767	-0.0261	-0.0478	-0.0926
	(0.0906)	(0.0890)	(0.103)	(0.104)
수도권	0.298***	0.249***	0.121	0.209**
	(0.0833)	(0.0818)	(0.0938)	(0.0946)
동/읍면	0.138	0.103	0.274***	0.208**
	(0.0839)	(0.0826)	(0.0984)	(0.0989)
중간소득	0.0539	0.0274	0.0489	0.00200
	(0.0949)	(0.0934)	(0.113)	(0.114)
고소득	0.207**	0.181*	0.242**	0.167
	(0.104)	(0.103)	(0.123)	(0.123)
자산 많음	0.299***	0.374***	0.158*	0.301***
	(0.0838)	(0.0824)	(0.0929)	(0.0939)
가입기간	0.000697	-0.00799	-0.0204***	-0.0154**
	(0.00536)	(0.00526)	(0.00626)	(0.00630)
대출	0.183*	0.178*	0.148	0.116
	(0.0964)	(0.0948)	(0.110)	(0.111)
관측치 수	859	859	628	628

주: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 바.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전 여부

- 예탁금 비과세제도 폐지 시 현행 조합 예탁금을 이전시킬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답
  - 응답자 759명 가운데 이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30% 정도임
  - 수도권에서는 이전 의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 반면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이전 의향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 농협보다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가입자에서 이러한 현상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이전 의사가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층이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일환으로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한편 이전 시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할 금액에 대한 질문에는 큰 비중으로 이전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가 조합 예탁금에 가입하는 주된 목적이 절세효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음

<표 V-52> “예탁상품에 비과세 적용 폐지 시 조합 예탁금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계	긍정비율	
	예	아니오			
전체	232	527	759	30.6	
조합	농협	97	240	337	28.8
	신협	81	158	239	33.9
	새마을금고	76	172	248	30.6
연령	20대 ~ 30대	70	146	216	32.4
	40대 ~ 50대	77	156	233	33.0
	60대 이상	85	225	310	27.4
지역	서울	49	61	110	44.5
	경기/인천	82	106	188	43.6
	대전/충청	19	93	112	17.0
	광주/전라	10	63	73	13.7
	대구/경북	20	66	86	23.3
	부산/울산/경남	41	112	153	26.8
	강원	11	26	37	29.7

	구분	응답 인원		계	긍정비율
		예	아니오		
학력	중졸 이하	16	88	104	15.4
	고졸	128	249	377	34.0
	전문대졸 이상	88	188	276	31.9
소득	100만원 미만	0	6	6	0.0
	100~300만원	44	145	189	23.28
	300~500만원	92	212	304	30.26
	500~700만원	72	126	198	36.36
	700만원 이상	24	38	62	38.71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15	35	50	30.0
	1,000~3,000만원	53	169	222	23.87
	3,000~5,000만원	51	138	189	26.98
	5,000만원~1억	77	131	208	37.02
	1억 이상	33	33	66	50.0

-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 시 예탁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사람들의 경우 상당액수를 옮기겠다는 응답이었음
- 전액을 옮기겠다는 의견이 약 46% 정도이며 절반 미만을 옮기겠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음
  - 조합별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음

<표 V-53> 예탁상품 비과세 폐지 시 예탁금 이전 비중

(단위: 건, %)

인출 비중	전체		농협		신협		새마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	1	0.4					1	1.3
30%	1	0.4	1	1.0				
40%	1	0.4			1	1.2	12	15.8
50%	43	18.5	18	18.6	14	17.3	12	15.8
60%	19	8.2	7	7.2	4	4.9	9	11.8
70%	22	9.5	7	7.2	12	14.8	5	6.6
80%	31	13.4	16	16.5	7	8.6	14	18.4
90%	7	3.0	1	1.0	5	6.2	2	2.6
100%	107	46.1	47	48.5	38	46.9	33	43.4
합계	232	100	97	100	81	100	76	100
평균	80.7		81.5		81.9		80.2	

- 세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과세 폐지 후 5% 과세 시 예탁금 이전 의향을 물었을 때는 41%의 인원이 이전 의향을 보임
  - 조합별로는 신협에서 이전 의향이 높았으며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강원이 높았음
  -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이전 의향을 보임
  - 이전 의향을 보인 사람들 중 전액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과 비과세 적용받는 예탁금만 이전시키겠다는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남(52.7% 대 47.3%)

<표 V-54>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 후 5% 세율로 과세 시 예탁금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계	긍정비율	
	예	아니오			
전체	311	448	759	41.0	
조합	농협	131	206	337	38.9
	신협	108	131	239	45.2
	새마을금고	102	146	248	41.1
연령	20대 ~ 30대	89	127	216	41.2
	40대 ~ 50대	104	129	233	44.6
	60대 이상	118	192	310	38.1
지역	서울	54	56	110	49.1
	경기/인천	93	95	188	49.5
	대전/충청	38	74	112	33.9
	광주/전라	22	51	73	30.1
	대구/경북	28	58	86	32.6
	부산/울산/경남	57	96	153	37.3
	강원	19	18	37	51.4
학력	중졸 이하	30	74	104	28.8
	고졸	164	213	377	43.5
	전문대졸 이상	117	159	276	42.4
소득	100만원 미만	0	6	6	0.0
	100~300만원	60	129	189	31.75
	300~500만원	130	174	304	42.76
	500~700만원	94	104	198	47.47
	700만원 이상	27	35	62	43.55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1	29	50	42.00
	1,000~3,000만원	73	149	222	32.88
	3,000~5,000만원	73	116	189	38.62
	5,000만원~1억	105	103	208	50.48
	1억 이상	36	30	66	54.55

- 세율을 5%에서 9%로 올렸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는 61%가 이전 의향을 보임
  - 조합별 차이는 5% 세율의 경우보다는 줄어들고 있음
  - 서울지역의 이전 의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경향을 보이며 다음으로 높은 이전 의향을 보인 지역은 강원임
  - 이전 의향을 보인 사람들 중 전액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과 비과세 적용받는 예탁금만 이전시키겠다는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남(52.9% 대 47.1%)

<표 V-55>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 후 9% 세율로 과세 시 예탁금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계	긍정비율	
	예	아니오			
전체	463	296	759	61.0	
조합	농협	210	127	337	62.3
	신협	147	92	239	61.5
	새마을금고	145	103	248	58.5
연령	20대 ~ 30대	131	85	216	60.6
	40대 ~ 50대	146	87	233	62.7
	60대 이상	186	124	310	60.0
지역	서울	98	12	110	89.1
	경기/인천	123	65	188	65.4
	대전/충청	61	51	112	54.5
	광주/전라	32	41	73	43.8
	대구/경북	47	39	86	54.7
	부산/울산/경남	74	79	153	48.4
	강원	28	9	37	75.7
학력	중졸 이하	54	50	104	51.9
	고졸	224	153	377	59.4
	전문대졸 이상	183	93	276	66.3
소득	100만원 미만	1	5	6	16.67
	100~300만원	103	86	189	54.50
	300~500만원	187	117	304	61.51
	500~700만원	132	66	198	66.67
	700만원 이상	40	22	62	64.52
	1,000만원 미만	34	16	50	68.00
금융자산	1,000~3,000만원	128	94	222	57.66
	3,000~5,000만원	100	89	189	52.91
	5,000만원~1억	150	58	208	72.12
	1억 이상	43	23	66	65.15

-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상당한 정도의 자금 이전을 동반할 것으로 예측됨
  - 물론 이는 순저축의 감소는 아니지만 조합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임
  
- 예탁금 한도 축소 시를 상정했을 때는 약 46% 인원이 이전 의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서울의 이전 의향이 높으며 소득과 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이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액 이전과 한도액만큼만 이전하겠다는 비중은 비슷함(52.7 대 47.3)

<표 V-56> “현행 예탁금 한도 축소시 시중은행 이전 의향”에 대한 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계	긍정비율	
	예	아니오			
전체	349	410	759	46.0	
조합	농협	153	184	337	45.4
	신협	117	122	239	49.0
	새마을금고	108	140	248	43.5
연령	20대 ~ 30대	105	111	216	48.6
	40대 ~ 50대	108	125	233	46.4
	60대 이상	136	174	310	43.9
지역	서울	73	37	110	66.4
	경기/인천	114	74	188	60.6
	대전/충청	34	78	112	30.4
	광주/전라	19	54	73	26.0
	대구/경북	37	49	86	43.0
	부산/울산/경남	61	92	153	39.9
학력	강원	11	26	37	29.7
	중졸 이하	36	68	104	34.6
	고졸	175	202	377	46.4
	전문대졸 이상	137	139	276	49.6
소득	100만원 미만	0	6	6	0.00
	100~300만원	72	117	189	38.10
	300~500만원	138	166	304	45.39
	500~700만원	104	94	198	52.53
	700만원 이상	35	27	62	56.45
금융자산	1,000만원 미만	26	24	50	52.00
	1,000~3,000만원	94	128	222	42.34
	3,000~5,000만원	78	111	189	41.27
	5,000만원~1억	105	103	208	50.48
	1억 이상	40	26	66	60.61

□ 예탁금 관련 비과세제도의 변경에 따른 예탁금 이전 의향에 대한 프로비트(Probi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전 의향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과세 한도 축소 시 시중은행으로 예탁금을 이전하겠다는 의향은 다른 조합보다 농협에서 높게 나타남
- 자산이 많은 계층의 경우도 각종 비과세 제도 폐지 시 예탁금을 이전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비과세 폐지 후 세율이 5%에서 9%로 인상될 때는 자산이 많은 계층이 특별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전 의향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표 V-57> 시중은행으로 예탁금 이전 의향(Probit 분석)

	비과세 폐지시	비과세 폐지후 5%	비과세 폐지 후 9%	비과세 폐지 후 5% → 9%	비과세 한도 축소 시
농협	0.0476	0.0144	0.177	0.338**	0.241*
	(0.127)	(0.121)	(0.122)	(0.172)	(0.123)
신협	0.0849	0.102	0.128	0.104	0.209*
	(0.130)	(0.124)	(0.125)	(0.181)	(0.126)
수도권	0.476***	0.295***	0.555***	0.674***	0.660***
	(0.116)	(0.112)	(0.115)	(0.155)	(0.113)
동/읍면	0.0315	-0.0311	0.179	0.392**	0.139
	(0.126)	(0.119)	(0.117)	(0.163)	(0.120)
중간소득	0.0565	0.194	0.0805	-0.0980	0.0521
	(0.148)	(0.139)	(0.137)	(0.183)	(0.140)
고소득	0.214	0.275*	0.145	-0.0520	0.237
	(0.156)	(0.149)	(0.148)	(0.203)	(0.150)
자산 많음	0.346***	0.381***	0.295***	-0.0158	0.235**
	(0.115)	(0.110)	(0.114)	(0.164)	(0.113)
가입기간	-0.0137*	-0.0111	0.00173	0.0165	-0.0163**
	(0.00796)	(0.00754)	(0.00760)	(0.0104)	(0.00764)
대출	-0.0816	-0.0312	0.266*	0.509***	0.0634
	(0.137)	(0.130)	(0.136)	(0.180)	(0.132)
관측치 수	628	628	628	373	628

주: 1.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 예탁금 비과세제도 폐지 시 이전이 예상되는 금액을 대략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예탁상품에 비과세 적용 폐지 시 약 30%의 가입자들이 이전 의사가 있으며 이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평균 약 80% 정도를 이전시킬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이전 금액의 비중은 예탁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24%의 금액이 이전될 것으로 추정됨
    - 예탁금의 이전 의사나 이전 시 이전하는 예탁금의 비중이 예탁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될 총금액은 이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과 이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이전 금액의 곱으로 계산
  - 물론 이런 이전이 순저축의 감소는 아니며,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이전이 있을 것임

####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영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중복 가입 여부
  - ISA에 가입한 사람들은 5.4% 정도이며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12%에 달함
  - 대부분은 ISA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가입한 54명 중 기존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을 줄인 경우는 8명뿐이었으며 모두 50% 미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ISA 제도와의 중복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사람의 비중이 낮은 한편,
  - ISA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예탁금이나 출자금을 줄인 경우는 많지 않으며
  - 예탁금이나 출자금을 절반 이상 줄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음

#### 4.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

- 응답자의 출자금 가입금액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협 출자금은 평균 467만원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분포하며 가장 빈도가 높은 출자금액은 최소 출자액인 1만원이고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금액은 한도인 1천만원이었음

- 비과세 한도 1천만원을 넘는 출자 건수는 약 4.5%에 달함
  - 신탁은 평균 약 248만원이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분포하고 빈도가 가장 많은 출자액은 최소액인 1만원과 10만원이었음
  - 1천만원 이상의 출자 건수는 9건으로 3.4% 정도임
  -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평균 302만원으로 최소 1만원~1억원의 분포를 보이며 빈도가 가장 높은 출자액은 최소액인 1만원으로 새마을금고 출자 표본의 21%에 달하고 1천만원 이상의 출자는 12건에 3.5%가량임
  - 농협 출자금의 중간값은 50만원, 신탁출자금은 15만원,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중간값은 13만원으로 상당수의 가입자가 50만원 미만으로 출자금을 유지함을 보여줌
- 농협, 신탁 및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가입현황을 예탁금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농협의 총예탁금 평균은 2,287만원이며, 신탁은 1,708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1,917만원임
  - 농협의 비과세예탁금 평균은 1,885만원이며, 신탁의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1,565만원 그리고 새마을금고 비과세예탁금은 평균 1,623만원임
  - 농협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1,570만원, 신탁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1,011만원, 새마을금고의 과세 예탁금 평균은 1,164만원으로 각각 비과세 예탁금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출자금과 예탁금액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얻은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회귀분석 결과 출자금액은 수도권에서 현저하게 높고, 고소득층에서 높으며, 자산이 많은 계층에서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짐
  - 농협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들의 출자금액이 86%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소득층은 조합별로 저소득층에 비해 61~85% 출자금액이 많았음
  - 반면 예탁금액은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농협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예탁금이 많으며, 준조합원의 경우 예탁금이 크게 낮은 경향을 보임<sup>25)</sup>

25) 준조합원의 경우, 실제와 다르게 나타남

- 인식과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인식 조사와 관련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조합 가입자들은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각종 비과세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이 조합 가입의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수도권 거주자들과 고소득자, 그리고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높은 예탁금 이자율도 조합 예탁금 선택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남
  -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면 시중은행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략 4분의 1 정도의 이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거주자, 고소득자,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비과세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혜택의 유무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표본이 다르기는 하지만 3년 전의 조사와 유사한 설문 항목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음
  - 관련된 비과세 제도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조합 출자금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현재까지 ISA제도와 중복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Ⅵ. 타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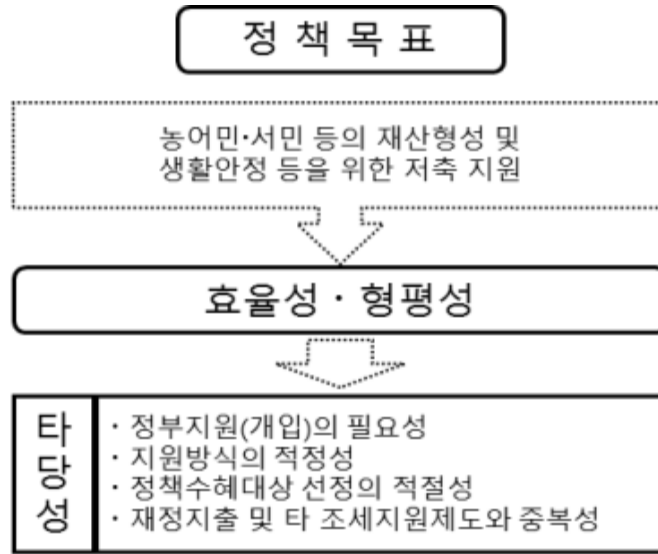


## Ⅵ. 타당성 분석

### 1. 타당성 분석 개요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 등을 평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정책목표는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저축 지원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정책수혜대상의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
  
- 동 제도의 정책목표는 농어민·서민 등의 재산 형성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한 저축 지원이지만, 농어민·서민 등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이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부차적인 정책목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직접적으로 농어민과 서민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되,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일단 농어민과 서민 지원이라는 주 목적을 대상으로 진행함
  - 첫째, 금융시장에서의 정부 개입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
  - 둘째, 지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
  -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상의 설정이 적절한지를 평가

[그림 VI-41] 타당성 평가의 개념



## 2.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함
-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재산형성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타당
  -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농어민과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
    - 김우철(2012)은 신용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서민 등은 시중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 외면받아 고금리 사채에 의존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으며
  - 이하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이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부차적인 정책목표라고 보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함

-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비용이 발생
-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이 있음
  - 상호금융기관의 주고객은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이며, 소액예금 및 대출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낙후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로 서민층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접근성 측면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유리
  -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영세서민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수행하는 등 서민금융의 활성화에 기여
- 농어민과 서민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없어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
  - 김우철(2012)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저신용자(6~7등급)의 대출자 비중은 17.5%에 불과
  - 반면, 새마을금고는 32.8%, 신협 40%, 그리고 산림조합은 38.9%로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제공

<표 VI-1> 대출금에 대한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CB등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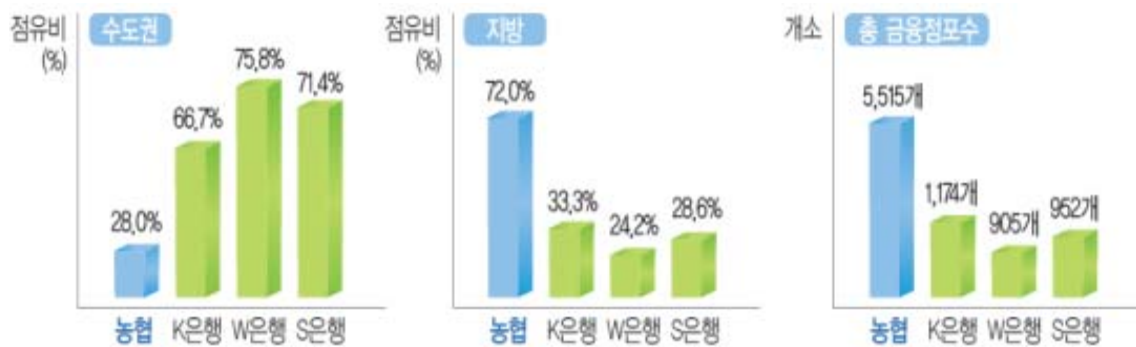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등급	총건수	구성비
은행권	1~2등급	13,284,108	42.7
	1~5등급		82.5
	6~10등급		17.5
새마을금고	1~2등급	1,164,622	28.1
	1~5등급		67.2
	6~10등급		32.8
신협	1~2등급	684,019	23.4
	1~5등급		60.0
	6~10등급		40.0
산림조합	1~2등급	46,284	21.8
	1~5등급		61.1
	6~10등급		38.9

자료: 김우철(2012), p. 15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서민금융서비스의 제공도 중요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주로 농어민과 서민을 상대로 수익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및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하여 도시에서 주로 영업하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수신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또한 시중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상호금융기관은 주로 예대업무로 수익을 내야 하는 경영구조로 한계
  - 일반 시중은행은 수익성이 낮은 지방 또는 농어촌 지역보다 수익성이 높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
    - 김우철(2012)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점포의 약 3분의 2를 수도권에 보유

[그림 VI-2] 수도권과 지방별 농협과 시중은행의 점포분포 비교



자료: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달리 송금·인출 수수료,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 등의 비이자 수익 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비이자 수익은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위험자산의 증가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상호금융기관은 이런 비이자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서민금융기관들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신용정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농어민, 서민 등을 대상으로 여신과 수신 업무를 할 경우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저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을 주 고객으로 할 경우 수익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할 경우 서민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외부효과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상호금융기관이 자본건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회원 등의 재산형성 그리고 예탁금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
    -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익사업 또는 복지사업을 통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도 창출
- 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금융사업의 목적은 조합원·회원인 농어민과 서민들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를 결속시키고 농·어업 등에 대한 사업지원 및 복지지원 등<sup>26)</sup>을 위한 주요 재원을 확보하는 것
- 농협 등의 협동조합은 생산자 중심의 조합으로 생산자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들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금융사업은 본래의 협동조합 목적에 부수적인 사업운영으로 본래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음
    - 농협은 1969년, 수협은 1974년, 산림조합은 1994년 상호금융 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겸업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
  - 이러한 조합 등의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민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본조달이나 운용 측면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음

26) 농협의 예를 들면,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2017년말 현재 자산규모를 보면, 농협의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약 220조 9천억원)보다 높으며 새마을금고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수협, 산림조합 및 신협은 아직도 시중은행 자산규모에 비해 미미함
  - 2017년말 현재 농협의 총자산은 약 356조 4천억원으로 가장 자산이 많은 국민은행(약 324조 4천억원)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
  - 특히 2016년말 대비 2017년말의 총자산 증가율을 보면, 시중은행의 경우 약 4.6% 증가한 반면, 농협은 약 7.4%가 증가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임
  
- 농협은 시중은행의 자산규모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며, 새마을금고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열악한 자산규모를 지닌 상호금융기관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함
  - 그러나 수협, 산림조합 및 신협은 여전히 자산규모가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표 VI-2〉 은행별 총자산규모(연말 기준)

(단위: 천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중은행	국 민	2,586	2,624	2,713	2,855	3,012	3,244
	신 한	2,222	2,213	2,371	2,637	2,760	2,953
	우 리	2,382	2,437	2,561	2,766	2,908	2,967
	하 나	1,515	1,576	1,646	2,796	2,948	3,052
	SC제일	648	574	600	563	584	607
	한국씨티	515	498	499	499	457	428
	평 균	1,645	1,654	1,732	2,019	2,112	2,209
농 협	2,728	2,824	2,966	3,135	3,318	3,564	
수 협	192	198	210	221	248	277	
산림조합	50	51	52	54	57	63	
신 협	553	567	605	658	738	821	
새마을금고	1,048	1,108	1,197	1,267	1,384	1,505	

주: 총자산 = 은행계정+신탁계정+종금계정+상호거래 총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또한 신용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명목순이자 마진을 보면, 농협은 대체로 시중은행의 순이자 마진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협은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SC제일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
  - 2017년 기준 일반 시중은행 평균은 1.73%인 데 반해, 농협은 1.77%로 높은 수준
  - 물론 시중은행에 비해 신용도 내지는 높은 위험 등의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보일 수 있으나 준조합원처럼 일반 서민들이 일반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농협이나 수협을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VI-3> 은행별 명목순이자 마진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중은행	국 민	2.17	1.91	1.81	1.61	1.58	1.71
	신 한	1.99	1.76	1.74	1.50	1.49	1.56
	우 리	2.34	1.82	1.56	1.42	1.4	1.47
	하 나	1.70	1.52	1.47	1.42	1.39	1.49
	SC제일	2.12	2.20	2.05	1.73	1.51	1.47
	한국씨티	2.69	2.79	2.73	2.41	2.4	2.68
	평 균	2.17	2.00	1.89	1.68	1.64	1.73
농 협	2.24	2.12	2.00	1.94	1.81	1.77	
수 협	1.72	1.67	1.68	-	-	1.73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 3. 지원방식의 적정성

#### 가. 지원방식

- 현재는 농어민과 서민에 대한 지원이 조세지출의 형태로서 간접적인 보조금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농어민과 서민의 수혜 규모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는 619만명 수준이고 비과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2조 5,884억원임
  -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7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를 차지함
  - 이들의 비과세 이자소득은 1조 9,280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이자소득의 74.5%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약 40만원 수준
  - 따라서 대부분의 비과세 예탁금의 수혜는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다만, 직업이 없는 고소득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2016년 비과세 출자금 가입자는 1,317만명 수준이고 비과세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은 7,977억원임
  -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자는 1,034만명으로 전체 출자자의 90%를 차지함
  - 이들의 출자금에서 발생한 비과세 배당금은 5,938억원으로 전체 비과세 배당금의 74.4%를 차지
  
- 그러나 저축여력이 없는 농어민과 서민들에게는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처럼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저축여력이 없는 계층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반면에 비과세제도는 일단 자발적으로 저축의지가 있는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국세청 자료에서 보면 예탁금 비과세와 배당금 비과세 혜택 수혜자의 적어도 4분의 3 이상이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인 효과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동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 다만 고소득층 또는 고액자산가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려움

## 나. 대상 설정

- 현행 농협 등의 조합원 자격은 일정 조건의 농업, 어업 또는 임업을 영위하는 주민으로 소득이나 재산의 제한이 없으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회원으로 가입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음
  -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준조합원 제도가 있어, 거주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준조합원으로 예탁금과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농어민과 서민의 저축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하면, 실제 준조합원이나 회원 자격으로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정책 대상자 설정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농협과 수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이 정리된 <표 VI-4>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약 80% 이상이 준조합원의 예탁금임을 알 수 있음
  - 준조합원의 예탁금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종합소득수준별 예탁금과 출자금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 귀속기준으로 5천만원의 이상 소득자의 가입 비중이 각각 8.6%와 8.7%이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각각 10.3%와 13.5%임

<표 VI-4> 농협·수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예탁금 비율

(단위: 억원, %)

연도	조합원	비율	준조합원	비율	합계
2005	90,494	21.0	340,430	79.0	430,924
2006	87,902	19.9	352,807	80.1	440,709
2007	91,061	21.8	326,509	78.2	417,570
2008	93,896	20.9	356,061	79.1	449,957
2009	108,920	19.6	445,809	80.4	554,729
2010	113,968	19.4	472,161	80.6	586,129
2011	119,252	19.0	509,870	81.0	629,122
2012	124,438	18.9	533,857	81.1	658,295
2013	124,471	18.9	532,610	81.1	657,081
2015	105,648	17.5	499,193	82.5	604,841
2016	102,452	17.7	475,066	82.3	577,518
2017	102,230	17.6	478,302	82.4	580,532

자료: 국회전자도서관 참고데이터, 각 상호금융기관 자료

〈표 VI-5〉 종합소득수준별 예탁금과 출자금 가입자 현황(2016년 귀속)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구간	비과세 예탁금		비과세 출자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천만원 이하	3,954,031	1,579,064	8,873,127	510,974
2천만원 이하	821,133	348,906	1,466,399	82,862
3천만원 이하	433,301	191,838	810,351	44,384
4천만원 이하	261,900	118,658	514,402	29,382
5천만원 이하	181,018	83,092	365,789	22,602
6천만원 이하	141,945	67,789	294,959	21,009
7천만원 이하	116,551	57,443	236,116	18,046
8천만원 이하	77,617	39,113	158,038	13,824
9천만원 이하	52,509	26,088	115,376	11,131
1억원 이하	40,383	19,779	90,084	8,876
2억원 이하	90,403	47,843	207,858	26,327
3억원 이하	9,202	5,254	21,904	3,975
4억원 이하	3,029	1,752	7,517	1,504
5억원 이하	1,327	762	3,464	1,148
5억원 초과	1,749	1,011	5,435	1,686
합 계	6,186,098	2,588,390	13,170,819	797,731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4. 여타 지원제도와와의 중복성

- 농어민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목돈 마련을 위하여 3년 또는 5년 만기로 저금을 가입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 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 수산업 및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5년에 도입한 금융상품임
  - 동 상품은 저축에 대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설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만족시키는 농어민이어야 함
  -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구분하여 저소득 농어민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일반 농어민에는 2ha 이하 농지 소유 또는 20t 이하 어선 소유 및 일정 수<sup>27)</sup> 이하의 가축을 소유한 자,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ha 이하 소유 및 임차인이 해당됨
    - 저소득 농어민에는 1ha 이하 농지 및 5t 이하 선박 어민 및 선원 등, 일정 수 이하 가축의 50% 소유한 자,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ha 이하 소유한 자가 해당됨
    - 또한 위 해당사항을 충족할 지라도 농어민 종사 이외의 분야에서 상시근로하는 자 및 이외 분야에서 직전연도 발생한 소득이 직전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자는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함
  - 월 2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함
    -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이며, 월납 5천원 이상, 분기납 1만 5천원 이상, 6개월납 3만원 이상을 최소 납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함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라는 측면에서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농어민 자격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고, 월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만기가 길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음
- 그 밖에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도 농어민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축 지원 금융상품이기는 하지만, 이들 상품은 반드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는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27) 젓소·사슴 20마리, 소·말 30마리, 돼지·산양·면양·개 150마리, 토끼·친칠라·밍크 5,000마리, 가금 10,000마리, 벌꿀 150군

<표 VI-6> 농어민과 서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상 품	가입자격	최소 기간	저축한도	비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ha 또는 20t 이하 농지 및 선박소유 농어민	3년, 5년	연간 240만원	- 저축장려추가금리 제공
비과세종합저축	노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1년	5,000만원	- 2019.12.31.가입분까지
재형저축	5천만원 이하 근로자, 3.5천만원 이하 사업자	7년	분기 300만원	
장기저축성보험	개인	10년 이상	한도 없음	- 5년 이상 적립, 10년 이 상 유지 - 일몰없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직접 과세기간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업인	3년 (5년까지 혜택)	2,000만원 (타비과세상품 가입시 차감)	- 2018.12.31. 가입분까지 - 비과세한도(400만원) 초 과금액: 9% 분리과세

## 5. 소결

-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농어민과 서민에 대한 지원인 본 과세특례제도는 일정 부분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소득이 낮은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저축지원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열위에 있는 상호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리한 농어민과 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는 있음
  -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통하여 상호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동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부차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배려와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음

## Ⅶ. 효과성 분석





## VII. 효과성 분석

### 1. 효과성 분석

-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효과성은 경제적 효과, 형평성 효과 및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분석
  - 경제적 효과는 농어민과 서민의 저축에 미친 효과와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
  - 형평성 효과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소득계층 간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분석
  -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동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를 분석

### 2. 경제적 효과

-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로 세후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와 저축 간의 대체효과가 크면 저축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효과가 크면 저축은 하락하게 됨
  - 이론적으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세후소득 증가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실증분석의 영역
  - 정확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미시자료 등 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움
  
- 여기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저축효과와 다를 수 있다는 한계는 존재
  - <표 V-38>에서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하려는 의지가 생겼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1~5점 척도 기준으로 신흥 가입자 3.69점, 농협 3.66점, 새마을금고 3.56점의 반응을 보임
  - 전반적으로는 저축의지가 생겼다는 긍정적 응답이며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

- 이러한 결과는 예탁금 비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인 조합원의 저축지원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설문조사상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도 비과세제도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표 V-39>에서 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옴(3.62점)
  - 조합별 차이는 없으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쪽에서 긍정적 응답이 높은 편임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긍정적 응답이 많음
- <표 V-41> 자금여력이 된다면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한도까지 불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평균 3.65점의 긍정적 답변이 나오는 것도 동 제도의 효과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음
  - 조합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수도권에서 긍정적 응답 비중이 높음
  - 역시 소득과 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 비중이 높음
- 그 밖에 이하와 같은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도 동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임
  - <표 V-12>에서 예탁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난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3.72점으로 긍정적 대답이 대다수이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예외적인 몇 개의 범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5%를 넘지 않음
  - <표 V-13>에서 예탁상품은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3년 전 조사에 비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함(3.78 대 3.50)
  - <표 V-23>의 은행예금보다 조합 예탁상품이 절세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3.75점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절세효과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동 과세특례제도가 농어민과 서민의 자산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3. 형평성 효과

- 2016년 귀속 기준, 출자금과 예탁금 과세특례 수혜현황을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예탁금의 평균 가입률은 11.8%이고, 출자금의 평균 가입률은 70.8%
  - 가입률은 종합소득의 각 소득구간별로 출자금과 예탁금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인원의 비중으로 계산
  - 소득구간별 예탁금의 가입률은 9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20.5%로 가장 높음
  - 출자금은 1천만원 미만 소득구간의 가입률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2천만원 미만이 71.1%로 평균 가입률 70.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예탁금과 출자금 총 규모는 약 3조 3,861억원으로 이 중 예탁금이 2조 5,884억원, 출자금이 7,977억원을 차지
  - 예탁금과 배당금 과세특례금액이 전체 과세특례금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구간별로 보았을 때,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 계층에게 돌아가는 과세특례금액의 비중이 각각 61.0%와 64.1%로 나타나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반면에 우리나라 중위소득으로 볼 수 있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의 경우 예탁금 과세특례금액은 전체의 10.2%, 출자금 과세특례금액은 전체의 13.4%를 차지함
    - 이들 계층에 대한 과세특례는 본래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저축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서 벗어난 규모로 해석할 수 있음
  
-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수혜 비중은 높은 편으로 본 과세특례가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
  - 예탁금 및 출자금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소득자들의 수혜규모 비중이 74.5%을 차지하고 있음
  
- 서민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소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으나, 동 과세특례제도가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음
  - 동시에 고소득층, 고액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단점이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표 VII-1> 소득수준별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수혜현황(2016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소득구간	예탁금				출자금			
	인원	평균 가입률	금액	비중	인원	평균 가입률	금액	비중
1천만원 이하	3,954,031	10.3	1,579,064	61.0	8,873,127	74.9	510,974	64.1
2천만원 이하	821,133	16.4	348,906	13.5	1,466,399	71.1	82,862	10.4
3천만원 이하	433,301	14.9	191,838	7.4	810,351	65.1	44,384	5.6
4천만원 이하	261,900	15.1	118,658	4.6	514,402	61.0	29,382	3.7
5천만원 이하	181,018	15.7	83,092	3.2	365,789	58.6	22,602	2.8
6천만원 이하	141,945	16.5	67,789	2.6	294,959	58.6	21,009	2.6
7천만원 이하	116,551	18.1	57,443	2.2	236,116	59.0	18,046	2.3
8천만원 이하	77,617	19.5	39,113	1.5	158,038	58.6	13,824	1.7
9천만원 이하	52,509	19.4	26,088	1.0	115,376	59.2	11,131	1.4
1억원 이하	40,383	20.5	19,779	0.8	90,084	60.5	8,876	1.1
2억원 이하	90,403	18.1	47,843	1.8	207,858	55.5	26,327	3.3
3억원 이하	9,202	13.7	5,254	0.2	21,904	45.6	3,975	0.5
4억원 이하	3,029	12.4	1,752	0.1	7,517	42.7	1,504	0.2
5억원 이하	1,327	11.6	762	0.0	3,464	41.1	1,148	0.1
5억원 초과	1,749	8.7	1,011	0.0	5,435	34.9	1,686	0.2
합계	6,186,098	11.8	2,588,390	100.0	13,170,819	70.8	797,731	100.0

주: 평균가입률은 각 소득구간별로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인원 대비 각 비과세 대상 인원의 비율임. 금액 비중은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합계액 중 각 소득구간별 비과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4.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1차적으로 조세 지출 규모로 분석
-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규모는 1990년대 말부터 감소하여 2005년에 1,904억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06년부터는 증가 추세로 돌아섬 (<표 IV-3> 참조)

- 특히, 2009년 비과세 예탁금의 가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 2015년 조세지출규모는 7,666억원이며, 2017년 추정치는 5,948억원임

- <표 VII-2>는 향후 출자금과 예탁금의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5%와 9% 세율로 과세할 경우, 2017년말 현재의 출자금과 예탁금 수준과 수신금리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기준 상호금융기관별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예상액을 추정
  - 5% 저율 과세시 예탁금과 출자금 총감면예상액은 각각 2,417억원, 425억원임
  - 9% 저율 과세시에는 예탁금과 출자금 총감면예상액은 각각 1,350억원, 236억원임

<표 VII-2> 저율 과세시 상호금융기관별 감면예상액

(단위: 억원)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합계
5% 과세	예탁금	919	99	23	649	722	2,417
	출자금	175	8	4	80	158	425
9% 과세	예탁금	511	55	13	361	401	1,350
	출자금	97	4	2	45	88	236

주: <표 II-28>의 2017년 비은행금융기관의 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하였음



## Ⅷ.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제도 정비 방안





## VIII.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제도 정비 방안

### 1. 현행 제도의 해석

- 앞서 제Ⅳ장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보고서의 평가 대상이 되는 5개 상호금융기관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제1그룹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동조합이고, 제2그룹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로서 직장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호금융기관
  - 제1그룹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나 직종에 따른 협동조합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제2그룹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됨
  
-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는 해당 특례제도가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직접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하여 서민층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CTC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저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후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저축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 과세상품에서 비과세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날 뿐이고, 순수한 저축 증가 효과는 거의 없음을 보이고 있음<sup>28)</sup>

28) Attanasio and DeLeire(2002), Attanasio et al(2005), OECD(2007), Raj et al.(2012), Beznoska and Ochmann(2013) 등 참조. 반면 조세지원이 신규저축 및 총저축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얻은 실증 분석으로 Ayuso et al.(2007), Fehr et al.(2007)이 있음

- 설문조사에서 예탁금 비과세로 인하여 저축 의지가 생겼는가(<표 V-38>) 라는 질문에 대하여 농협 3.66점, 신한 3.69점, 새마을금고 3.56점의 반응을 보임
    - 예탁금 비과세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은가(<표 V-39>)라는 질문에 대하여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 공히 3.62점으로 나타남
    - 조합 출자금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는가(<표 V-32>)라는 질문에 대하여 농협은 3.62점, 신한 3.58점, 새마을금고 3.70점을 보임
  -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저축 의지가 생겼는가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므로써 그렇다는 해석이 가능
  - 다만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동 제도로 인하여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순저축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
    - 그러나 기존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동 제도가 비과세 계좌로 자금이동만을 유발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과세분만큼의 혜택이 최소한 서민계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제Ⅳ장 3절의 바. 소결에서 정리된 바, 5개 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전체 예탁금에 비하여 높지 않음
- 특히 제1그룹의 협동조합이 제2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제1그룹: 농협 17.7%, 수협 24.7%, 산림조합 26.0%
    - 제2그룹: 신한 56.4%, 새마을금고 38.6%
  - 3년 전과 비교하여 신한만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증가하고, 다른 기관은 비중이 줄어듦
  - 제2그룹은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비과세 예탁금을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고, 제1그룹은 직종 간의 협동조합적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 가능
- 한편 제1그룹은 전반적으로 비과세 예탁금의 비중이 낮고, 신한과 새마을금고는 예탁금 3천만원 이하 가입자의 비중이 각각 전체 거래자의 64.7%, 89.2%로 나타나,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소액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제1그룹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축소하여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 비과세 예탁금이 전체 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비과세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남
  - 협동조합의 경우, 예탁금 금리에 1~2%p를 더한 수준에서 배당이 결정되므로 원본 대비 배당수익이 예탁금 수익보다 크지만 출자금은 회원 자격을 위한 가입비 성격이기 때문에 1인당 배당금의 규모는 크지 않음
  
- 배당의 경우에는 출자금 배당 중에서 비과세 배당의 비중이 예탁금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높음
  - 이러한 현상은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요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제1그룹: 농협 64.0%, 수협 72.4%, 산림조합 43.1%
    - 제2그룹: 신협 71.5%, 새마을금고 81.7%
  - 3년 전과 비교하여 수협은 증가하고, 나머지 기관은 다소 감소함
  - 제2그룹의 경우에는 별도의 준조합원이 없이 모두 회원인 반면, 제1그룹의 경우에는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일부 출자금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비중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봄
  - 출자금은 회원 자격을 위한 가입비로 간주하여 비교적 소액을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음

## 2. 개선방안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1안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과세를 정상화하면서 ISA로 흡수하는 방안
  - 제2안은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 제3안은 준조합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제1안	■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과세를 정상화하면서 ISA로 흡수하는 방안
-----	---------------------------------------

-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과세를 정상화하면서 세제우대저축을 ISA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은 일몰되고, 2019년에는 5%의 세율로, 2020년에는 9%의 세율로 저율과세하여 점진적으로 과세를 정상화 하도록 되어 있음
  - 1997년부터 비과세제도를 5%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었고, 이후 2001년 5%, 2002년 이후 10%로 전환하는 세법도 1999년에 통과됨
    - 이후 2007년 세법에서는 2010년에 5%, 2011년 이후 9% 세율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저율과세로 전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속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왔음
- 한편 2016년에는 세금우대저축을 정리한 후에 새롭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됨
- 2017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과제에서 ISA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 및 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ISA가 서민재산형성을 위한 주요 금융상품으로 부각됨
  - 따라서 ISA를 서민지원의 중심적인 금융상품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라면 다른 세제지원 금융상품을 ISA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통합을 통하여 세제지원을 보다 단순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현재 그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ISA의 성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전환시켜 대표적인 세제지원 금융상품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 과세 정상화 스케줄에 따라 2020년까지 다소 시간이 있으므로, 그때까지 상호금융기관에 신탁상품 허용 여부 또는 ISA의 세금우대저축으로의 포괄적 변환 등을 검토하여 세금우대상품을 ISA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세금우대상품을 ISA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으로서 금융정책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함
  - 현재는 상호금융기관에는 신탁상품의 취급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비과세 제도를 ISA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기관에 신탁상품의 취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또는 ISA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변환시켜서 현재의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ISA를 중심으로 흡수 통일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ISA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정리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상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상품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금융규제완화 등도 고려해야 하는 등 부처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제2안	■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	-----------------------------

- 설문조사와 통계분석 결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이 조합 등의 예탁금을 이용하여 적으나마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농어촌 또는 도시지역의 취약계층이 저축여력이 생긴다면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으로 이용
  - 문제는 준조합원 자격 등을 통하여 본래 의도하였던 계층 이외에 고소득층 또는 고자산가 등도 동 제도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조사결과 나타난다는 점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1차년도에는 비과세 예탁금 가입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하고, 2차년도에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서민지원 목적이라면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 정도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실제로 <표 IV-3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금액별 거래자 수 분포를 보면 전체 거래자의 80.1%가 예탁금 1천만원 이하(2017년 기준)

- <표 IV-24>에서 신탁의 1천만원 이하 가입자의 평균 예탁금은 457만원 수준, 1천만~3천만원 구간의 가입자 평균 예탁금은 2,080만원으로 나타남
  - 1천만~3천만원 구간 가입자의 경우 점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본래 지원 대상인 조합원이나 서민에 대한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1그룹의 경우, 전체 예탁금 대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비과세 혜택 이외에 조합원으로서의 다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입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
    -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줄인다고 해도, 조합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 이탈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일부 고액 예탁자의 경우, 원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계층이 비과세 혜택을 위해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도를 축소하게 되면 이들 계층의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용이 줄어들게 되어 제도 남용의 여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함
- 동 방안의 단점으로는 비과세 한도를 축소할 경우, 조합 등의 예탁금이 경쟁우위에 있는 시중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예탁금으로 자본을 조달하여 대출로 운용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의 예탁금이 이탈할 경우,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비과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상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래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한다는 당위성이 있음

제3안	■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
-----	----------------------------

-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남용하는 주 계층은 준조합원임
- 따라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면 동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직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음

- 다만 동 방안의 단점은 제1그룹은 준조합원 제도가 있는 반면, 제2그룹은 준조합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같은 상호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 즉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게 되면, 예탁금이 제2그룹의 상호금융기관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동 혜택을 전격적으로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임
    -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세율 5%로 분리과세하고, 2020년에는 9%로 분리과세함
  
- <표 IV-39>에 따르면 제1그룹의 비과세 예탁금이 전체 예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분의 1 이하이지만, 비과세 예탁금의 거의 대부분이 준조합원의 예탁금인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통계가 준조합원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준조합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제1그룹 상호금융기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음을 보여줌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격적인 폐지가 아닌 점진적인 혜택의 축소가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상기 제2안 또는 제3안 모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데, 그 단점을 비교하면 제2안은 제1그룹과 제2그룹 모두의 예탁금 중 일부가 시중은행 등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이며, 제3안은 제1그룹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예탁금이 제2그룹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2009년에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렸을 때, 비과세 한도의 증가로 전체적인 저축 수준이 증가하기보다는 과세 계좌에서 비과세 계좌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났음을 경험하였음
  - 따라서 비과세 한도의 점진적 축소 또는 준조합원에 대한 혜택의 점진적인 폐지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저축의 수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금의 이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참고문헌

김우철, 『재정정책을 통한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 새마을금고 세제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연구』, 새마을금고, 제22권 제2호, 2012. 7.

농협중앙회, 『농·축협 경영계수요람』, 각 연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11, 한국조세재정연  
구원, 2013.

새마을금고, 『2007년 새마을금고 통계』, 2008.

신협, 『2013년 신협통계』, 2014.

국회전자도서관 참고데이터, <http://dl.nanet.go.kr/index.do>.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http://fisis.fss.or.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농업협동조합중앙회, <http://www.nonghyup.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산림조합, <http://www.nfcf.or.kr>.

새마을금고, <http://www.kfcc.co.kr>.

수협중앙회, <http://www.suhyup.co.kr>.

신협, <http://www.cu.co.kr/CPSI020000.do>.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Attanasio, O. P., J. Banks, and M. Wakefield,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to  
Boost(Retirement) Saving: Theoretical Motivation and Empirical Evidence,” *OECD  
Economic Studies* No. 29, 2005.

Attanasio, O. P. and T. DeLeire, “The Effect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National Saving,” *The Economic Journal*, 112, 2002,  
pp. 504~538.

- Ayuso, J., J. Jimeno and E. Villanueva,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ax Incentives on Retirement Savings,” Bank of Spain Working Paper No. 0724, July 2007.
- Beznoska, M and R. Ochmann, “The interest Elasticity of Household Savings: A Structural Approach with German Micro Data,” *Empirical Economics*, 45(1), Aug. 2013, pp. 371~399.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Report on Federal Tax Expenditures,” 2017.
-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Co-operatives in Canada in 2013,” 2018.
- Fehr, H., C. Habermann, and F. Kindermann, “Tax-Favored Retirement Accounts: Are They Efficient in Increasing Savings and Growth?” *Public Finance Analysis*, 64(2), 2008, pp. 171~198.
- OECD, “Encouraging Saving Through Tax-Preferred Accounts,” Paris. OECD, 2007.
- Raj, C., J. Friedman, S. Leth-Petersen, T. Lielsen and T. Olsen, “Active vs. Passive Decisions and Crowd-Out in Retirement Savings Accounts: Evidence from Denmark,” NBER Working Paper No. 18565, Nov. 2012.
- Treasury Department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Tax Expenditures Statement 2017*, 2018. 1.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I-3.3/>, 검색일자: 2018. 4. 10.

[http://www.ic.gc.ca/eic/site/693.nsf/eng/h\\_00099.html#p3](http://www.ic.gc.ca/eic/site/693.nsf/eng/h_00099.html#p3), 검색일자: 2018. 04. 23.

<https://www.entreprises.coop/> 검색일자: 2018.4.5.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242>, 검색일자: 2018. 4. 2.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c04.htm](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c04.htm))

日本 農林水産省, 平成29年度地方税制改正(税負担軽減措置等)要望事項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05268.pdf](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05268.pdf))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 平成30 年度税制改正(租税特別措置)要望事項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request/mhlw/30y\\_mhlw\\_k.pdf](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request/mhlw/30y_mhlw_k.pdf))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 平成30年度税制改正要望(厚生労働省)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request/mhlw/index.htm](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request/mhlw/index.htm))

日本 Deloitte 홈페이지, ‘平成29年度税制改正大綱の概要,’ Japan Tax Newsletter: 2016  
年 12月 16日 号, 2016.

(<https://www2.deloitte.com/jp/ja/pages/tax/articles/bt/japan-tax-newsletter-16december2016.html>)

# 부 록





## 〈부 록〉 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합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입소스의 조사원 ○○○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 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관한 견해를 묻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4월

### 0. 응답자 설정 및 응답자 특징

#### ▶ 농업협동조합(농협) 조합원/준조합원 제도

[조합원 요건] 지역농협 구역의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둘 이상의 농협에 가입 불가)으로 이사회에 가입승낙 후 출자금을 납입한 자

[준조합원 요건] 지역농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 그 지역농협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비농업인 이용가능)로 이사회에 가입승낙 후 출자금을 납입한 자

#### ▶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 제도

[조합원 요건]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

#### ▶ 새마을금고 회원 제도

[회원 요건]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

**Q1)** 본 조사는 **농협(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준조합원,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복수응답)

- ①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가입자는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 **Q1-1**로
- ② 신용협동조합(신협) → **SQ2-1**로 갈 것
- ③ 새마을금고 → **SQ2-2**로 갈 것
- ④ 가입한 조합이 없다 → **면접중단**
- ⑤ 모름/무응답 → **면접중단**

**Q1-1)** 귀하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조합원      ② 준조합원

**Q2)** 그럼, 귀하의 가입유형은 무엇입니까?

<b>SQ2-1) 신용협동조합(신협)</b>	① 지역	② 직장	③ 단체
<b>SQ2-2) 새마을금고</b>	① 지역	② 직장	

**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Q4)**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만 20세 미만은 조사 중단)

- ① 만 20~39세      ② 만 40~59세      ③ 만 60세 이상

**Q5)**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Q5-1)** 귀하의 현 거주지역은 '동'지역입니까? 아니면 '읍면'지역입니까?

- ① 동부(거주지 주소가 동)      ② 읍면부(거주지 주소가 읍면리)

**Q6)** 귀하의 거주지(집) 또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조합)은 어디입니까?

그럼, 평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은행(조합)은 어디입니까?

SQ6-1) 가장 가까운 은행(조합)	
SQ6-2)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은행(조합)	

- ① 일반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② 농협 ③ 수협 ④ 축협 ⑤ 산림조합  
 ⑥ 신협 ⑦ 새마을금고 ⑧ 저축은행 ⑨ 증권사 ⑩ 기타(적어 주세요: )

## 1. 출자금 및 예탁금 가입현황

문1) 귀하는 (Q1 응답)에 언제 가입하셨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대략적인 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1-1)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문1-2) 신용협동조합(신협)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문1-3) 새마을금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

문2) 그럼,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가입자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문2) 가입형태
<b>1. 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 -조합원</b>	①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② 1,000㎡ 이상 농지에 경작 ③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④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⑤ 농림축산업에 종사 ⑥ 330㎡ 이상의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 ⑦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 ⑧ 기타(적어 주세요 :                    ) ⑨ 모름/무응답
<b>2. 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 -준조합원</b>	① 지역농협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② 회사원 ③ 공무원                                        ④ 금융기관 근무 ⑤ 자영업                                        ⑥ 지역농협에 다니는 친인척이 있다 ⑦ 친인척 명의로 출자 또는 예탁금에 가입하였다 ⑧ 기타(적어 주세요 :                    ) ⑨ 모름/무응답
<b>3. 신용협동조합 (신협) -조합원</b>	<b>※ 복수응답 :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b> ① 지역 신용협동조합 가입자      ② 직장 신용협동조합 가입자 ③ 단체 신용협동조합 가입자      ④ 조합원의 가족 ⑤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⑥ 지역조합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⑦ 회사원                                        ⑧ 공무원 ⑨ 금융기관 근무                        ⑩ 자영업 ⑪ 친인척 명의로 출자 또는 예탁금에 가입하였다 ⑫ 기타(적어 주세요 :                    ) ⑬ 모름/무응답
<b>4. 새마을금고 - 회원</b>	<b>※ 복수응답 : 해당되는 보기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b> ① 지역 새마을금고 가입자      ② 직장 새마을금고 가입자 ③ 조합원의 가족                        ④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⑤ 지역조합 소재지에 주소 또는 거주      ⑥ 회사원 ⑦ 공무원                                        ⑧ 금융기관 근무 ⑨ 자영업 ⑩ 친인척 명의로 출자 또는 예탁금에 가입하였다 ⑪ 기타(적어 주세요 :                    ) ⑫ 모름/무응답

문3) 귀하가 현재 납입하신 출자금과 예탁금의 총액과 납부 방식을 응답해 주십시오.

(금액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 대략적으로라도 응답 부탁드립니다.)

구분		가입현황			
※Q1=1 응답자만 1. 농협	문3-1-1 출자금	□□□□ 억 □□□□□□ 만원			
	예탁금	문3-1-2 가입여부	유형	문3-1-3) 불입형태	문3-1-4) 총 불입금액
		① 가입 ② 비가입	비과세	①일시 ②적립식 ③비해당	□□□□ 억 □□□□□□ 만원
			과세	①일시 ②적립식 ③비해당	□□□□ 억 □□□□□□ 만원
※Q1=2 응답자만 2. 신용협동 조합 (신협) - 조합원	문3-2-1 출자금	□□□□ 억 □□□□□□ 만원			
	예탁금	문3-2-2 가입여부	유형	문3-2-3) 불입형태(복수 응답)	문3-2-4) 총 불입금액
		① 가입 ② 비가입	비 과 세 대 상	①일시 ②적립식 ③비해당	□□□□ 억 □□□□□□ 만원
			과세 대 상	①일시 ②적립식 ③비해당	□□□□ 억 □□□□□□ 만원
※Q1=3 응답자만 3. 새마을 금고 - 회원	문3-3-1 출자금	□□□□ 억 □□□□□□ 만원			
	예탁금	문3-3-2 가입여부	유형	문3-3-3) 불입형태(복수 응답)	문3-3-4) 총 불입금액
		① 가입 ② 비가입	비 과 세 대 상	①일시 ②적립식 ③비해당	□□□□ 억 □□□□□□ 만원
			과세 대 상	①일시 ②적립식 ③비해당	□□□□ 억 □□□□□□ 만원

## 2.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다음은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문항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4)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은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1	2	3	4	5
문5)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은 특정 목적의 계층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	1	2	3	4	5
문6)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조세 회피를 하는 사례가 있다	1	2	3	4	5
문7)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의 비과세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문8)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 3.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 목적과 상황

문) 다음은 출자금의 가입목적과 현재 가입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출자 목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9)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1	2	3	4	5
문10)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출자금의 배당금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1	2	3	4	5
문11) 주변에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준)조합원이 많아서 나도 (준)조합원이 되었다	1	2	3	4	5
문12) 우리 지역에 거주할 때 (준)조합원이 되는 게 유리하다	1	2	3	4	5

다음은 **예탁금의 가입목적과 현재 가입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예탁금의 가입목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13)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조합의 <b>예탁상품</b> 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	2	3	4	5
문14) 은행의 예금보다 조합의 <b>예탁상품</b> 의 이자율이 높다	1	2	3	4	5
문15) <b>예탁상품</b> 에 가입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1	2	3	4	5
문16) 은행의 대출보다 조합의 대출 이자율이 낮다	1	2	3	4	5
문17)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b>예탁상품</b> 에 가입했다	1	2	3	4	5

문18) 귀하께서는 실제 본인의 돈으로 투자했는데 타인 명의로 가입한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예탁상품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18-1) (문18의 1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타인 명의로 가입한 예탁상품이 있는 조합은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 ① 농업협동조합(지역농협)  
 ② 신용협동조합(신협)  
 ③ 새마을금고

#### 4. 출자금과 예탁금의 가입효과에 대한 인식

다음은 **출자금의 가입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출자금 가입효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19) 조합에 출자한 이후 그 조합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친절도, 대출, 사업지원 등)	1	2	3	4	5
문20)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금이 비과세되어 출자금의 수익률이 높아졌다	1	2	3	4	5
문21)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된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때문에 조합에 출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문22)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야 한다	1	2	3	4	5
문23) 도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준)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편이다	1	2	3	4	5



응답구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지역농협의 준조합원만)	문31)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해 <b>준조합원 제도를</b> 폐지한다면 조합 탈퇴를 고려할 것이다	1	2	3	4	5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 또는 지역농협의 조합원, 준조합원만)	문32) 비과세되는 <b>출자금</b> 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
	문33) <b>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b> 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현재의 출자금을 인출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
(조합원 중 예탁상품 가입자만)	문34) <b>예탁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b> 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 해지를 고려할 것이다	1	2	3	4	5
	문35) <b>예탁상품</b> 의 가입한도를 축소한다면 가입한 예탁상품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
	문36) <b>출자금 비과세제도</b> 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문37)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선 다른 방식보다 <출자금 비과세 제도>가 적절하다	1	2	3	4	5
	문38) <b>예탁상품 비과세제도</b> 를 폐지한다면 조합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문39) 만약 **현행 조합의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게 된다면, 귀하는 **현재 가입된 조합의 예탁상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39-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40)으로 갈 것

문39-1) (문39=1 경우) 그럼, 귀하는 예탁금 전체 중 몇 퍼센트를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지 응답해 주십시오.

예탁금 전액의    %

문40) 만약 **현행 조합의 예탁상품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5%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귀하는 **현재 가입된 조합의 예탁상품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이전**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5% 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자 수익이 10만원일 경우 5천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 ① 예 → 문40-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41)로 갈 것







문49) 귀하는 자산, 소득 및 부채 등을 감안할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유층                                      ② 중산층                                      ③ 빈곤층

문50) 귀하는 서민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51) 귀댁 가구 전체의 월평균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 ① 월평균 소득의 10% 미만                      ② 월평균 소득의 10~20% 미만  
 ③ 월평균 소득의 20~30% 미만                ④ 월평균 소득의 30~40% 미만  
 ⑤ 월평균 소득의 40~50% 미만                ⑥ 월평균 소득의 50~60% 미만  
 ⑦ 월평균 소득의 60% 이상  
 ⑧ 모름/무응답

문52) 귀하가 평소 투자나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 다음 중 어떤 면을 가장 고려하는지 1순위 부터 5순위까지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우선순위
수익성(이자율)	
세금	
안전성(지급불능,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등)	
유동성(현금성, 만기, 시장성 등)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8 인구통계학 정보

지금부터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나 대학 재학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졸업

DQ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금융회사    ② 일반회사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농업·어업·축산업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무직(은퇴)    ⑨ 기타

DQ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동거    ⑤ 사별

DQ3-1) (DQ3=1 기혼자만 응답)

귀하 배우자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금융회사    ② 일반회사    ③ 공무원    ④ 자영업  
 ⑤ 농업·어업·축산업    ⑥ 전업주부    ⑦ 학생  
 ⑧ 무직(은퇴)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DQ4) 귀택의 가구 구성원(본인 포함)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⑥ 6인    ⑦ 7인 이상

DQ5) 현재 귀하 개인(응답자)과 가구 전체의 자산은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구 분	개인		가구 전체	
	금액	응답표	금액	응답표
1. 금융자산 (현금, 저축, 펀드, 출자, 주식 등)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2. 부동산 자산 (주택, 토지, 아파트, 전답 등)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3. 기타 자산 (자동차, 서화, 농기계, 귀금속, 각종 회원권 등)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DQ6) 현재 귀하 개인과 가구 전체의 부채는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구 분	개인		가구 전체	
	금액	응답표	금액	응답표
1. 조합(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의 대출금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2. 다른 금융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로부터의 대출금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3. 기타(친지나 지인에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탄 계돈 등)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① 있음 ② 없음	□□□□ 억 □□□□ 만원 9.무응답

응답표	
(0) 없음	(11) 1억원~2억원 미만
(1) 1천만원 미만	(12) 2억원~3억원 미만
(2) 1천만원~2천만원 미만	(13) 3억원~4억원 미만
(3) 2천만원~3천만원 미만	(14) 4억원~5억원 미만
(4) 3천만원~4천만원 미만	(15) 5억원~6억원 미만
(5) 4천만원~5천만원 미만	(16) 6억원~7억원 미만
(6) 5천만원~6천만원 미만	(17) 7억원~8억원 미만
(7) 6천만원~7천만원 미만	(18) 8억원~9억원 미만
(8) 7천만원~8천만원 미만	(19) 9억원~10억원 미만
(9) 8천만원~9천만원 미만	(20) 10억원~20억원 미만
(10) 9천만원~1억원 미만	(21) 20억원 이상
-	(99) 거절/무응답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